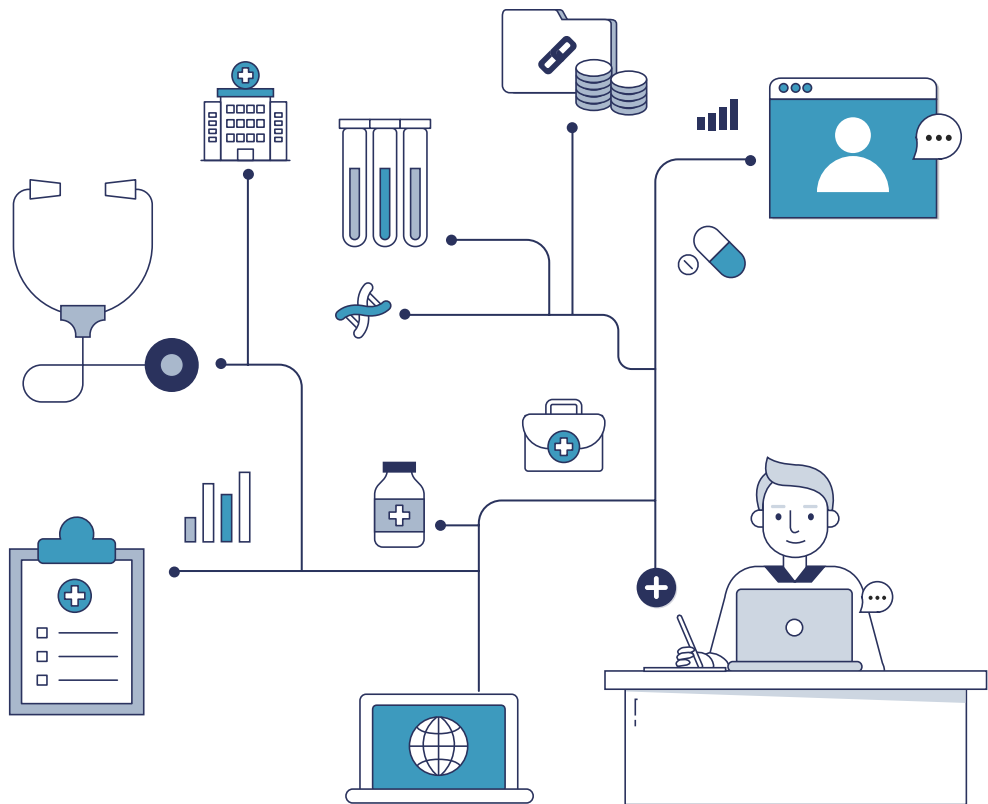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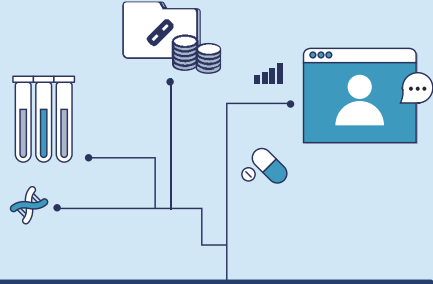


2021년 보건의료자원 통합신고포털 매뉴얼



• Contents •

Ⅰ	보건의료자원 현황관리와 통합신고포털시스템	
1.	보건의료자원 현황관리 및 신고일원화	2
1-1.	보건의료자원 현황관리	2
1-2.	보건의료자원 신고일원화	3
2.	보건의료자원 통합신고포털 시스템	6
2-1.	보건의료자원 통합신고포털 시스템 화면 구성	6
2-2.	보건의료자원 통합신고포털 시스템 관련 자주하는 질문(FAQ)	11
Ⅱ	요양기관 기본현황 신고	
1.	요양기관 기본 현황 신고	16
1-1.	개설신고 허가	16
1-2.	지급계좌 신고	28
1-3.	개설신고 허가사항 변경신고	34
1-4.	휴업 및 폐업	45
1-5.	기본현황 관련 자주하는 질문(FAQ)	50
Ⅲ	인력·시설·장비 신고	
1.	요양기관 인력 현황 신고	52
1-1.	인력 현황 신고	52
1-2.	인력신고 관련 자주하는 질문(FAQ)	71
2.	요양기관 시설 현황 신고	72
2-1.	시설 현황 신고	72
2-2.	시설 현황 신고 관련 자주하는 질문(FAQ)	84
3.	요양기관 장비 현황 신고	86
3-1.	장비 현황 신고	86
3-2.	의료장비 바코드 라벨 온라인 발급	100
3-3.	장비 현황 신고 관련 자주하는 질문(FAQ)	102



IV · 항목별 신고

1. 특수 운영 현황	108
1-1. 특수운영현황 신고	108
1-2. 특수운영현황 신고 관련 자주하는 질문(FAQ)	111
2. 차등제	113
2-1. 차등제 신고	113
2-2. 차등제 관련 자주하는 질문(FAQ)	117
3. 식대	118
3-1. 식대(입원 환자식 및 치료식 영양관리료 신고)	118
3-1-1. 입원환자식 신고	118
3-1-2. 치료식 영양관리료	126

V · 기타

PART 1. 신고일원화 민원사무별 업무처리 절차 및 방법	130
PART 2. 관련 법령	135



2021년

보건의료자원

통합신고포털 매뉴얼

Health Insurance Review & Assessment Service



보건의료자원 현황관리와 통합신고포털시스템



1. 보건의료자원 현황관리 및 신고일원화
2. 보건의료자원 통합신고포털 시스템





PART 1. 보건의료자원 현황관리 및 신고일원화

1-1 | 보건의료자원 현황관리

● 개요

- ‘보건의료자원 현황관리’는 요양기관에서 건강보험 가입자 등에게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청구한 요양급여비용을 심사·평가하는데 필요한 기초 자료를 요양기관으로부터 제출받거나, 지자체 등으로부터 처리정보를 연계 받아 요양기관의 일반사항, 인력·시설·장비 현황을 등록·관리하는 업무임(국민건강보험법 제43조)

● 관련 근거

-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요양기관), 제43조(요양기관 현황에 대한 신고)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2조(요양기관 현황 신고 등), 제12조의 2(보건의료자원 통합신고포털 설치·운영)

● 보건의료자원 관리 현황

- (일반현황) 요양기관 기호, 요양기관명, 종별구분, 진료과목 등 43종에 대한 현황을 관리
- (의료인력) 의료인력 14종의 세부인적사항 및 의료인력 26종의 인원수를 신고 받아 관리하고 있으며, 의료법 상의 기준 충족 여부 등을 관리
- (의료시설) 요양기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입원실 등의 병실 및 병상 수와 기타 시설의 현황을 관리
- (의료장비)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214호(‘20.9.25.)로 규정되어 의료행위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신고대상 294품목의 장비를 신고·관리하고 있으며, 23종의 의료장비에 대해서는 바코드를 부여하고 있음

【 보건의료자원 관리 현황 (‘21.5월말 기준) 】

(단위 : 개소, 명, 개, 대)

요양기관	의료인력	의료시설		의료장비
		병실	병상	
97,567	945,849	224,628	947,822	985,560

1-2 | 보건의료자원 신고일원화

● 배경

- 보건의료자원 신고·관리가 지방자치단체(의료법 등)와 심사평가원(국민건강보험법)으로 이원화 되어 법령별 신고기준 차이에 따른 자원관리 불일치, 중복신고로 인한 민원 불편, 행정력 낭비 해소를 위해 2016년 1월부터 보건의료자원 신고일원화 제도 시행
- 심사평가원은 보건의료자원 통합신고포털을 설치하여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새올행정시스템과 의료자원 신고(허가) 등 처리정보 연계로 신고일원화 시스템을 구축함(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2조의2)

● 주요 내용

- 지방자치단체 신고로 일원화(9개)
 - 지자체의 장이 보건의료자원 통합신고포털을 통하여 의료자원 신고(허가) 등의 처리결과를 심사평가원으로 통보하고, 심사평가원에도 의료자원 현황신고 등을 제출한 것으로 간주

① 의료기관 휴(폐)업 신고 ② 약국 휴(폐)업 신고 ③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의 설치 및 사용(재사용) 신고
 ④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의 사용중지·양도·이전·폐기 신고 ⑤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의 신고사항 변경신고
 ⑥ 특수의료장비 등록·신청 ⑦ 특수의료장비 시설 등록사항 등 변경통보 ⑧ 특수의료장비 양도 등 통보
 ⑨ 의약분업예외지역 요양기관 신고

- 심사평가원 신고로 일원화(2개)
 - 심사평가원은 의료자원 신고 처리결과를 시도·새올행정시스템에 통보하고, 지자체의 장에게도 신고서 등을 제출한 것으로 간주

① 의원급 의료기관 대진의 및 의료인 수 변경 신고 ② 병원급 의료기관 의료인 수 변경신고

* 병원급 의료기관 의료인 수 변경신청서는 변경허가가 아닌 변경신청서만을 제출한 것으로 함



- 지방자치단체 신고로 부분 일원화(3개)
 - 지자체의 장은 현황신고 등 처리결과를 심사평가원으로 통보하고, 심사평가원은 그 처리결과 통보에 따라 요양기관 현황신고서 등을 제출한 것으로 간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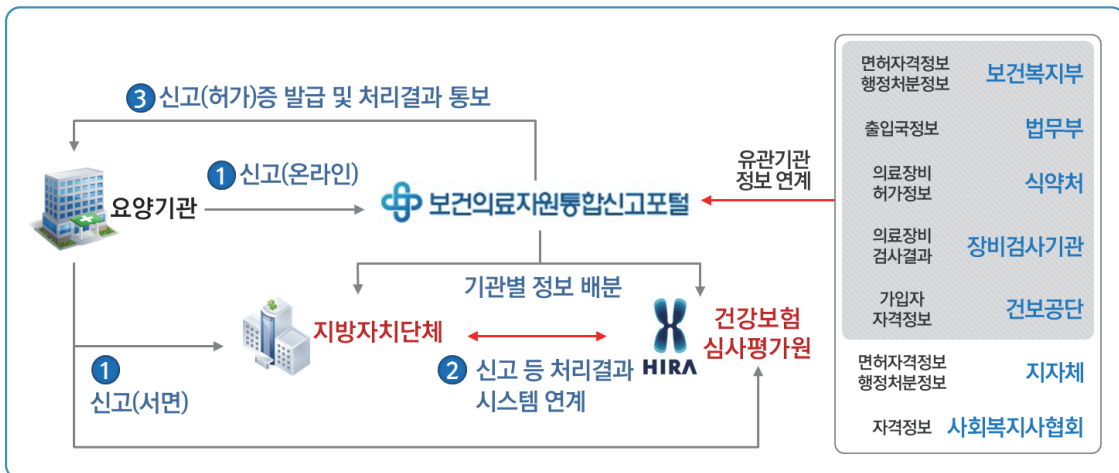
① 의료기관 개설·변경신고(허가) ② 약국개설등록신청 ③ 약국등록사항 변경신청

* 요양기관 현황신고서의 항목신고(사업자등록번호, 요양급여비용 수령계좌, 시설 및 인력 세부사항 등)를 심사평가원에 완료해야 요양기관기호 부여 가능

● 보건의료자원 통합신고포털 구축 및 유관기관 정보시스템 연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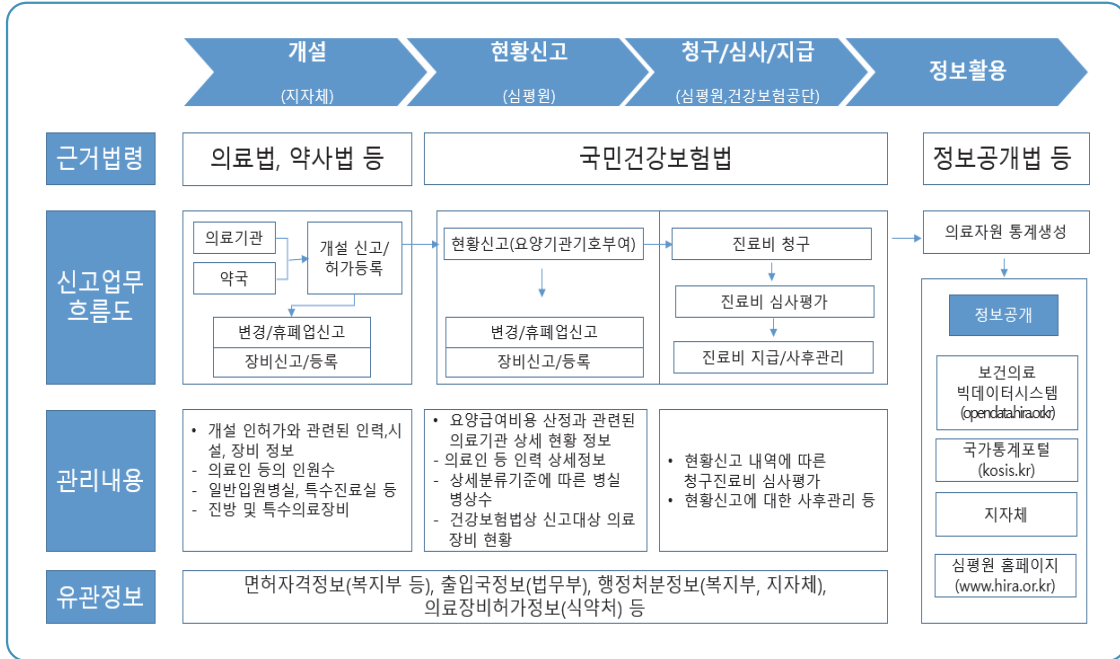
- 보건의료자원 신고일원화제도 시행과 함께 보다 효율적인 보험재정누수 사전 방지를 위해 기존 공문방식에서 보건의료자원 통합신고포털(www.hurb.or.kr)을 구축하고 유관기관과 신고 정보를 연계하여 의료자원 현황관리 업무에 활용(국민건강보험법 제96조)
 - 온라인 신고(허가) 접수·처리·증명서 발급 등 원스톱 민원 처리

【 보건의료자원 신고일원화 업무 프로세스 】



※ 요양기관 민원 신청(보건의료자원 통합신고포털 또는 서면)
→ 시도·새울행정시스템(지자체)처리 → 보건의료자원 통합신고포털 정보 연계·통보

● 보건의료자원 현황신고체계





PART 2. 보건의료자원 통합신고포털 시스템

2-1 | 보건의료자원 통합신고포털 시스템 화면 구성

● 메인화면

The screenshot shows the main interface of the Health Resource Integrated Reporting Portal. It includes a top navigation bar with a search bar and a menu bar. The main content area is divided into several sections: a central banner for '개설신고·변경' (New Report/Change), a left sidebar with navigation links, a '공지사항' (Notice) section, and a '요양기관 현황 신고 기관' (Nursing Institution Status Reporting Agency) section. The bottom of the page features a footer with contact information and a copyright notice.

- 1 로그인 등 주요정보의 신속한 접근을 위한 Link제공
 - 로그인, 서면신고진행조회, 회원가입, 고객센터
- 2 신고포털 메뉴 바
 - 메인 메뉴를 표시하며, 주요 업무별로 구성하여 직관적인 사용자 접근이 가능
- 3 신고포털 주요업무에 흐름을 표시하였으며, 클릭하여 상세 내용을 확인가능
- 4 의료자원 신고 관련 새로운 공지사항 안내
- 5 신고절차 안내
 - 요양기관 현황 신고기관, 요양기관 현황 미신고기관
- 6 공인인증 및 의료자원 통합신고 관련 개인정보 보호 등 보안 프로그램 설치 안내
- 7 의료자원 신고업무와 관련된 사이트 직접 이동
- 8 고객센터 연락처 안내 및 원격 지원 요청 기능 제공

● 로그인 방법



- ① 공인인증서를 통하여 로그인 시
 - '공인인증서 로그인'을 클릭
- ② 요양기관 현황 미신고 기관 비회원 로그인 시
 - 비회원 본인인증(공인인증서 인증 또는 휴대폰 인증)후 로그인
- ③ 신규회원으로 가입하고자 할 때는 '회원가입하기'를 클릭(심평원 포털 시스템 회원 가입으로 이동)
- ④ 공인인증서 발급, 폐기, 이동, 복사 등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공인인증센터'를 클릭(공인인증서 관리 사이트로 이동)



● 뷰어 다운로드

보건의료자원통합신고포털

로그인 서면신고진행조회 회원가입 고객센터

서비스안내 개설신고·변경 현황신고·변경 휴·폐업 관계기관정보등록 정보마당 통계 마이페이지

개설신고·변경
병·의원 및 약국 개설
지급계좌신고 등

휴·폐업
병·의원 및 약국
휴·폐업 신고

현황신고·변경
기본현황 시술·인력·
장비·특수운영현황 등

**관계기관정보
등록**
외부기관(협회, 의학회
등) 관리정보 등록

개설신고·변경

병·의원 개설, 약국 개설, 지급계좌 신고 업무에 지원합니다.
요양급여비용 청구용 위해서는 지급계좌 신고 및 요양기관 회원가입을 하여야 합니다.

보건의료자원통합신고포털

새로운 정보가 있습니다.

[1/2] < >

공지사항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 간호인력 신고방법안내	2019-04-03
2019년 2분기 검체검사 질 가산을 조회	2019-04-03
종환자실 전담연문의 가산수가관련 고시 일부개정예 ..	2019-04-03
「간호사 처우개선 가이드라인」 모니터링 관련 자료 ..	2019-04-03
2019년 2/4분기 적용 요양기관 차등제 (간호등급) 및 ..	2019-04-03
의료장비 바코드 라벨 온라인 출력 재안내	2019-04-03
의료장비 전산접점 대상 장비 안내	2019-04-03
CT검사 및 재검사 가이드라인	2019-04-03
2019년 1분기 검체검사 질 가산을 조회	2019-04-03

요양 기관 현황 신고 기관

요양 기관 현황 미신고 기관

- 1 **개설신고**
병의원개설, 약국개설
- 2 **지급계좌신고**
요양기관 지급계좌, 청구 소프트웨어, 사업자 등록번호
- 3 **장비신고**
일반장비, 전방장비, 특수장비
- 4 **식대·차등신고제**
간호관리료 차등제, 입원료 차등제, 원화의료 수가제

1 한글뷰어
엑셀뷰어
PDF뷰어

공인인증센터 개인정보처리방침 보안프로그램설치 뷰어다운로드

- 1 보건의료자원 통합신고포털에서 사용하는 뷰어들을 제공
 - 한글뷰어, 엑셀뷰어, PDF뷰어 제공

● 신고포털 서비스 안내



① 통합신고포털 홍보

- 통합신고포털 소개 및 홍보(홍보 영상 및 포스터)

② 통합신고 안내

- 신고일원화 이후의 변경된 절차 안내

③ 신규 개설

- 의료기관 및 약국의 신규개설 절차 안내

④ 지급계좌 신고

- 개설 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요양급여비용을 신청하기 위한 계좌번호 등록

⑤ 휴업 및 폐업

- 의료기관 및 약국의 휴업과 폐업 절차 안내

⑥ 현황 변경

- 의료기관의 시설/대표자/진방(특수장비)현황 변경에 대한 절차 안내

⑦ 의료장비 신고(변경)

-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 특수의료장비 및 일반장비의 현황신고 및 변경 절차 안내

⑧ 관할 심사평가원 안내

- 관할 심사평가원의 연락처 및 약도를 안내



9 기타제도안내

- 입원환자 간호관리료 차등제
- 중환자실 간호관리료 차등제
- 요양병원 입원료 차등제
- 의료급여 정신과 입원수가 차등제
- 완화의료수가 가산제
- 입원환자 식대

10 시·도 위임사무안내

- 지자체별, 종별, 설립구분별, 시군구 위임여부 및 위임적용/종료 일자

● 서면신고 진행조회

1 신고인이 지자체에 서면신고로 접수한 민원접수번호를 입력하면 관련 신고자료의 처리상태 등 민원진행상황을 제공

- 민원명, 민원접수번호, 접수자명, 신청자명, 신청일, 접수일, 처리예정일, 법정처리일수, 처리상태, 담당부서, 담당자명, 담당자연락처

2-2 보건의료자원 통합신고포털 시스템 관련 자주하는 질문(FAQ)

연번	구분	문의사항	답변내용
1		통합신고포털 접속이 안 돼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보건의료자원 통합신고포털은 Internet explorer 접속만 가능(Chrome, Microsoft edge는 접속 불가능) Internet explorer 접속이 불가능할 경우 인터넷 옵션 → 보안 탭 → 신뢰할 수 있는 오른쪽 '사이트' 버튼 → [*.hurb.or.kr]를 추가 후 실행
2		개설신고나 지급계좌신고 시 비회원로그인이 안돼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신고포털 빠른서비스'의 첫 화면에 있는 로그인 버튼을 클릭하여 로그인 할 경우 로그인 불가능하고, '개설 신고'나 '지급계좌신고'해당 메뉴에서 비회원 로그인 가능함 확정 기관(지급계좌 신고완료기관)은 비회원로그인 불가능하고 공인인증서 로그인만 가능함
3	접속 및 로그인	보건의료자원 통합신고포털 공인인증서 로그인이 안돼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아래 순서대로 진행시 공인인증서 로그인 가능함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지급계좌신고 완료 2) 건강보험공단에서 공인인증서를 발급 3) 발급받은 공인인증서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에 등록 4) 통합신고포털 공인인증서 로그인 * 2~3과정은 심평원 국민홈페이지 - 공인인증센터 안내 참고 보건의료자원통합신고포털 하단 보안 프로그램 설치를 클릭하시고 필수 프로그램 2개(KSIGN 툴킷, SSO 모듈)를 모두 설치
4		동일한 법인의 의료기관을 여러 개 개설 중인데 하나의 공인인증서만 로그인 인증 실패해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동일 법인이라도 의료기관 하나 당 하나의 공인인증서가 발급되므로, 각각의 인증서별 기한이 상이함 여러 개 중 하나의 공인인증서만 기한이 만료되었는지 확인이 필요하며 만료된 공인인증서는 국민 홈페이지 >공인인증센터> 공인인증서 발급안내를 참고하여 재발급 해야함



연번	구분	문의사항	답변내용
5	기본현황 신고	지급계좌신고 2차 인증 단계에서 대표자 성함과 주민등록번호가 일치하지 않는다는 팝업창이 떠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면허 발급 당시 대표자 이름을 'AAA' (개명전)로 발급 받고, 개설신고는 대표자명을 'BBB'(개명후)로 신고 할 경우 불일치 팝업 발생함 • 각 병원별 개설 현황 담당자에게 유선 통화하여 개명 후 이름으로 변경 요청 후 2차 인증 재시도
6		지급계좌신고 시, 최종제출버튼을 클릭해도 아무런 반응이 없어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팝업 화면 등 사용자가 기존 설정 해놓은 정보를 아래 순서대로 초기화해야 제출이 가능 1. 인터넷옵션 > 일반탭 > 검색기록 > '삭제'버튼 클릭 후 모든험목 체크 > '삭제'버튼 클릭 2. 인터넷옵션 > 개인정보탭 > '팝업차단사용'해제 3. 인터넷옵션 > 고급탭 > '원래대로'버튼 클릭
7		지급계좌신고 시 진료과목 탭에서 임시저장 버튼이 안보여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급계좌신고 시 진료과목은 신고사항이 아니며 확인용도의 화면이므로 임시저장 버튼이 없습니다. 다음 탭을 선택하셔서 신고를 계속 진행해주세요.
8	인력신고	신고포털 대진의(약)사 신고 시에 기본정보 입력 후, 임시저장을 하면 "대진은는 최종근무일을 입력하셔야 합니다."라는 팝업 메시지가 뜨고 더 이상 진행이 되지 않습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진의(약)사의 대체종료일자를 입력하지 않은 경우 발생하는 알림 메시지이므로 대체기간의 종료일자 입력여부 확인필요
9		신고포털 인력현황에서 신규신고를 클릭하면 '현재 작성 또는 처리 중인 내역이 있습니다.'라는 안내문구가 뜨는데 조회결과에서는 처리중인 건이 보이지 않습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접수일자가 자동으로 최근 6개월로 세팅되어 있는데 접수 시작일자를 이전으로 설정 후 조회 및 확인 필요
10		EXCEL업로드를 통해 인력신고를 진행중인데 "오류가 발생하였습니다. 심평원에 문의하세요"라는 메시지가 나와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EXCEL업로드를 통해 인력신고를 진행할 경우, EXCEL 서식의 항목에 코드값을 입력해야 합니다. (해당 항목의 타이틀에서 입력 코드확인 가능) 예1) 면허종별은 '의사'의 경우 '01'입력 예2) 근무형태는 '상근'의 경우 'A1' 입력

연번	구분	문의사항	답변내용
11	시설신고	보건소에서 시설(수술실)신고를 했는데 수술실 명칭을 국소부분마취수술실로 명칭 변경 방법 문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통합신고포털 또는 보건소에서 기존에 시설(수술실) 신고를 했을 경우 명칭 변경은 직접 지자체 방문하여 변경 신고를 해야함.
12		요양기관 상세현황변경 신고 탭에서 시설 변경 시 '허가사항 변경 병실수와 변경 후 병실수가 일치하지 않습니다' 팝업 처리 방법 문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자체 신고(허가) 완료 후 상세현황변경을 진행해야 합니다. 1) 현황신고·변경 > 관할지자체 신고(허가) > 의료기관(시설) 변경신고 완료 2) 현황신고·변경 > 심사평가원 신고 요양기관 시설 상세 변경신고
13	장비신고	특수장비 현황신고에서 장비보유현황에 '변경신고, 사용구분, 인력변경'버튼이 보이지 않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수장비인력신고목록'탭에서 '반려재접수'버튼 클릭 후 '삭제'버튼을 클릭하면 버튼이 보이게 됩니다.
14	신고일반	신고화면에서 하단 버튼(예: 최종제출 or 임시저장)이 보이지 않습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요양기관 컴퓨터사양에 따라 해상도가 달라 일괄 조정이 불가능함 화면 확대/축소 버튼으로 조정하여 확인 가능 • 신고포털화면 오른쪽 상단 도구(톱니바퀴 아이콘) → "확대/축소" → 75% 로 축소하면 하단에 버튼으로 조정가능
15		접수내역 확인 혹은 접수증 출력 시 접수내역 확인이 되지 않고 백지 화면으로 보입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건의료자원통합신고 포털 실행 시, 프로그램 설치 내역 화면에서 렉스퍼트(Rexpert) 프로그램을 설치 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16		신고포털에서 기신고된 건의 처리상태가 '(지자체)신청반려' 또는 '(지자체)보완요청' 또는 '(심평원)보완요청'일 때 요양기관이 접수취소 또는 재작성 하고자할 경우 어떠한 방식으로 재작성을 하거나 접수취소 해야 하나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고목록에서 재작성하거나 접수 취소하고 싶은 기존 접수 건에 대해 '재작성' 또는 '재접수'버튼클릭 • 새로운 접수번호로 신고목록에 1줄 생성되고 기존에 신고된 접수번호 건은 (지자체)반려재접수 완료, 재접수 완료 처리. • 새로운 접수번호로 생성된 건에 대해서 <ol style="list-style-type: none"> a. 재작성하고자 할 경우: '계속입력' 버튼을 클릭 하여 새로운 접수번호에서 재작성 b. 접수 취소하고자 할 경우: '작성취소' 버튼을 클릭 하여 해당 접수건 접수취소

2021년

보건의료자원

통합신고포털 매뉴얼

Health Insurance Review & Assessment Service



요양기관 기본현황 신고



1. 요양기관 기본 현황 신고





PART 1. 요양기관 기본 현황 신고

1-1 | 개설신고·허가

● 개요

- 의료기관 개설·허가신청은 보건의료자원 통합신고포털 또는 서면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신청)
- 지방자치단체 장의 신고 등 처리결과 통보에 따라 요양기관 현황신고(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4호 서식)의 첨부 서류(의료기관 개설신고증명서, 의료기관 개설허가증)를 심사평가원에 제출한 것으로 봄
 - 다만, 의료기관 개설자(대표자)는 요양기관 현황신고를 위해서는 현황신고 항목(요양급여비용 수령 금융기관, 사업자등록번호, 시설 및 인력세부현황)을 심사평가원에 제출한 것으로 봄
 - 심사평가원에 요양기관 현황신고 미완료 시, 심사평가원으로 일원화 된 신고(대진의, 의료인 수 변경신고 등)는 심사평가원에 신고 불가능
 - 지방자치단체의 신고 등 처리결과 통보는 「국민건강보험법」의 요양급여비용 심사 및 지급 등의 기준이 됨

● 관련법령

- 의료법 제33조, 제35조제1항, 제36조
- 의료법 시행규칙 제25조, 제27조, 제30조 제1항 제 30조의2, 제32조
- 보건의료자원 통합신고포털 운영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고시 제2015-192호)

● 진행절차

- 1) 보건의료자원 통합신고포털(www.hurb.or.kr) 접속
- 2) '개설신고·변경' ▶ '의료기관 개설신고(허가신청)' (또는 '약국 개설 등록신청') 클릭
- 3) 대표자 본인인증 후 우측 상단 '의료기관 개설' (또는 '약국개설') 버튼 클릭
 - 탭 순서대로 입력 진행
 - 진행 중 안내에 따라 필요 서류를 스캔하여 첨부
 - 사전검토 신청완료 후 민원 접수처리가 되면, 의료기관 개설신고(허가) 완료 시 의료기관 개설 신고(허가)증명서 발급

● 제출서류

<종류별 제출서류>

구 분	관련규정	제출서류
의원급 의료기관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조선원	「의료법」 제3조, 제33조, 제35조, 제36조 1. 개설하려는 자가 법인인 경우(「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준정부기관 및 의료법인인 제외): 법인설립허가증 사본, 정관 사본 및 사업계획서 사본 각 1부 2. 개설하려는 자가 조산사인 경우: 면허증 사본 1부 3. 건물평면도 사본 및 그 구조설명서 사본 1부 4. 의료인 등 근무인원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경우: 면허(자격)증 사본 1부 ※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면허증(개설하는 자가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인 경우만 해당)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고인이 직접 제출 5. 「의료법」 제36조제1호·제2호·제4호 및 제5호의 준수사항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 : 자가점검표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5728호('17.6.29.) ※ 다운로드 위치 : 보건의료자원 통합신고포털(www.hurb.or.kr) > 정보마당 > 서식자료실 ※ 필요 시 의료기관의 진료시설(입원실, 검사실 등) 및 안전관리시설에 대한 사진 첨부)을 제출하며, 이 외에 관할 행정청에서 필요한 서류를 추가로 요구할 수 있음
병원급 의료기관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종합병원, 정신병원	「의료법」 제3조, 제33조의2, 제33조의3, 제35조, 제36조 1. 개설하려는 자가 법인(의료법인은 제외): 법인설립허가증 사본(「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준정부기관은 제외), 정관 사본 및 사업계획서 사본 각 1부 2. 개설하려는 자가 의료인인 경우: 사업계획서 사본 1부 3. 건물평면도 사본 및 그 구조설명서 사본 1부 4. 의료인 등 근무인원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경우: 면허(자격)증 사본 1부 5.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38조제3항 본문에 따른 전기안전점검확인서(종합병원만 해당) ※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면허증(개설하는 자가 의료인인 경우만 해당)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제출 6. 「의료법」 제36조제1호·제2호·제4호 및 제5호의 준수사항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 : 자가점검표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5728호('17.6.29.) ※ 다운로드 위치: 보건의료자원 통합신고포털(www.hurb.or.kr) > 정보마당 > 서식자료실 ※ 필요 시 의료기관의 진료시설(입원실, 검사실 등) 및 안전관리시설에 대한 사진 첨부)을 제출하며, 이 외에 관할 행정청에서 필요한 서류를 추가로 요구할 수 있음
약국	「약사법」 제20조	- 한약사 면허증 사본(신청인이 한약사인 경우만 해당하며, 신청서를 제출할 때 면허증 원본을 제시 하는 경우에는 사본의 제출을 갈음) ※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약사 면허증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그 사본을 제출



● 온라인 신고 따라하기(의료기관 개설)

보건의료자원통합신고포털 로그인 서면신고전행조회 회원가입 고객센터

서비스안내 **개설신고·변경** 현황신고·변경 휴·폐업 관계기관정보등록 정보마당 통계 마이페이지

개설
병·의원 및 약국 개설
지급계좌신고 등

휴·폐업
병·의원 및 약국
휴·폐업 신고

보건의료자원통합신고포털
새로운 정보가 없습니다.

개설
병·의원 개설, 약국 개설, 지급계좌 신고 업무를 지원합니다.
요양급여비용 청구에 위해서는 지급계좌 신고 및 요양기관 회원가입을 하여야 합니다.

지자체
병·의원 및 약국 개설신고 절차
대표자 본인인증 > 개설신고 > 개설완료 > 요양기초 여부 > 지급계좌 신고 > 요양기관 회원가입 > 건강보험공단 > 요양기관 인증서발급 > 인증서 등록

심평원

공지사항

제목	작성일
테스트 작업 진행	2019-04-17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 간호인력 신고방법안내	2019-04-03
2019년 2분기 검체검사 질 가산을 조회	2019-04-03
중환자실 전담전문의 가산수가관련 고시 일부개정예 ..	2019-04-03
'간호사 처우개선 가이드라인', 모니터링 관련 자료 ..	2019-04-03
2019년 2/4분기 적용 요양기관 차등제 (간호등급) 및 ..	2019-04-03
의료장비 바코드 라벨 온라인 출력 제안내	2019-04-03
의료장비 전산점검 대상 장비 안내	2019-04-03
CT검사 및 재검사 가이드라인	2019-04-03

요양 기관 현황 신고 기관 **요양 기관 현황 미신고 기관**

- 1 **개설신고**
병의원개설, 약국개설
- 2 **지급계좌신고**
요양기관 지급계좌, 청구 소프트웨어, 사업자 등록번호
- 3 **장비신고**
일반장비, 전방장비, 특수장비
- 4 **식대·차등신고제**
간호관리료 차등제, 입원료 차등제, 원화의료 수가제

1 보건의료자원 통합신고포털(www.hurb.or.kr) 접속

보건의료자원통합신고포털 로그인 서면신고전행조회 회원가입 고객센터

서비스안내 **2** **개설신고·변경** 현황신고·변경 휴·폐업 관계기관정보등록 정보마당 통계 마이페이지

3 **의료기관 개설신고(허가신청)**
의료기관 개설 변경신고(허가변경신청) 약국개설등록 신청 약국등록사항 변경신청
지급계좌 신고 기호부여 접수이력 조회

휴·폐업
병·의원 및 약국
휴·폐업 신고

보건의료자원통합신고포털
새로운 정보가 없습니다.

개설신고·변경
병·의원 및 약국 개설신고 절차
대표자 본인인증 > 개설신고 > 개설완료 > 요양기초 여부 > 지급계좌 신고 > 요양기관 회원가입 > 건강보험공단 > 요양기관 인증서발급 > 인증서 등록

공지사항

제목	작성일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 간호인력 신고방법안내	2019-04-03
2019년 2분기 검체검사 질 가산을 조회	2019-04-03
중환자실 전담전문의 가산수가관련 고시 일부개정예 ..	2019-04-03
'간호사 처우개선 가이드라인', 모니터링 관련 자료 ..	2019-04-03
2019년 2/4분기 적용 요양기관 차등제 (간호등급) 및 ..	2019-04-03
의료장비 바코드 라벨 온라인 출력 제안내	2019-04-03
의료장비 전산점검 대상 장비 안내	2019-04-03
CT검사 및 재검사 가이드라인	2019-04-03
2019년 1분기 검체검사 질 가산을 조회	2019-04-03

요양 기관 현황 신고 기관 **요양 기관 현황 미신고 기관**

- 1 **개설신고**
병의원개설, 약국개설
- 2 **지급계좌신고**
요양기관 지급계좌, 청구 소프트웨어, 사업자 등록번호
- 3 **장비신고**
일반장비, 전방장비, 특수장비
- 4 **식대·차등신고제**
간호관리료 차등제, 입원료 차등제, 원화의료 수가제

2 '개설신고·변경' 선택

3 '의료기관 개설신고(허가신청)' 클릭

서비스안내 **개설신고·변경** 현황신고·변경 휴·폐업 관계기관정보등록 정보마당 통계 마이페이지 고객센터

국립의료원 [1110001] 2016-01-18 17:00:33 IP 0:0:0:0:0:0:1 로그아웃(58:09) 서면신고진행조회 마이페이지 고객센터

개설신고·변경 < 의료기관 개설신고(허가신청) >

개설신고·변경 > 의료기관 개설신고(허가신청) 점검요청 도움말

비밀의 본인인증 팝업

본인확인

개설등록은 공인인증서, 휴대폰 중 하나를 선택하여 본인확인 절차를 반드시 진행하셔야 합니다.

공인인증서 인증

공인인증서로 본인 확인이 가능합니다.

인증하기

휴대폰 인증

본인 명의의 휴대폰으로 인증번호를 수신하여 본인 확인이 가능합니다.

인증하기

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분건전 이용희망으로부터의 피해 예방 및 사용자보호등의 목적으로 본인여부를 확인합니다.

② 본인인증이 끝난후에 개설성고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 비밀번호 개설신고 절차: 개인인증 → 개설신고페이지 이동 → 개설신고사항 입력

- 안내전화: 1600-1522 [임시인증](#)

① 안내사항
각 인력종별 신고 메뉴에서 절차에 따라 신고를 진행합니다.

① 진료비 청구 방법 안내
요양급여비용 청구와 심사결과통보서 수신 등을 위해서는 「진료비청구포털서비스」 이용을 신청해야 합니다.

- 신청절차: 기호부여완료 → 포털회원가입 → 전산청구 이용신청

- 안내전화: 1644-2000

[진료비청구포털서비스 안내로 바로가기](#)

처리일시 **의료기관 개설** 총: 0 건

접수확인

- ④ 대표자 본인인증
- ⑤ 우측 상단 '의료기관 개설' 클릭



서비스안내 **개설신고·변경** 현황신고·변경 휴·폐업 관계기관정보등록 정보마당 통계 마이페이지

개설신고·변경 < 의료기관 개설신고·허가

의료기관 개설신고·허가 변경 **6 기본** 진료과목 시설 인력 최종제출

개설신고·변경 > 의료기관 개설신고·허가 - 의료기관 개설신고

점검요청 도움말

원소를 신고여부

의료기관

의료기관 개설신고(의료법)
 의료기관 개설신고(의료법) + 요양기관 현황신고(국민건강보험법)

명칭: [선택] [등록명칭 확인] [개설예정일] [선택] [--] [--]

종류: [선택] [선택]

소재지: 주소검색

설립구분: [선택] [선택]

접수기관: [선택]

대표형태: 개인 법인 집단개원 운영 위탁여부: 아니요 예

연락처: 전화 [선택] [] - [] - [] 팩스 [선택] [] - [] - []

종사자 수: 의료인 수 [] 명 의료기사 수 [] 명 종업원 [] 명 **① 인력 입력시 자동 계산됨**

성명: [선택] 주민등록번호 * (외국인등록번호) [] - [] - [] [면허지역조회]

주소: 주소검색

대표자

전화: 유선 [선택] [] - [] - [] 휴대전화: [선택] [] - [] - []

e-mail: [] @ []

면허번호: [] 복수면허여부: 복수면허소지

전문의 자격종류: [선택] 전문의 자격번호: []

법인명: [] 법인등록번호: []

법인 주소: 주소검색

연락처: 유선 [선택] [] - [] - [] 팩스 [선택] [] - [] - []

① 추가 신고한 공동개설자의 진료내역청구를 위해 인력상세신고(심평원인력신고)에서 인력상세내역을 함께 신고하여야 합니다. 공동개설자 추가

구분	성명	주민번호	면허번호	자격종류	자격번호	주소	연락처	상세신고
데이터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의료법 시행규칙」 제35조 제1항의거하여 부속의료기관으로 개설할 경우 원소속기관에 대한 정보를 입력합니다.

소속기관

기관명칭: [] 종업원수: []

소재지: 주소검색

의료기관: []

6 임시저장 목록

6 기본사항을 순서대로 입력 후 임시저장

의료기관 개설신고 · 허가

속 개요 > 의료기관 개설신고 · 허가 - 의료기관 개설신고

7 진료과목 시설 인력 최종제출

①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4호서식] 및 「의료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 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 [별표 5]에 따라 기재하여야 합니다.

② 의과 (① 의료법 제 43조(진료과목)에 의거 병상급이상 의료기관에서 타 면허 의료인을 고용, 의료법 시행규칙(별표)에 규정한 진료과목만 등록할 수 있습니다.

선택	코드	진료과목	선택	코드	진료과목	선택	코드	진료과목
<input type="checkbox"/>	01	내과	<input type="checkbox"/>	09	마취통증의학과	<input type="checkbox"/>	29	가정의학과

③ 지과

선택	코드	진료과목	선택	코드	진료과목	선택	코드	진료과목
<input type="checkbox"/>	90	구강악안면외과	<input type="checkbox"/>	99	치과보철과	<input type="checkbox"/>	92	치과교정과
<input type="checkbox"/>	93	소아치과	<input type="checkbox"/>	94	치주과	<input type="checkbox"/>	95	치과보존과
<input type="checkbox"/>	96	구강내과	<input type="checkbox"/>	97	영상치의학과	<input type="checkbox"/>	98	구강병리과
<input type="checkbox"/>	99	예방치과						

④ 한방과

① 의료법 제 43조(진료과목)에 의거 병상급이상 의료기관에서 타 면허 의료인을 고용, 의료법 시행규칙(별표)에 규정한 진료과목만 등록할 수 있습니다.

선택	코드	진료과목	선택	코드	진료과목	선택	코드	진료과목
<input type="checkbox"/>	80	한방내과	<input type="checkbox"/>	85	한방외과			

면허선택

7 임시저장 목록

7 해당 진료과목에 체크 후 임시저장
(진료과목의 경우 대표자 면허종별, 의료기관 종류에 따라 위 화면의 목록과 다를 수 있음)

의료기관 개설신고 · 허가

속 개요 > 의료기관 개설신고 · 허가 - 의료기관 개설신고

기본 8 시설 인력 최종제출

8 <운영, 허가> 입원병상

총운영수
*자동계산됨

병상	병상	총해가수	병상	병상	시설 총면적(m ²)
0	0	0	0	0	0 m ²

① 「의료법 시행규칙」, 별표 3 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별도로 정하는 시설규격에 적합하여야 합니다.
 ② 입원병상에는 「의료법」 제27조의2제2항에 따른 외국인환자를 위한 병상, 병상수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라 응급의료기관이 응급환자를 위해 확보하여야 하는 예비병상을 포함하여 기록합니다.
 ③ 격리실은 전염성 환자, 전력이 막대한 환자 및 화상 환자 등을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을 말합니다.
 ④ 입원병상의 병상, 병상수는 특수진료실의 병상, 병상수가 포함되지 않도록 구분하여 기록합니다.
 ⑤ 설계기준 상급병실, 병상수는 입원료 기준 상급병실, 병상수와 동일하게 기록하고, 설계기준 일반병실 - 병상수는 입원료 기준 일반병실 - 병상수를 물리친 인실로 구분하여 기록합니다.
 ⑥ 입원료기준 병상, 병상리 인실 구분은 도입금액비를 청구 시 산정하는 입원료를 기준으로 구분합니다.

⑦ 입원병상 및 병상현황

구분	병방병동 상호접속 적용여부	면적(m ²)	입원료 기준 병상수	입원료 기준 병상수	상제 기준 병상수	상제 기준 병상수
정신과병세	정신과병세(일반)	1인			0	0
		2인			0	0
		3인			0	0
		4인		0	0	0

⑧ 특수진료실

구분	원방병동 상호접속 적용여부	병상수	병상수
수용실		0	0
회복실		0	0
환자치료실		0	0
물류실		0	0
물류실		0	0
일반병상		0	0
격리병상	유입	0	0
비유입		0	0
분만실		0	0
신생아실		0	0
인공신장실		0	0
관내치료실		0	0

⑨ 기타시설

구분	시설유무	구분	시설유무	시설 보유수
환선실	환선실내부 <input type="checkbox"/>	금식시설	<input type="checkbox"/>	
	환선실외부 <input type="checkbox"/>	방사선장차	<input type="checkbox"/>	
환외공통이동	<input type="checkbox"/>	병리과부실	<input type="checkbox"/>	
임상검사실	<input type="checkbox"/>	세탁물처리시설	<input type="checkbox"/>	
조제실	<input type="checkbox"/>	소독시설	<input type="checkbox"/>	
조형물포저리실	<input type="checkbox"/>	시계실	<input type="checkbox"/>	
혈액은행	<input type="checkbox"/>	한방요양실	<input type="checkbox"/>	
모자동실	<input type="checkbox"/>	의무기록실	<input type="checkbox"/>	
		자기발전실	<input type="checkbox"/>	
		장애식당	<input type="checkbox"/>	
		작물물처리시설	<input type="checkbox"/>	

⑩ 입원병상 및 특수진료실 등 시설현황이 정확하게 입력되어야 인원등록시 병동분류가 가능합니다.

8 임시저장 목록

8 해당 시설 정보 입력 후 임시저장



의료기관 개설신고 · 허가

개설 > 의료기관 개설신고 · 허가 - 의료기관 개설신고
점검요청
도움말

기본
진료과목
9 인력
의종제출

기타인원현황
이력 설정
9 인력상세 신고

【인원현황】 총
0 명 (정신보건전문요원 제외)

인력구분	인원수
의사계	
일반의	
전문의	
치과 의사	
한 의사	
조선사	
간호사계	
간호사	
가정간호사	
보건간호사	
마취간호사	
정신간호사	
간호조무사	
약사계	
약사	
한약사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치과기공사	

④ 목록경신이 인되는 경우 새로고침 을 눌러주세요.
9 임시저장
목록

9 인력상세 신고 및 인력 정보 입력 완료 후 임시저장

의료기관 개설신고 - 허가
×

개설 > 의료기관 개설신고 - 허가 - 의료기관 개설신고
🗨️ 질문요청 📄 도움말

기본 > 진료과목 > 시설 **10** > 최종제출
🔍

○ 전달사항 등록 지자체내소변독인

특수서류 우편 방문 파일첨부

① 첨부서류를 스캔하여 파일 형식으로 올립니다.

파일추가
삭제
다문로드

파일첨부	파일명	파일용량

① 파일업로드가 모두 끝난 후에 전달사항을 작성하세요.

신고종류서신형 온라인 오프라인

○ 구비서류안내

신고인(개설자) 제출서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수수료
1. 개설하는 자가 법인(의료법인은 제외합니다) : 법인설립허가증 사본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준정부기관은 제외합니다), 정관 사본 및 사업계획서 사본 각 1부 2. 개설하는 자가 의료인인 경우 : 사업계획서 사본 각 1부 3. 건물평면도 사본 및 그 구조설명서 사본 1부 4. 의료인 등 근무인원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경우 : 면허(자격)증 사본 1부 5.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36조제4항 본문에 따른 전기안전점검확인서(종합병원만 해당합니다) 6. 「의료법」 제36조제1호·제2호·제4호 및 제5호의 준수사항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 * 자가검진(발표) * 의료 시 의료기관의 진료시설(입원실, 검사실 등) 및 안전관리시설에 대한 사전 심부름 제출하며, 이외에 판할 행정청에서 필요한 서류를 추가로 요구할 수 있음	1. 법인등기사항증명서 2. 면허증 사본(개설자가 의료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결정합니다.

구비서류 열람 시간동시

전체선택
면허자격증(의료인 등)
의료기관개설신고공통서류
법인등기부등본

① 본인은 이 신청에 따른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 36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유의사항

- ① 종합병원 병상 차등분류 한방병원 또는 요양병원 개설자가 그 개설 장소를 이전하거나 허가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변경 사항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폐업 또는 1개월 이상 휴업(입원환자가 있는 경우에는 1개월 미만의 휴업도 포함합니다)하려는 경우에는 신고하여야 합니다(「의료법」 제38조 및 제40조).
- ②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종합병원 병상 차등분류 한방병원 또는 요양병원을 개설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의료법」 제38조).
- ③ 개설 장소를 이전하거나 허가 사항을 변경하려고 할 때 허가를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5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의료법」 제40조).
- ④ 의료기관을 개설하지 아니하고 의료업을 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의료차과업 한의원을 또는 조산원을 개설한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의료법」 제30조)
- ⑤ 휴업 또는 폐업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의료법」 제42조).
- ⑥ 신규 개설했거나 의료기관의 종류 또는 개설자 변경의 경우, 입원병실의 변경이 발생한 경우에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요양급여비용 청구를 위해서는 허가증 발급 이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오징기안 신청보고를 완료하여야 합니다(「국민건강보험법」 제43조).

○ 처리 절차

신고서(신청서)
접수
검토
결재
신고공통서(허가증)작성
신고공통서(허가증)발급

신청만
처리기간
신청만

○ 작성자 정보등록

*신고자
서대현
*전화번호
-
-
처리결과 SMS 수신여부

e-mail

선택

☑️ 통합신고포털을 통한 시간경로가 완료되면, 자동으로 전자 민원결수를 진행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① "최종제출"은 "사전검토 요청"을 의미합니다.
- ② "사전검토 요청"으로 신청된 민원은 지자체 업무담당자가 내용을 사전 검토한 후 정식 결수를 할 수 있습니다.
 - ️ (정식 결수 버튼을 클릭한 날이 신고일이 됩니다)
- ③ 다만, 아래 동의여부를 체크하시면 신청된 민원의 사전 검토가 완료되는 즉시 자동으로 정식 결수를 진행하게 됩니다.
 - ️ (이 경우 사전검토 완료일이 신고일이 됩니다)
- ④ 처리과정 : (민원인) 사전검토 요청
 - ️ (지자체) 사전검토(보완요청 및 미보완시 반박)
 - ️ (민원인) 정식 신고(신청)
 - ️ 민원가 처리

10
최종제출
미완료

10 구비서류 확인·첨부 및 최종제출



● 온라인 신고 따라하기(약국 개설)

보건의료자원통합신고포털

로그인 서면신고전행조회 회원가입 고객센터

서비스안내 **1** 개설신고·변경 현황신고·변경 유·폐업 관계기관정보등록 정보마당 통계 마이페이지

의료기관 개설신고(허가신청) 의료기관 개설 변경신고(허가변경신청) **2** 약국개설등록 신청 약국등록사항 변경신청

지급계좌 신고 기호부여 접수이력 조회

유·폐업: 발의 및 약국 유·폐업 신고

관계기관정보 등록: 임의기관(협회, 의학회 등) 관리정보 등록

지자체: 발의 및 약국 개설신고 절차

심평원: 건강보험공단

대표자 본인인증 > 개설신고 > 개설완료 > 요양기호 여부 > 지급계좌 신고 > 요양기관 회원가입 > 요양기관 인증서발급

공지사항

공지사항	요양 기관 현황 신고 기간	요양 기관 현황 미신고 기간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 간호인력 신고방법안내	2019-04-03	
2019년 2분기 검체검사 질 가산을 조회	2019-04-03	
중환자실 전문전문의 가산수가관련 교시 일부개정예 ...	2019-04-03	
「간호사 처우개선 가이드라인」 모니터링 관련 자료 ...	2019-04-03	
2019년 2/4분기 적용 요양기관 차등제 (간호등급) 및 ...	2019-04-03	
의료장비 비포드 라벨 온라인 출력 재안내	2019-04-03	
의료장비 전산점검 대상 장비 안내	2019-04-03	
CT검사 및 재검사 가이드라인	2019-04-03	
2019년 1분기 검체검사 질 가산을 조회	2019-04-03	

- 1** 개설신고
발의원개설, 약국개설
- 2** 지급계좌신고
요양기관 지급계좌, 청구 소프트웨어, 사업자 등록번호
- 3** 장비신고
일반장비, 전방장비, 특수장비
- 4** 식대·차등신고제
간호관리료 차등제, 임의로 차등제, 완화의료 수가제

- 1 '개설신고·변경' 선택
- 2 '약국개설등록 신청' 클릭

보건의료자원통합신고포털

가톨릭대학교의료의도성모병원 [11100028]

2016-01-18 17:00:33 0:0:0:0:0:0:1

로그아웃 (59 : 39) 서면신고전행조회 마이페이지 고객센터

서비스안내 **3** 개설신고·변경 **4** 약국개설등록 신청

의료기관 개설신고·허가 의료기관 개설신고·허가 변경 약국개설등록 신청 약국개설등록 변경 지급계좌 신고 기호부여 접수이력 조회

회원 로그인

로그인하시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 받으실 수 있습니다.

공인인증서 로그인

요양기관현황미신고기관 비회원 로그인

회원가입하기 공인인증센터

-안내전화: 1644-2000

전문의료정보서비스 안내로 바로가기

- 3 대표자 본인인증
- 4 우측 상단의 약국개설

< 약국 개설등록 신청 >

개설신고 · 변경 > 약국 개설등록 신청 - 약국 개설신고

점검요청 도움말

5 기본 (한)약사 최종제출

+원스톱 신고여부

약국 개설신고(의료법)
 약국 개설신고(의료법) + 요양기관 현황신고(국민건강보험법)

신청구분 신규등록 개설자 변경

약국

+명칭 동일명칭 확인 +개설예정일 - -

+소재지 주소검색

+접수기관

+영업면적(m²) m² 연락처 +전화 - - 선택
 FAX - - 선택

개설자

+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 - 면허자격요

면허종류 면허번호

+소재지 주소검색

등록기준지 주소

연락처 +전화 유선 - - 선택 휴대폰 - - 선택
 e-mail - 선택

결격사유

약사법 제 76조 제 1항에 따른 개설등록 취소사실 있음 없음

약사(藥事)에 관한 법령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 있음 없음

공동 개설자 신고

구분	성명	주민번호	면허번호	자격종류	자격번호	주소	연락처	휴대폰	Mail
데이터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5 임시저장 목록

5 기본사항을 순서대로 입력 후 임시저장

< 약국 개설등록 신청 >

개설신고 · 변경 > 약국 개설등록 신청 - 약국 개설신고

점검요청 도움말

기본 (한)약사 최종제출

6 신규등록 전체삭제

신고대상목록 약사 : 0 명 한약사 : 0 명 (총 : 0 명)

구분	면허종별	성명	약사형태	입사일자	근무형태	재직여부	오류구분	입력신고 변경
데이터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임시저장 목록

6 (한)약사정보 입력을 위해 신규등록 클릭



의료인력정보변경



기본정보

자격등록

○ 의(약)사 기본정보 신고항목

* 면허종별	✓ <input type="text"/>		
* 입사일자	✓ 2019-04-25 <input type="text"/>	최종근무일자	-- <input type="text"/>
* 성명	✓ <input type="text"/>	* 주민번호	✓ <input type="text"/> - <input type="text"/> <input type="button" value="면허확인"/>
면허취득일자	-- <input type="text"/>	면허번호	<input type="text"/>
* 의사형태	✓ -- <input type="text"/>	* 의사구분	✓ -- <input type="text"/>
* 근무형태	✓ -- <input type="text"/>		

7

임시저장

닫기

○ 의(약)사 신고항목 안내

- ① 개설자를 포함하여 근무하는 의료인을 입력합니다.
단, 법인의 경우 대표자가 해당 요양기관에 상근하는 경우에만 입력합니다.
- ① 입사일자는 개설일자로 자동 셋팅됩니다.
- ① 근무형태
 - 상근 : 주 5일, 주40시간 이상 근무하면서 3개월이상 고용계약체결을 한 경우 1인으로 산정
 - 비상근 : 주3일이면서 주20시간 이상 근무하는 경우 0.5인으로 산정
 - 전속 : 주4일, 주32시간 이상인 경우 의료법상 인력 1인 기준임
- ① 개설자(공동개설자)는 타기관 대진의, 봉직의(약)사 근무 불가능함
- ① 의사구분
 - 봉직의사: 일반의, 전공의, 전문의 포함
 - 의과(치과) 전공의 : 인턴, 레지던트 구분
 - 한방 전공의 : 일반수련의, 전문수련의 구분
- ① 의사형태
 - 개설자, 공동개설자, 봉직의(약)사

7 아래 안내사항 참고하여 탭순서 대로 작성 후 임시저장

기본 (한)약사 최종제출

지자체 팩스번호 확인

8 신고대상 목록

구비서류 팩스 우편 방문 파일첨부

파일첨부

① 첨부서류를 스캔하여 파일 형식으로 올립니다. + 파일추가 × 삭제 다운로드

파일명	파일용량

전달사항

① 파일업로드가 모두 끝난 후에 전달사항을 작성하세요.

신고증명서신청 온라인 오프라인

8 구비서류안내

다만, 신규면허 및 자격을 받은자에 한하여 제출하되 사회복지사의 자격증 및 교육이수증은 단서조항에 관계없이 모두 제출합니다.

신고인(개설자) 제출서류	한약사 면허증 사본(신청인이 한약사인 경우만 해당하며, 신청서를 제출할 때 면허증 원본을 제시 하는 경우에는 사본의 제출을 갈음합니다)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약사 면허증(신청인이 약사인 경우만 해당하며, 신청서를 제출할 때 면허증 원본을 제시하는 경우에는 담당 공무원의 확인을 갈음합니다)

8 유의사항

① 개설자 변경으로 인한 개설등록신청의 경우에는 사실조사

① 약국개설등록증 발급 이후 「국민건강보험법」 제47조에 따라 요양급여비용 청구를 위해서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요양기관 현황 신고를 완료하여야 합니다.

8 처리 절차

신청서 작성 > 접수 > 사실조사 > 기안 / 결재 > 등록증 작성

신청인 처리기관: 시 / 군 / 구

8 작성자 정보등록

* 신고자 * 전화번호 - - 처리결과 SMS 수신

e-mail @ . 선택

통합신고포털을 통한 사전검토가 완료되면, 자동으로 정식 민원접수를 진행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① "최종제출"은 "사전검토 요청"을 의미합니다.

① "사전검토 요청"으로 신청된 민원은 지자체 업무담당자가 내용을 사전 검토한 후 정식 접수를 할 수 있습니다.

□ (정식 접수 버튼을 클릭한 날이 신고일이 됩니다)

① 다만, 아래 동의여부를 체크하시면 신청된 민원의 사전 검토가 완료되는 즉시 자동으로 정식 접수를 진행하게 됩니다.

□ (이 경우 사전검토 완료일이 신고일이 됩니다)

① 처리과정 : (민원인) 사전검토 요청

□ (지자체) 사전검토(보완요청 및 미보완시 반려)

□ (민원인) 정식 신고(신청)

□ 인허가 처리

① 동의여부 미체크시 최종제출은 가능하나, 사전검토 완료 후 민원인이 직접 정식 신고(신청)를 해야합니다.

* 구비서류 열람 사전동의 약사 면허증 사본

①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약사 면허증 사본을 확인하

8 최종제출 미리보기

8 구비서류 확인·첨부 및 최종제출

※ 자가점검표는 '정보마당 > 서식자료실'에서 다운로드 및 작성하여 첨부



1-2 | 지급계좌 신고

● 신고요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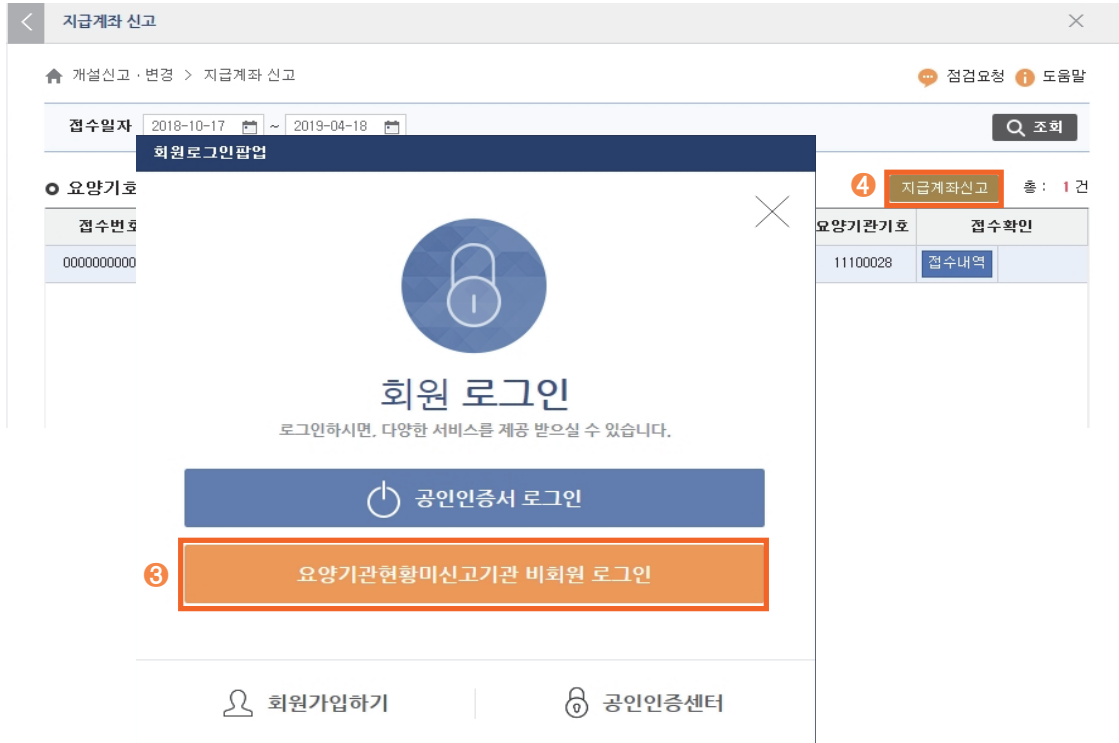
- 관할 지자체에서 민원 처리가 완료되면 자료가 심사평가원으로 전송되며, 검토 후 요양기관 기호 부여
- 요양기관현황신고서상에 기재된 금융기관명, 예금주, 계좌번호 등록
 - 개인 단독 개설인 경우 : 개설자 명의의 계좌로만 등록
 - 개인 공동(집단) 개설한 경우 : 주 개설자 명의로 계좌로만 등록
 - 개인 개설이 아닌 경우 : 법인 명의 또는 요양기관 명의 등의 계좌로만 등록

● 진행절차

- 1) '개설' ▶ '지급계좌 신고' 클릭
- 2) 대표자 본인인증 후 우측 상단의 '지급계좌 신고' 클릭
 - 탭 순서대로 입력 진행
 - 진행 중 안내에 따라 필요 서류를 스캔하여 첨부
 - 최종 제출 후 접수 처리가 되면, 심사평가원에서 검토 후 요양기관 기호 확정

● 온라인 신고 따라하기

- 1) '개설신고·변경' 선택
- 2) '지급계좌 신고' 클릭



③ 대표자 본인인증(비회원 로그인)

※ 심사평가원으로부터 안내받은 가요양기호 입력 + 대표자 공인인증서 또는 대표자명의 휴대폰으로 로그인(법인기관의 경우 법인공인인증서로 로그인)

④ '지급계좌 신고' 클릭



< 지급계좌 신고
×

↑ 개설신고 · 변경 > 지급계좌 신고 - 의료기관 요양기호확정신고 ▶ 점검유형 1 ▶ 도움말

기본

진료과목

시설

인력

회계제출

목록

5 명칭		*사업자등록번호	<input type="text"/> - <input type="text"/> - <input type="text"/>
설립구분		*금융기관명	<input type="text"/>
종류		*계좌번호	<input type="text"/>
개설신고(허가)번호		*예금주	<input type="text"/>
개설신고(허가)일		예금주명상이사유	<input type="text"/>
		청구8/W입체	<input type="text"/> <input type="button" value="검색"/> <input type="button" value="적용취소"/>

○ 특수운영현황

01 의료분업 예외지역관
 03 공돌이용기관
 05 가정간호 실시기관
 07 사회복지시설 축락의 및 협력기관(장기요양기관 제외)
 09 외국인근로자 등 소외계층 의료서비스 지원사업기관

02 응급의료기관
 04 개방병원
 06 인공과루기관
 08 장기이식 의료기관

① 첨부서류는 아래의 1~9번에 해당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1. 의료분업 예외지역 개설 확인증 사본 2.응급의료기관 지정서 사본 3.공돌이용계약서 사본 4.개방병원이용계약서 사본 5.가정간호 집합부서 운영 관련 사본
 6.인공과루기관 인력(시술경험자), 시설 및 장비 현황 사본 7.축락의 및 협력사회복지시설 계약 관련 서류 사본 8.장기이식 의료기관 지정서 사본
 9.외국인근로자등 소외계층 의료서비스 지원사업기관 인증서 사본

① 세부현황은 요양기호확정후 신고해야 합니다. **5**

○ 요양기호 재부여 기관 승계 처리

장비승계팝업

인력승계팝업

① 계좌 등 입력후 임시저장하고, 아래 인력 혹은 장비 선택하면 이전 기관의 인력 및 장비 승계 가능하며, 이를 실행원에서 신규입사 및 적용 처리합니다.

① 대표자 변경, 요양기관 종별 변경 등의 사유로 요양기호가 변경 될 경우 이전 요양기관의 인력, 진료과목, 시설, 장비를 승계합니다.
 (진료과목, 시설, 차등제 발상 정보 및 입원 환자식 운영 정보는 자동승계 처리되며, 진료과목 변경 사유 발생시에는 별도 진료과목 변경신고가 필요합니다. 또한, 양도양수 계약서 등 승계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최종제출 시 첨부해야 하며, 진방/특수장비 및 바코드 부여된 장비는 승계 처리할 수 없습니다)

① 승계할 인력 및 장비는 지급계좌 신고 완료 후에 현황신고변경>인력 또는 현황신고변경>일반장비신고에 등록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5 기본사항 입력 및 특수운영현황 선택 후 임시저장

6 양도·양수기관의 경우 임시저장 후 '인력승계팝업'과 '장비승계팝업' 클릭하여 승계할 사항을 선택 후 다음 단계로 진행

지급계좌 신고

계좌신고 > 변경 > 지급계좌 신고 - 의료기관 요양기호확정신고

7 기본 진료과목 시설 인력 최종제출

0 의과 총: 10 건

선택	코드	진료과목	선택	코드	진료과목	선택	코드	진료과목
<input checked="" type="checkbox"/>	01	내과	<input checked="" type="checkbox"/>	02	신경과	<input checked="" type="checkbox"/>	03	정신건강의학과
<input checked="" type="checkbox"/>	04	외과	<input checked="" type="checkbox"/>	05	정형외과	<input checked="" type="checkbox"/>	06	신경외과
<input checked="" type="checkbox"/>	07	흉부외과	<input checked="" type="checkbox"/>	08	성형외과	<input checked="" type="checkbox"/>	09	마취통증의학과
<input checked="" type="checkbox"/>	10	산부인과	<input checked="" type="checkbox"/>	11	소아청소년과	<input checked="" type="checkbox"/>	12	안과
<input checked="" type="checkbox"/>	13	이비인후과	<input checked="" type="checkbox"/>	14	피부과	<input checked="" type="checkbox"/>	15	비뇨의학과
<input checked="" type="checkbox"/>	16	영상의학과	<input checked="" type="checkbox"/>	17	방사선종양학과	<input checked="" type="checkbox"/>	18	병리과
<input checked="" type="checkbox"/>	19	진단검사의학과	<input checked="" type="checkbox"/>	20	결핵과	<input checked="" type="checkbox"/>	21	재활의학과
<input checked="" type="checkbox"/>	22	핵의학과	<input checked="" type="checkbox"/>	23	가정의학과	<input checked="" type="checkbox"/>	24	응급의학과

0 치과(① 의료법 제 43조(진료과목)에 외과 병입금이상 의료기관에서 타 면허 의료인을 고용, 의료법 시행규칙(별표8)에 규정된 진료과목만 등록할 수 있습니다.

선택	코드	진료과목	선택	코드	진료과목	선택	코드	진료과목
<input type="checkbox"/>	49	치과	<input type="checkbox"/>	50	구강악안면외과	<input type="checkbox"/>	51	치과보철과
<input type="checkbox"/>	52	치과교정과	<input type="checkbox"/>	53	소아치과	<input type="checkbox"/>	54	치주과
<input type="checkbox"/>	55	치과보존과	<input type="checkbox"/>	56	구강내과	<input type="checkbox"/>	57	영상치의학과
<input type="checkbox"/>	58	구강병리과	<input type="checkbox"/>	59	예방치과			

0 한의

선택	코드	진료과목	선택	코드	진료과목

강원도 원주시 혁신로 60(백곡동) (우편번호 26465)
Copyright © 2018 by health insurance review & assessment service.

문의: 본원 | 담당부서: 자원관리부 | 전화번호: 1644-2000 | 팩스: 033-811-7350
고객센터: 1644-2000 | 원격지원요청

7 해당하는 진료과목 확인 후 하단의 **임시저장** 을 클릭하여 다음 단계로 진행

지급계좌 신고

계좌신고 > 변경 > 지급계좌 신고 - 의료기관 요양기호확정신고

기본 전: 8 시설 인력 최종제출

0 총(운영,허가) 병실 및 병상 현황

출입병상수	병실	병상	총허가수	병실	병상	시설 총 면적(m ²)
출입병상수 + 지움계산됨	3	14	0	0	0	3252.9 m ²

0 병실 및 병상현황

구분	일반병동 간호등급 적용여부	입원료 기준 병상수	입원료 기준 병상수	실제 기준 병상수	실제 기준 병상수
일반입원실	(허가사항) 소개	0	45	0	45
일반입원실(상급)	1인	0	0	0	0
	2인	0	0	0	0
	3인	0	0	0	0
	호스피스1인	0	0	0	0
	호스피스2인	0	0	0	0
일반입원실(일반)	1인			0	0
	2인			0	0
	3인			0	0
	4인			0	0
	5인			0	0
	6인이상			0	0
호스피스1인			0	0	
호스피스2인			0	0	

강원도 원주시 혁신로 60(백곡동) (우편번호 26465)
Copyright © 2018 by health insurance review & assessment service.

문의: 본원 | 담당부서: 자원관리부 | 전화번호: 1644-2000 | 팩스: 033-811-7350
고객센터: 1644-2000 | 원격지원요청

8 '시설'탭에 해당하는 시설정보 입력 후 하단의 **임시저장** 을 클릭하여 다음 단계로 진행



지급계좌 신고

개설신고 · 변경 > 지급계좌 신고 - 의료기관 요양기호확정신고

검토과정 도움말

기본 진료과목 **9** 인력 최종제출 목록

기타인원현황 **9** 인력상세 신고

[인원현황] 총 1 명 (정신보건전문요원 제외)

구분(의료법)		인원 (명)	구분(의료법+건보법)		인원 (명)
의사	계	5	의사	계	1
	일반의	0	일반의	일반의	1
	전문의	5	인턴	인턴	0
치과의사	0	0	레지던트	레지던트	0
			전문의 (조혈모세포 이식 담당의사)	전문의 (조혈모세포 이식 담당의사)	0
			계	계	0
			일반의	일반의	0
한 의사	0	0	인턴	인턴	0
			레지던트	레지던트	0
			전문의	전문의	0
			계	계	0
조사사	0	0	조사사	계	0
				일반의	0
				인턴	0
				레지던트	0
				전문의	0

문의: 본원 담당부서: 자원관리부 전화번호: 1644-2000 팩스: 033-811-7350

강원도 원주시 혁신로 60(만곡동) (우편번호 26465)
Copyright © 2018 by health insurance review & assessment service. 고객센터: 1644-2000 원격지원요청

9 '인력'탭의 '인력상세 신고' 클릭

의료기관요양기호확정신고-인력상세 신고

10 의(약/조산)사 의로기사 정신보건 전문요원 전문간호사 동위원소 취급자

10 [의(약/조산)사] 신고대상목록

11 원스톱 신고내역 불러오기 신고 의사/약사/한약사/조산사 수 : 1 / 0 / 0 / 0 **10** 신규등록 전체삭제 총 : 1 건

구분	면허종별	의사형태	의사구분	성명	주민등록번호	면허번호	면허취득일자	자격종별	자격번호	자격취득	세부 정보
입사	의사	봉직의사	일반의	윤일창	840301-1*****	810889	2013-03-11				수정 신고취소

① 개설신고시에 신고한 인력 정보를 자동 등록하여 보여줍니다.

10 **닫기**

10 각 탭별 해당 인력 입력(신규 등록)후 닫기

11 개설신고 시 입력한 인력정보를 불러오기 하려면 '원스톱 신고내역 불러오기' 클릭

지급계좌 신고
✕

🏠 개설신고 · 변경 > 지급계좌 신고 - 의료기관 요양기호확정신고
 🔍 점검요청 📄 도움말

기본
진료과목
시설
12
최종제출

목록

📌 신고대상 목록 • 담당자 FaxNo : 지자체확스번호확인

구비서류

팩스 우편 방문 파일첨부

📎 파일첨부

 + 파일추가 ✕ 삭제 ⬇ 다운로드

① 첨부서류를 스캔하여 파일 형식으로 올립니다.

	파일명	파일용량
<input type="checkbox"/>	Desert.jpg	826.11 KB
<input type="checkbox"/>	대분류파일.t	935 B

📄 전달사항

 ① 파일업로드가 모두 끝난 후에 전달사항을 작성하세요.

👤 작성자 정보등록

+ 신고자

+ 전화번호 없음

- -

📖 구비서류안내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통장 사본
- 장비승계서
 - ▣ 임대양수 계약서 사본 1부
 - ▣ 양수받은 장비의 상세 목록 1부

12
최종제출

12 구비서류 첨부, 작성자 정보 입력 후 최종 제출
 ※ 하단의 '구비서류안내' 부분 참고



1-3 | 개설신고·허가사항 변경신고

● 개설신고·허가사항 변경신고 일원화 대상업무

구분	지자체 신고로 일원화(9개)	심사평가원 신고로 일원화(2개)
의원급 의료기관	① 의료기관 휴(폐)업 신고	대진의 및 의료인 수 변경 신고
병원급 의료기관	② 약국 휴(폐)업 신고 ③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의 설치 및 사용(재사용) 신고 ④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의 사용 중지·양도·이전·폐기 신고 ⑤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의 신고사항 변경신고 ⑥ 특수의료장비 등록·신청 ⑦ 특수의료장비 시설 등록사항 등 변경통보 ⑧ 특수의료장비 양도 등 통보 ⑨ 의약분업예외지역 요양기관 신고	의료인 수 변경신청서

● 의료기관(기본현황, 대표자, 진료과목, 시설) 변경신고 절차

- 1)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개설신고·변경' ▶ 의료기관 개설 변경신고(허가변경신청) ▶ '변경신고' 클릭
- 2) 변경사항이 있는 해당 항목 체크 후 변경내용 입력, 저장 후 제출
 - 관할 지자체 신고(허가)이므로, 지자체에서 검토 후 반영하면 심사평가원으로 접수 및 반영

● 온라인 신고 따라하기(의료기관 변경 신고)

- ①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개설신고·변경' 선택
- ② '의료기관 개설 변경신고(허가변경신청)' 클릭 후 화면 전환시 우측 상단의 **변경신고** 클릭



개설신고·변경
< 의료기관 개설신고·허가 변경
×

속 개설신고·변경 > 의료기관 개 4 > 허가 변경

4 3

기본

정보과목

시설

외래진료

진료과목

진료과목

진료과목

진료과목

진료과목

진료과목

의료기관	설립	<input type="checkbox"/>		+법정직업입	<input checked="" type="checkbox"/>			
	지역	<input type="checkbox"/>	선택	선택	+등록	<input type="checkbox"/>	선택	
	소재지	<input type="checkbox"/>	주소검색	<small>① 의료기관 소재지 이전으로 인한 주소변경이 아닌 경우(ex. 우편번호 미 입력, 층수·도수 미 입력, 도로명 주소 전환 오 착 등), 관한 지자체이 유선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small>				
	연락처	<input type="checkbox"/>	전화	선택	-	-	팩스	선택
	입원구분	<input type="checkbox"/>	선택	선택	의료합격	준설취득여부	<input type="checkbox"/> 아니요	<input type="checkbox"/> 예
대표자	+설립	<input type="checkbox"/>	<input checked="" type="checkbox"/>	+법정직업입	<input checked="" type="checkbox"/>	-	-	
	주인등록번호 <small>(외국인등록번호)</small>	<input type="checkbox"/>	<input checked="" type="checkbox"/>	-	연이확인			
	전송의 자격종류	<input type="checkbox"/>	선택	전송의 자격번호				
	+주소	<input type="checkbox"/>	주소검색					
	+연락처	<input type="checkbox"/>	전화	등록	선택	-	-	휴대폰
법인	법인명	<input type="checkbox"/>			법인등록번호			
	조직명칭여부	<input type="checkbox"/>	이디					
	법인 주소	<input type="checkbox"/>	주소검색					
	연락처	<input type="checkbox"/>	전화	선택	-	-	팩스	선택

외래진료 추가

구분	성명	주민번호	연이번호	자격종류	자격번호	연락처	휴대폰	Mail
메이커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① 위의 등록대상자 목록 이불출력하면 등록대상자 약제(통사) 및 세부내역 확인이 가능합니다.

② 의료기관 기본 정보 등 대표자 정보는 실시간가환으로 입력된 정보이므로 지자체로 신고할 사실과 다른 경우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부속의표기관

『의료법 시행규칙』 제36조 제1항의거하여 부속의표기관으로 개설할 경우 원소속기관에 대한 정보를 입력합니다.

소속기관	기관명		등록번호	
	소재지	주소검색		
의료기관	전보 대상자 범위			

① 부속의표기관의 '소속기관 정보'는 의료기관 설립과 주소기관으로 등록하였으므로 사실과 다른 경우 신고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국민건강보험법의 규정에비율 실시 및 지급과 무관함)

4 일시저장

③ 변경사항이 있는 해당 항목 체크 후 변경사항 입력

④ 저장 후 구비서류 확인·첨부 및 최종 제출

※ 자가점검표는 '정보마당 > 서식자료실'에서 다운로드 및 작성하여 첨부

● 약국 등록사항 변경(명칭, 소재지 등) 신고 절차

- 1)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개설신고·변경 ▶ '약국등록사항 변경 신청' ▶ '변경신고' 클릭
- 2) 변경사항이 있는 해당 항목 체크 후 변경사항 입력, 저장 후 제출
 - 관할 지자체 신고(허가)이므로, 지자체에서 검토 후 반영하면 심사평가원으로 접수 및 반영

● 온라인 신고 따라하기(약국 등록사항 변경 신고)

서비스안내 1 **개설신고·변경** 현황신고·변경 휴·폐업 관계기관정보등록 정보마당 통계 마이페이지

의료기관 개설신고(허가신청) 의료기관 개설 변경신고(허가변경신청) 약국개설등록 신청 **2 약국등록사항 변경신청**

지급계좌 신고 기호부여 접수이력 조회

휴·폐업 병·의원 및 약국 휴·폐업 신고

관계기관정보 등록 외부기관(협회, 의학회 등) 관리정보 등록

지자체 병·의원 및 약국 개설신고 절차

대표자 본인인증 > 개설신고 > 개설완료 > 요양기호 여부 > 지급계좌 신고 > 요양기관 회원가입 > 요양기관 인증서발급

인증서 등록

요양 기관 현황 신고 기관

요양 기관 현황 미신고 기관

1 **개설신고**
병의원개설, 약국개설

2 **지급계좌신고**
요양기관 지급계좌, 청구 소프트웨어, 사업자 등록번호

3 **장비신고**
일반장비, 전방장비, 특수장비

4 **식대·차등신고제**
간호관리료 차등제, 입원료 차등제, 완화의료 수거제

공지사항

민생품질관리 시범사업 간호인력 신고방법안내	2019-04-03
2019년 2분기 검체검사 질 가산을 조회	2019-04-03
중환자실 전담전문의 가산수가관련 고시 일부개정예 ..	2019-04-03
「간호사 처우개선 가이드라인」 모니터링 관련 자료 ..	2019-04-03
2019년 2/4분기 적용 요양기관 차등제 (간호등급) 및 ..	2019-04-03
의료장비 바코드 라벨 온라인 출력 재안내	2019-04-03
의료장비 전산점검 대상 장비 안내	2019-04-03
CT검사 및 재검사 가이드라인	2019-04-03
2019년 1분기 검체검사 질 가산을 조회	2019-04-03

새로운 정보가 없습니다.

[1/2] < >

- ①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개설신고·변경' 선택
- ② '약국 등록사항 변경신청' 클릭 후 화면 전환 시 **변경신고** 클릭



< 약국 개설등록 변경 >

↑ 개설신고 · 변경 > 약국 개설등록 변경 점검요청 도움말

기 **5** 최종제출 **4** 목록

약국	명칭	<input type="checkbox"/>	* 변경일자	✓	-	-	📅				
	소재지	<input type="checkbox"/>	주소검색	약국 소재지 이전으로 인한 주소변경이 아닌 경우(ex. 우편번호 미 입력, 총수 .호수 미 입력, 도로명 주소 전환 오류 등), 관할 지자체에 유선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지역		영업면적(m ²)	<input type="checkbox"/>			m ²				
	연락처	<input type="checkbox"/>	전화	선택	-		-	팩스	선택	-	
대표자	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면허자격조회				
	면허종류		면허번호								
	소재지	<input type="checkbox"/>	주소검색								
	연락처	전화	유선	선택	-		-	휴대폰	선택	-	
	e-mail	<input type="checkbox"/>		@			선택				

구분	성명	주민번호	면허번호	자격종류	자격번호	주소	연락처	휴대폰	Mail
데이터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5 임시저장

- 4** 변경사항이 있는 해당 항목 체크 후 변경사항 입력
- 5** 저장 후 최종 제출

● 주·공동개설자 변경 신고 절차

- 1)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현황신고·변경' ▶ '일반현황'의 '주↔공동개설자 변경신고' 클릭
- 2) 현 대표자 체크박스 체크 하면 주부 개설자 변경 버튼이 활성화 되고 버튼을 누르면 안내 메시지 팝업이 호출됨
- 3) "네"를 클릭하면 주개설자 및 공동개설자 목록이 뜨며 변경할 주개설자를 마우스로 더블 클릭하여 선택함
- 4) 임시저장버튼을 누르면 변경된 주개설자가 대표자에 저장되며, 하단의 개설자 목록도 변경되며, 확인 후 최종 제출

● 온라인 신고 따라하기(주·공동개설자 변경신고)

보건의료자원통합신고포털 | 기호부여용병행 [00000000] | 2016-01-18 17:00:33 | 0:0:0:0:0:0:1 | 로그아웃 (54 : 03) | 서면신고진행조회 | 마이페이지

서비스안내	개설신고·변경 1	현황신고·변경	휴·폐업	관계기관정보등록	정보마당	통계	마이페이지
<p>2 일반현황</p> <p>요양기관 주<->공동개설자 변경신고 사업자번호 · 청구SW업체 변경신고</p> <p>식대</p> <p>입원환자서 신고 치료식 영양관리료 신고</p>	<p>시설현황</p> <p>시설현황 신고 차동제 운영병상 신고 요양병원 일반입원실 6인이상 병상 신고</p> <p>차동제</p> <p>일반병동 간호관리료 차동제 신고 중환자실 간호관리료 차동제 신고 요양병원 입원료 차동제 신고 의료급여 정신과 입원료 차동제 신고 호스피스수가 가산제 신고 호스피스도우미 현황조회 감염예방관리료 차동제 신고 집중치료실 입원료 신고 차동제 적용 결과 조회</p>	<p>인력현황</p> <p>대진의 신고안내 의(약/조산)사 신고 의료기사 신고 간호인력 신고 정신건강임상심리사 신고 동위원소 취급인력 신고 의료인수 신고 의료인력 건강보험자격 연계조회</p> <p>특수운영현황</p> <p>특수운영 지정현황 조회 특수운영 현황 조회 전문병원 지정현황 조회 상급종합병원 지정현황 조회 3차 의료급여기관 지정현황 조회 장기이식의료기관 지정현황 조회 검체검사 수탁기관 정보 조회 지역별 검체검사 수탁기관 정보조회 진료 의뢰·회송기관 정보조회 특수운영현황 신고 특수운영현황 신고목록 조회 응급의료기관 신고 축택의 및 협약 사회복지사실 신고 시설 공동이용기관 신고 장비 공동이용기관 신고 가정간호사업 실시기관 신고 참여병의원 신고(개방병원) 소외계층 의료서비스 지원사업 기관 신고 장기이식의료기관 신고</p>	<p>장비현황</p> <p>장비현황 신고목록 진방장치 현황신고 진방장치 인력신고 특수장비 현황 · 인력 신고 특수장비 인력 신고목록 일반장비 현황신고 바이오드 재발급 신청 바이오드 재발급 진행현황 조회 의료장비 통합정보 조회</p> <p>난임시술 의료기관 평가</p> <p>기관조사표 신고 시술정보 등록</p>				

- 1)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현황신고·변경' 선택
- 2) 주↔공동개설자 변경신고' 클릭 후 화면 전환 시 **변경신고** 클릭



현황신고 · 변경 < 요양기관 주->공동개설자 변경신고

일반현황 > 요양기관 주->공동개설자 변경신고 > 사업자번호 · 청구SW업체 변경신고

기본 최종제출

의뢰기관: 국립중앙의료원

지역: 서울 중구

주소: 주소검색 100739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245 (을지로6가)

연락처: 전화 선택 - 2260 - 7021

팩스 선택 - - -

대표형태: 법인 개인

운영위탁여부: 아니요 예

설립구분: 국립 선택

변경작업일: 2019-04-15

면허번호: 39564

대표자:

- 성명: 정기현
- 주민등록번호: 560126-1-*****
- 전화: 유선 02-*****
- 주소: 주소검색 04564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245 (을지로6가)
- 연락처: 전화 유선 02-*****
- e-mail: *

법인:

- 법인명: 국립중앙의료원
- 조직권한여부: 아니요 예
- 법인 주소: 주소검색 26464 강원도 평창군 평창읍 평창로 100 (평창읍1리)
- 연락처: 유선 선택 - - -

구분	성명	주민번호	면허번호	자격종류	자격번호	연락처	휴대폰	Mail	상세신고
개설자	정기현	560126-1-*****	39564			02-2260-7114	-		

필 필수 메시지: ? 주개설자 변경시는 기존 요양기관 취소 후 새로운 요양기관이 부여되고, 최종제출시에 관할 세무서 제출용 '동업계약서' 혹은 '공동사업계약서' 스캔하여 첨부하여야 합니다. 계속 진행하시겠습니까? [확인] [취소]

4 현 대표자 체크박스 체크

5 주·부 개설자 변경 버튼이 활성화 되며 버튼을 누르면 안내메시지 팝업이 호출됨

보건의료자원통합신고포털 국립중앙의료원 [1110001] 2016-01-18 17:00:33 0 0:0:0:0:0:0:1 로그아웃(53:26) 서면신고진행조회 마이페이지 고객센터

서비스안내 개설신고 · 변경 현황신고 · 변경 유·폐업 관계기관정보등록 정보마당 통계 마이페이지

현황신고 · 변경 < 요양기관 주->공동개설자 변경신고

일반현황 > 요양기관 주->공동개설자 변경신고 > 사업자번호 · 청구SW업체 변경신고

기본 최종제출

공동개설자 조회

공동개설자 정보

선택	주민등록번호	성명	면허번호	자격종류	자격번호	주소	연락처
<input checked="" type="checkbox"/>	560126-1-*****	정기현	39564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245, 국립중앙의료원	02-2260-7114

① 주·부 변경할 공동개설자를 마우스로 더블클릭하여 선택하여 주십시오. [닫기]

구분	성명	주민번호	면허번호	자격종류	자격번호	연락처	휴대폰	Mail	상세신고
개설자	정기현	560126-1-*****	39564			02-2260-7114	-		

6 "확인"을 클릭하면 주개설자 및 공동개설자 목록이 뜨며 변경할 주개설자를 마우스로 더블클릭하여 선택함

현황신고 · 변경 < 요양기관 주<>공동개설자 변경신고 >

현황신고 · 변경 > 일반현황 > 요양기관 주<>공동개설자 변경신고

점검요청 도움말

8 최종제출

7

의료기관	명칭	국립중앙의료원	
	지역	서울	중구
	소재지	주소검색 100799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245 (을지로67)	
	연락처	전화	선택 - 2260 - 7021
	설립구분	국립	선택
		대표형태	법인
		운영위탁여부	OH/니요
		변경적용일	2019-04-15
대표자	성명	정기현	주부 개설자변경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560126	면허확인
	전문 자격종류	선택	면허번호
	주소	주소검색 04564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245, 국립중앙의료원 (을지로67)	
	전화	유선	02 - 2260 - 7114
	e-mail		휴대폰
법인	법인명	국립중앙의료원	법인등록번호
	조직전환여부	아니요	1101710033007
	법인 주소	주소검색 26464 강원도 원주시 혁신로 153, test (반곡동)	
	연락처	유선	선택 - null - null

구분	성명	주민번호	면허번호	자격종류	자격번호	연락처	휴대폰	Mail	상세신고
개설자	정기현	560126-1*****	39564			02-2260-7114	-		

- 7 임시저장버튼을 누르면 변경된 주개설자가 대표자에 저장되며, 하단의 개설자 목록도 변경됨
- 8 입력사항 확인 후 구비서류(공동계약서) 확인·첨부 및 최종 제출



● 약국 개설자 지위승계 신고 절차

- 1)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개설신고·변경' ▶ '약국 개설자 지위승계' ▶ '승계신고' 클릭
- 2) 약국 현황 및 지위승계자 인적사항 등 기본 사항 입력, 저장 후 제출
 - 관할 지자체 신고(허가)이므로, 지자체에서 검토 후 반영하면 심사평가원으로 접수 및 반영

● 온라인 신고 따라하기(약국 개설자 지위승계 신고)



①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현황신고·변경' 선택



② '약국개설자 지위승계' 클릭 후 화면 전환 시 **지위승계** 클릭



③ 화면 전환 후 '승계신고' 버튼 클릭



④, ⑤ 약국현황 및 승계 대표자 현황 입력



⑥ 최종제출



● 사업자번호 변경 신고 절차

- 1)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현황신고·변경' ▶ '일반현황'의 '사업자번호·청구SW업체 변경신고' 클릭
▶ '변경신고' 클릭
- 2) 변경된 사업자등록번호 등록 및 저장 후 최종제출(사업자 등록증 첨부)

● 온라인 신고 따라하기(사업자번호 변경 신고)

보건의료자원통합신고포털 | 기호부여용병원 [00000000] | 2016-01-18 17:00:33 | IP 0:0:0:0:0:1 | 로그아웃 (54 : 03) | 서면신고진행조회 | 마이페이지

서비스안내	개설신고·변경 1	현황신고·변경	휴·폐업	관계기관정보등록	정보마당	통계	마이페이지
2 일반현황 요양기관 주<->공동개설자 변경신고 사업자번호·청구SW업체 변경신고	시설현황 시설현황 신고 차등제 운영병상 신고 요양병원 일반입원실 6인이상 병상 신고	인력현황 대진의 신고안내 의(약/조선)사 신고 의료기사 신고 간호인력 신고 정신건강임상심리사 신고 동위원소 취급인력 신고 의료인수 신고 의료인력 건강보험자격 연계조회	장비현황 장비현황 신고목록 진방장치 현황신고 진방장치 인력신고 특수장비 현황·인력 신고 특수장비 인력 신고목록 일반장비 현황신고 바코드 재발급 신청 바코드 재발급 진행현황 조회 의료장비 종합정보 조회				

- 1)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현황신고·변경' 선택
- 2) '사업자번호·청구SW업체 변경신고' 클릭 후 우측 상단의 **변경신고** 클릭

보건의료자원통합신고포털 | 국립의료원 | 2016-01-18 17:00:33 | IP 0:0:0:0:0:1

서비스안내	개설	현황신고·변경	휴·폐업	관계기관정보등록	정보
-------	----	----------------	------	----------	----

현황신고·변경 < 사업자번호·청구SW업체 변경신고

5) **최종제출**

명칭	대표자명
설립구분	종류
개설신고(허가)번호	개설신고(허가)일
사업자등록번호	
청구S/W업체	적용취소

④ 기존에 신고된 사업자등록번호가 변경된 경우 건보공단에서 공인인증서를 재발급 받아 심사평가원 및 건보공단 홈페이지에 다시 등록하여야 합니다. 사업자등록번호 변경신고건 최종제출시는 변경된 사업자등록증 스캔하여 첨부하세요.

⑤ **임시저장**

① 요양급여비용 수령계좌변경 방법

○ 방문 및 우편접수 : 관할 본원 지원에 접수
 - 요양기관원활변경신고서 1부(8단에 개설자 또는 법인의 인감도장 날인)
 - 개설자 또는 법인의 인감증명서 1부
 - 사업용 계좌사본 1부(법인의 경우 예금주는 법인명 또는 요양기관명)

- 4) 변경된 사업자등록번호 등록
- 5) 저장 후 최종 제출(사업자 등록증 첨부)

1-4 휴업 및 폐업

● 개요

- 의료기관(약국) 휴·폐업 신고는 통합신고포털 및 서면으로 신고 할 수 있고, 시장·군수·구청장의 의료기관(약국) 휴·폐업신고 처리결과 통보에 따라 요양기관이 요양기관현황 변경신고서를 심평원에 제출한 것으로 봄

● 세부사항

- 의료기관 휴(폐)업 신고는 사전신고가 원칙, 소급하여 신고 할 수 없음
- 의료법시행규칙에 따라 진료기록부 등을 직접 보관하려면 별지 제19호 서식의 진료기록 보관계획서 등을 첨부하여 의료기관 폐업 또는 휴업 예정일 전까지 관할 보건소장의 허가를 받아야함
- 의료기관을 1개월 미만의 기간 동안 휴업하는 경우, 요양기관은 심사평가원에 통합신고포털 또는 서면으로 요양기관현황 변경신고서를 제출함
 - 이는 휴업하는 의료기관 종사자가 타 시설에 근무하기 위한 것으로 신고기한은 국민건강보험법 제43조제2항을 따르며(변경일로부터 15일 이내), 진료기록 보관계획서 등은 제출하지 않음
 - 약국의 경우 통합신고포털로 신고하는 경우 해당 약국의 등록사항을 신고인이 확인하고 신고하는 것으로 약국개설등록증 제출 생략. 다만, 서면으로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는 경우에는 약국개설등록증을 제출하여야 함

● 휴업 신고 절차

- 1)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휴·폐업' ▶ '휴업신고(재개업, 휴업변경)' 클릭
- 2) 신규신고 클릭
- 3) 내용 작성 후 저장, 최종제출
 - 휴업신고 시 휴업기간이 1개월 미만이면 심사평가원으로만 신고가 되며, 1개월 이상(입원환자가 있는 경우 1개월 미만 휴업도 포함*)인 경우 관할지자체와 심사평가원으로 모두 신고가 됨
 - '입원환자 존재 유무'를 반드시 입력(Y 또는 N)해야 신고를 완료할 수 있음



● **제출서류 (1개월 이상의 휴업이거나 입원환자가 있는 경우)**

- 1) 의료업의 휴업 결의서(법인만 해당)
- 2) 「의료법 시행령」제17조의2 각 호의 조치에 관한 서류
 - ① (세탁물 처리에 관한 사항)「의료기관세탁물 관리규칙」*별지 제5호서식 '세탁물 자체처리대장'
또는 별지 제6호서식 '세탁물 위탁처리대장'
* 폐업 또는 휴업일이 속한 달의 대장을 제출하며 처리내역이 기재된 면에, "잔여 세탁물의 적절한 처리를 완료 하였음"이란 문구를 기재하고 의료기관 개설자가 서명 날인하여 제출
 - ② (진료기록부 보관에 관한 사항) 진료기록부 보관계획서
 - ③ (전원조치 등에 관한 사항) 환자 전원조치 완료사항(입원환자 중 전원환자 및 퇴원환자 현황 등) 및 휴폐업 안내문 게시 관련 사진

● 온라인 신고 따라하기(휴업 신고)

①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휴·폐업' 선택

② '휴업신고(재개업, 휴업변경)' 클릭 후 화면 전환 시 우측 상단의 '신규신고' 클릭

③ 내용 작성 후 저장

④ 구비서류(세탁물 처리대장, 진료기록부 보관계획서, 환자 전원 조치 및 휴업 안내 게시 사진) 확인·첨부 및 최종 제출



● 폐업 신고 절차

- 1)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휴·폐업' ▶ '폐업신고' 클릭
- 2) 신규신고 클릭
- 3) 내용 작성 후 저장, 최종 제출 (관할 지역 보건소로 신고됨)

● 제출서류

- 1) 의료업의 폐업 결의서(법인만 해당)
- 2) 「의료법 시행령」제17조의2 각 호의 조치에 관한 서류
 - ① (세탁물 처리에 관한 사항)「의료기관세탁물 관리규칙」*별지 제5호서식 '세탁물 자체처리대장'
또는 별지 제6호서식 '세탁물 위탁처리대장'
* 폐업 또는 휴업일이 속한 달의 대장을 제출하며 처리내역이 기재된 면에, "잔여 세탁물의 적절한 처리를 완료 하였음"이란 문구를 기재하고 의료기관 개설자가 서명 날인하여 제출
 - ② (진료기록부 보관에 관한 사항) 진료기록부 보관계획서
 - ③ (전원조치 등에 관한 사항) 환자 전원조치 완료사항(입원환자 중 전원환자 및 퇴원환자 현황 등) 및 휴폐업 안내문 게시 관련 사진

● 온라인 신고 따라하기(폐업 신고)

①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휴·폐업' 선택



② '폐업신고' 클릭 후 화면 전환 시 우측 상단의 '신규신고' 클릭



③ 내용 작성 후 저장

④ 구비서류(세탁물 처리대장, 진료기록부 보관계획서, 환자 전원 조치 및 휴업 안내 게시 사진) 확인·첨부 및 최종 제출



1-5 기본현황 관련 자주하는 질문(FAQ)

연번	구분	문의사항	답변내용
1	공인인증서 관련	공인인증서 발급 절차	○ 요양기관 기호 확정 후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방문 접수
2		공인인증서 등록 절차	○ 요양기관 기호 확정 24시간 이후 요양기관정보마당 홈페이지(medicare.nhis.or.kr) 등록



인력·시설·장비 신고



1. 요양기관 인력 현황 신고
2. 요양기관 시설 현황 신고
3. 요양기관 장비 현황 신고





PART 1. 요양기관 인력 현황 신고

1-1 인력 현황 신고

● 알아두기

1) '16년 1월 1일 보건의료자원 신고일원화 제도의 시행으로 의원급 의료기관 개설자에 대한 대진의 신고 및 의료기관 의료인수 변경은 심사평가원으로 일원화 됨 (심사평가원에 신고 시, 관할 지자체 에도 신고한 것으로 간주)

2) 면허종별 신고형태

상세신고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약사, 한약사, 조산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사회복지사
인원수 현황신고	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 방사선취급감독자, 조혈모세포이식담당자, 안경사, 기타종사자
상세신고 및 인원수 현황 동시 신고	간호사, 간호조무사,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의무기록사, 동위원소취급자(일반, 특수), 영양사, 조리사

● 진행절차

1) 로그인 후 '현황신고·변경'에서 신고하는 항목 클릭

※ 신고 항목 : 의료인력 인원수, 의(약/조산)사, 의료기사, 간호인력, 정신보건임상심리사, 동위원소 취급인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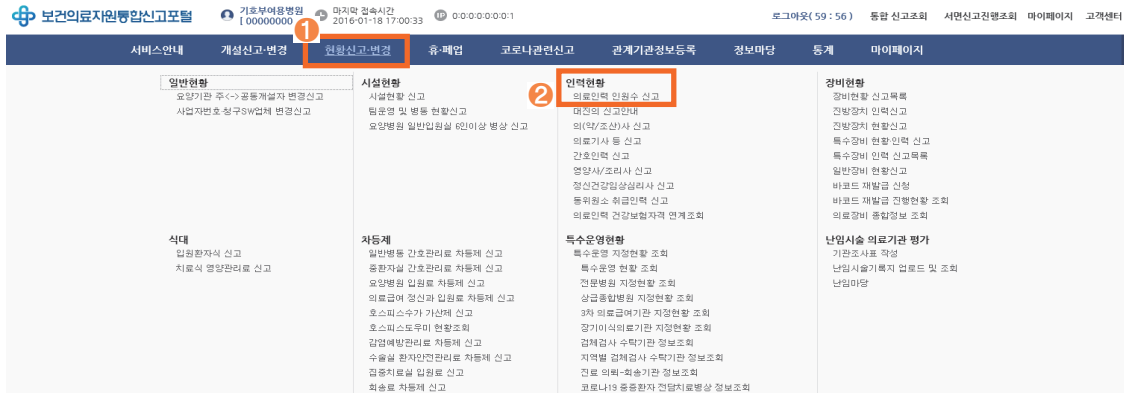
2) 신규 건은 '신규입사', 기존인력 변경 건은 '변경', 퇴사는 '퇴사신청' 버튼 클릭

3) 탭 별로 정보 입력 후 '임시저장' 버튼 클릭

4) 최종제출 탭으로 이동하여 작성자 정보 등록 후 하단의 '최종제출' 버튼 클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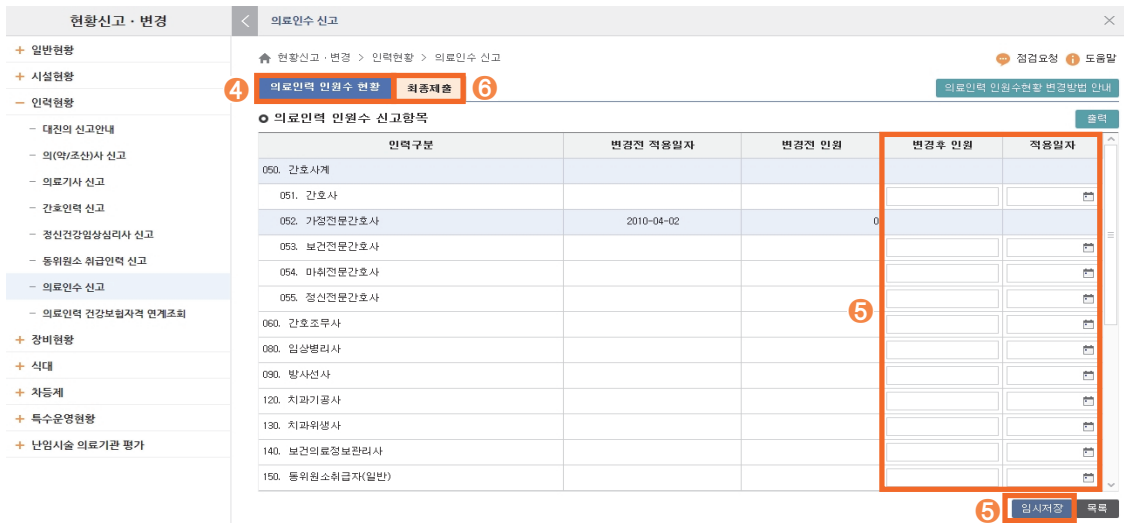
※ 의·약사 기본정보 입력 시, 면허조회가 되지 않을 경우 심사평가원 복지부 DB점검 및 보건복지부 운영지원과 확인을 통한 정보 정정 후 신고 진행

● 온라인 신고 따라하기(의료인력 인원수 현황 신고)



신규신고

- 1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현황신고·변경' 선택
- 2 '인력현황'의 '의료인력 인원수 신고' 클릭 후 화면 전환 시 우측 상단을 클릭



- 4 '의료인력 인원수 현황' 탭 클릭(의·약사, 조산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사회복지사는 인원수 별도 입력하지 않음)
- 5 '변경 후 인원' 과 '적용일자' 입력 후 임시저장
- 6 최종제출 탭으로 이동하여 작성자 정보 등록 후 '최종제출'



● 온라인 신고 따라하기(의약/조산)사 신고

보건의료자원통합신고포털 | 기초급여유병영 [00000000] | 2016-01-18 17:00:33 | IP 0:0:0:0:0:1 | 로그아웃 (54 : 03) | 서면신고진행조회 | 마이페이지 | 고객센터

서비스안내 | 개설신고·변경 **1** | 현황신고·변경 | 휴·폐업 | 관계기관정보등록 | 정보마당 | 통계 | 마이페이지

일반현황
요양기관 주<->공통개설차 변경신고
사업자번호·성구SW업체 변경신고

시설현황
시설현황 신고
차량제 운영병상 신고
요양병실 일반입실률 6인이상 병상 신고

인력현황
내원의 의(약/조산)사 신고
의(약/조산)사 신고
의료기자 신고
간호인력 신고
정신건강임상심리사 신고
동위원소 취급인력 신고
의료인수 신고
의료인력 건강보험자격 연계조회

장비현황
장비현황 신고목록
진발장치 현황신고
진발장치 인력신고
특수장비 현황·인력 신고
특수장비 인력 신고목록
일반장비 현황신고
바코드 재발급 신청
바코드 재발급 진행현황 조회
의료장비 종합정보 조회

식대
입원환자식 신고
치료식 영양관리료 신고

차등제
일반병동 간호관리료 차등제 신고
중환자실 간호관리료 차등제 신고
요양병원 입원료 차등제 신고
의료급여 정신과 입원료 차등제 신고
호스피스수가 가산제 신고
호스피스도우미 현황조회
감염예방관리료 차등제 신고
집중치료실 입원료 신고
차등제 적용 결과 조회

특수운영현황
특수운영 지정현황 조회
특수운영 현황 조회
전문병원 지정현황 조회
상급종합병원 지정현황 조회
3차 의료급여기관 지정현황 조회
장기미숙의료기관 지정현황 조회
검체검사 수탁기관 정보 조회
지역별 검체검사 수탁기관 정보조회
진료 의뢰·회송기관 정보조회
특수운영현황 신고
특수운영현황 신고목록 조회
응급의료기관 신고
출력 및 협약 사회복지시설 신고
시설 공동이용기관 신고
장비 공동이용기관 신고
가정간호사업 실시기관 신고
참여병원 신고(개발병원)
소외계층 의료서비스 지원사업 기관 신고

난임사술 의료기관 평가
기관표시료 신고
시술정보 등록

1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현황신고·변경' 선택

2 '인력현황'의 '의(약/조산)사 신고' 클릭 후 화면 전환 시 우측 상단의 **신규신고** 클릭

보건의료자원통합신고포털 | 서울대학교의료정보시스템 | 2016-01-18 17:00:33 | 0:0:0:0:0:1 | 로그아웃 (59 : 35) | 서면신고진행조회 | 마이페이지 | 고객센터

서비스안내 | 개설 | 현황신고·변경 | 휴·폐업 | 관계기관정보등록 | 정보마당 | 통계 | 마이페이지

현황신고·변경 < 의(약/조산)사신고 >

현황신고·변경 > 인력현황 > 의(약/조산)사신고

의(약/조산)사현황 | 최종재출 | ① 의(약/조산)사 신고에 중환자실 견당임(추가) 등록 | 의료인력 인원수 현황 신고 바로가기 | 인력 시간 점검결과내역조회

면허종별 -- | 면허번호 | | 의료현상명 | | 퇴사포함 조회

② 목록값인이 되지 않는 경우 **해로표출** 을 눌러주세요.

③ 의(약/조산)사 현황

면허종별	의사구분	의사형태	성명	주민등록번호	근무형태	면허번호	면허취득일자	입사일자	유기(교우, 현수, 퇴권)			유기대태정보			병용명	인력현황명
									구분	시작일자	종료일자	대태자명	대태시작일자	대태종료일자		
<input type="checkbox"/>	의사	병원외사	인턴	김필선	891103-1*****	상근	120443 Q	2015-02-26	2018-09-02							인력현황명
<input type="checkbox"/>	의사	병원외사	인턴	김기연	823201-2*****	상근	128270 Q	2018-02-13	2018-09-02							인력현황명
<input type="checkbox"/>	의사	병원외사	인턴	김미숙	918223-2*****	상근	124662 Q	2017-02-10	2018-09-02							인력현황명
<input type="checkbox"/>	의사	병원외사	인턴	김성복	870717-1*****	상근	128628 Q	2018-02-19	2018-09-02							인력현황명
<input type="checkbox"/>	의사	병원외사	인턴	김수현	918415-2*****	상근	127907 Q	2018-02-12	2018-09-02							인력현황명
<input type="checkbox"/>	의사	병원외사	인턴	김은아	908409-2*****	상근	129590 Q	2018-02-21	2018-09-02							인력현황명

④ 신규입사 | 휴·폐업 | 퇴사사유 | 의료사유정보 | 의료인력정보 | 전체조회 | 총: 2 건

④ 신고대상목록

구분	면허종별	의사구분	의사형태	성명	주민등록번호	근무형태	면허번호	면허취득일자	자격종별	자격번호	자격취득일자	전공자수	입사일자	최종근무일자	TPY연장정지	입력신고 변경
변경	의사	병원외사	인턴	김필선	891103-1*****	상근	120443	2015-02-26					2018-09-02		수정	신고취소
퇴사	의사	병원외사	보수제	남순태	870203-2*****	상근	63959	2010-09-05					2010-09-05	2019-04-12		퇴사신고 신고취소

4 신규 건은 '신규입사', 기존 건 변경은 '변경', 퇴사는 '퇴사신청' 클릭

의료인력정보변경
X

5 기본정보
자격등록
휴가등록
근무병동

○ 의(약/조산)사 기본정보 신고항목

* 면허종별	✓ --		
* 입사일자	✓ --	최종근무일	--
* 성명	✓	* 주민번호	✓ - [] [] 면허확인
* 면허취득일자	✓ --	* 면허번호	✓ [] [] [] [] [] []
* 의사구분	✓ --	* 의사형태	✓ --
* 근무형태	✓ --		
심층진찰여부	<input type="radio"/> Y <input type="radio"/> N ④ 심층진찰 인력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한 시범사업기관에 한하여 신고합니다.		

5 임시저장
취소

- ⑤ '기본정보', '자격등록', '휴가등록', '근무병동' 탭 별로 신고사항 입력 후 임시저장**
- ① 면허종별(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약사, 한약사), 입사일자, 성명, 주민번호 입력 후 **면허 확인** 필수
 - ② 의사구분((공동)개설자, 봉직의사 등), 근무형태(상근, 비상근, 기타, 대진, 전속여부)입력 후, **임시저장**
 - ③ 휴가 등 개설자의 부재 시, **대진의 신고** 필수
 - ④ 대진의 신고하는 경우, 근무형태를 대진으로 선택하고 '휴가자 검색' 클릭. 휴가인력, 기간 확인 후 대체기간을 입력



현황신고 · 변경
< 의료인수 신고
×

현황신고 · 변경 > 인력현황 > 의료인수 신고
점검요청 도움말

의료인력 인원수 현황
최종제출
의료인력 인원수현황 변경방법 안내

전달사항등록 지자체 팩스번호확인

구비서류 팩스 우편 방문 파일첨부

① 첨부서류를 스캔하여 파일 형식으로 올립니다. + 파일추가 × 삭제 ↓ 다운로드

	파일명	파일용량
6	파일첨부	

① 파일업로드가 모두 끝난 후에 전달사항을 작성하세요.

① 전달사항

② 작성자 정보등록

8 + 신고자 + 전화번호 - - -

e-mail @ 선택

8 최종제출 목록

- ⑥ 추가 제출 자료가 있는 경우 '파일첨부'에 해당 자료첨부
- ⑦ 별도 기재사항은 '전달사항'란에 입력
- ⑧ 작성자 정보등록에 신고자와 전화번호를 입력하여 하단의 '최종제출' 버튼 클릭

● 온라인 신고 따라하기(의료기사 등 신고)

보건의료자원통합신고포털 | 기호부여용병원 [00000000] | 2016-01-18 17:00:33 | IP: 0:0:0:0:0:0:1 | 로그아웃 (54: 03) | 서면신고진행조회 | 마이페이지 | 고객센터

서비스안내	개설신고·변경	현황신고·변경	휴·폐업	관계기관정보등록	정보마당	통계	마이페이지
일반현황 요양기관 주(→)공동개설자 변경신고 사업자번호·청구SW업체 변경신고	시설현황 시설현황 신고 차등제 운영병상 신고 요양병원 일반입원실 6인이상 병상 신고	인력현황 비인력 신고안내 이(약/조산)사 신고 의료기사 신고 간호인력 신고 정신건강임상심리사 신고 동위원소 취급인력 신고 의료인수 신고 의료인력 건강보험자격 연계조회	장비현황 장비현황 신고목록 진방장치 현황신고 진방장치 인력신고 특수장비 현황·인력 신고 특수장비 인력 신고목록 일반장비 현황신고 바코드 재발급 신청 바코드 재발급 진행현황 조회 의료장비 종합정보 조회	식대 입원환자식 신고 치료식 영양관리로 신고	차등제 일반병동 간호관리로 차등제 신고 중환자실 간호관리로 차등제 신고 요양병원 입원료 차등제 신고 의료급여 정신과 입원료 차등제 신고 호스피스수가 가산제 신고 호스피스도우미 현황조회 감염예방관리로 차등제 신고 집중치료실 입원료 신고 차등제 적용 결과 조회	특수운영현황 특수운영 지정현황 조회 특수운영 현황 조회 전문병원 지정현황 조회 상급종합병원 지정현황 조회 3차 의료급여기관 지정현황 조회 장기이식의료기관 지정현황 조회 검체검사 수탁기관 정보조회 지역별 검체검사 수탁기관 정보조회 진료 의뢰·회송기관 정보조회 특수운영현황 신고 특수운영현황 신고목록 조회 응급의료기관 신고 촉탁의 및 협약 사회복지시설 신고 시설 공동이용기관 신고 장비 공동이용기관 신고 가정간호사업 실시기관 신고 참여병원 신고(개방병원) 소외계층 의료서비스 지원사업 기관 신고	난임시술 의료기관 평가 기관조사표 신고 시술정보 등록

- 1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현황신고·변경' 선택
- 2 '인력현황'의 '의료기사 등 신고' 클릭 후 화면 전환 시 우측 상단의 **신규신고** 클릭
 ※ 신규, 변경 퇴사 건에 따른 진행은 의(약/조산)사와 동일



의료인력정보변경

3

기본정보 자격등록 휴가등록 근무병동

○ 의료기사 기본정보 신고항목

* 면허종별	✓ -	세부자격	--
* 입사일자	--	최종근무일	--
* 성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사회복지사 보조활동인력 보안인력 진료협력센터 근무자 	* 주민번호	✓ - - - - -
* 면허취득일자		면허번호	
* 근무형태		* 직책	✓ --

3 **임시저장** 취소

○ 물리치료사 적용기준

- ① 상 근 : 주 5일 이상, 주 40시간 이상 근무하면서 3개월 이상 고용계약 체결
- ② 비상근 : 주 3일 이상, 주 20시간 이상 근무
- 전속 : 주 4일 이상, 주 20시간 이상 근무
- ③ 4대보험 : 고용기간이 1개월 이상이고, 근로시간이 월 60시간 또는 주당 평균 18시간 이상인 경우 4대보험 가입하여야 함.

○ 의료기사 신고항목 안내

- ① 보바스, 보미타, PNF, NDT는 120시간 교육이수자만 신고대상
- ② 물리치료사 신고 및 변경이 안되는 경우 - 물리치료실(시설신고) 신고 후 인력신고가 가능합니다

3 '기본정보' 신고사항 입력 후 임시저장

- ① 면허종별(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사회복지사, 보조활동인력, 보안인력, 진료협력센터 근무자), 입사일자, 성명, 주민번호 입력 후 면허확인 클릭
- ② 면허확인 시 조회 되지 않는 경우, 수기 입력 후 면허사본 첨부하여 신고진행
- ③ 물리치료사, 보안인력은 '상근', '비상근', '대체'로 근무형태 구분,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작업치료사, 사회복지사, 완화의료도우미, 진료협력센터 근무자는 근무 형태 '상근' 인력만 신고

의료인력정보변경

4 기본정보 4 자격등록 휴가등록 근무병동

4 ① 의료기사 자격 신고항목 자격추가 자격삭제 전체삭제 총: 0 건

구분	자격종별	자격조회	자격번호	자격취득일자	시작일자	종료일자
데이터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① [자격조회]를 클릭하면 자격번호 및 자격취득일자가 자동입력됩니다.

② 교육이수 정보 신고항목 교육추가 교육삭제 전체삭제 총: 0 건

구분	교육이수종별	자격조회	교육이수번호	인정일자
데이터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① 보바스 등의 교육이수는 120시간 이상시 신고가능합니다.

4 임시저장 취소

4 '자격등록' 신고사항 입력 후 임시저장

- ① '의료기사 자격 신고 항목'은 사회복지사와 완화의료도우미에 한하여 신고
- ② 자격종별 선택 후 자격조회 클릭(자격조회가 되지 않는 경우, 수기 입력 후 사본 첨부하여 신고진행)
- ③ 보바스, NDT, 보이타 120시간 이상 이수자의 경우 교육이수 정보 신고
- ④ '교육추가' 클릭하여 해당 종별 선택 후, 세부사항 입력



의료인력정보변경

5

- 기본정보
- 자격등록
- 휴가등록
- 근무병동

○ 휴가(교육, 연수, 파견) 현황

총 : 0 건

휴가			대체자			수정
휴가구분	시작일자	종료일자	성명	시작일자	종료일자	
데이터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① 타기관 "파견" 신고시 퇴사신고를 하셔야합니다.

○ 휴가(교육, 연수, 파견) 신고항목

5

휴가추가

휴가삭제

전체삭제

총 : 1 건

구분	휴가구분	시작일자	종료일자
신규	-- -- 출산 육아 연수 병가 기타 무급휴가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5

임시저장

취소

5 '휴가등록' 신고사항 입력 후 임시저장

- ① 차등제 등 가산 산정 제외 시 '휴가(교육, 연수, 파견) 신고항목' 입력 필수
- ② '휴가추가' 클릭하여 휴가구분 선택, 상세내용 입력

의료인력정보변경

기본정보	자격등록	휴가등록	근무병동 ⑥
------	------	------	---------------

⑥ **근무병동 신고항목** ⑥

근무병동	변경전	변경후
병동코드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병동명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단위코드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단위명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적용일자	-- -- ~ -- --	⑥ -- -- ~ -- --
전담여부	<input type="text"/>	N

⑥ **임시저장** 취소

⑥ 병동찾기 버튼 클릭시 "혈액은행" 목록 조회 안되는 경우

- ① 시설신고/차등제운영병상현황 신고에서 신규병동 클릭 후 병동구분에 "특수", 병동코드 "혈액은행" 신고
- ② 시설신고/시설변경(허가병상신고)/기타병실현황에서 "혈액은행" 신고 이후 조회됩니다.

⑥ 병동찾기 버튼 클릭시 "가정형호스피스" 목록 조회 안되는 경우

- ① 시설신고/차등제운영병상현황 신고에서 신규병동 클릭 후 병동구분에 "특수", 병동코드 "가정형호스피스" 신고

⑥ '근무병동' 신고사항 입력 후 임시저장

- ① 임상병리사, 사회복지사, 보안인력에 한하여 '근무병동 신고항목' 입력
- ② '병동찾기' 클릭하여 병동근무 시작일자 입력
 - ※ 입력 완료 후 최종제출 절차는 의(약/조산)사와 동일



● 온라인 신고 따라하기(간호인력 신고)

보건기자원통합신고포털 | 기호부여용병원 [00000000] | 2016-01-18 17:00:33 | IP: 0:0:0:0:0:0-1 | 로그아웃 (54: 03) | 서면신고진행조회 | 마이페이지 | 고객센터

서비스안내	개실신고·변경	현황신고·변경	휴·폐업	관계기관정보등록	정보마당	등계	마이페이지
일반현황 요양기관 주(→) 공동개설자 변경신고 사업자번호·청구SW업체 변경신고	시설현황 시설현황 신고 차등제 운영병상 신고 요양병원 일반입원실 6인이상 병상 신고	인력현황 비인가 신고안내 의(약/조산)사 신고 의료기사 신고 간호인력 신고 장년간염검역관리사 신고 동위원소 취급인력 신고 의료인수 신고 의료인력 건강보험자격 연계조회					장비현황 장비현황 신고목록 진방장치 현황신고 진방장치 인력신고 특수장비 현황·인력 신고 특수장비 인력 신고목록 일반장비 현황신고 바코드 재발급 신청 바코드 재발급 진행현황 조회 의료장비 종합정보 조회
식대 입원환자식 신고 치료식 영양관리로 신고	차등제 일반병동 간호관리로 차등제 신고 중환자실 간호관리로 차등제 신고 요양병원 입원로 차등제 신고 의료급여 정신과 입원로 차등제 신고 호스피스수가 가산제 신고 호스피스도우미 현황조회 감염예방관리로 차등제 신고 집중치료실 입원로 신고 차등제 적용 결과 조회	특수운영현황 특수운영 지정현황 조회 특수운영 현황 조회 전문병원 지정현황 조회 상급종합병원 지정현황 조회 3차 의료급여기관 지정현황 조회 장기이식의료기관 지정현황 조회 검체검사 수탁기관 정보 조회 지역별 검체검사 수탁기관 정보조회 진료 의뢰·회송기관 정보조회 특수운영현황 신고 특수운영현황 신고목록 조회 응급의료기관 신고 촉탁의 및 협약 사회복지시설 신고 시설 공동이용기관 신고 장비 공동이용기관 신고 가정간호사업 실시기관 신고 참여병의원 신고(개방병원) 소외계층 의료서비스 지원사업 기관 신고					난임시술 의료기관 평가 기관조사표 신고 시술정보 등록

1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현황신고·변경' 선택

2 '인력현황'의 '간호인력 신고' 클릭 후 화면 전환 시 우측 상단의 **신규신고** 클릭

※ 신규, 변경 퇴사 건에 따른 진행은 의(약/조산)사와 동일



의료인력정보변경

기본정보 **4** **자격등록** 휴가등록

○ 간호인력 자격 신고항목 자격추가 자격삭제 전체삭제 총 : 0 건

구분	자격종별	자격조회	자격번호	자격취득일자	시작일자	종료일자
데이터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① [자격조회]를 클릭하면 자격번호 및 자격취득일자가 자동입력됩니다.

○ 교육/경력이수정보 신고항목 교육/경력추가 교육/경력삭제 취소 총 : 0 건

구분	교육이수종별	자격조회	교육이수번호	인정일자
데이터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 경력 정보 신고항목 경력정보추가 경력삭제 전체삭제 총 : 0 건

구분	기관구분	기관기호	요양기관명	경력시작일자	경력종료일자
데이터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 장애인 건강주치의 정보 총 : 0 건

순번	주치의 구분	방문진료(간호)	적용시작일자	적용종료일자
데이터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4 **임시저장** 취소

4 '자격등록' 신고사항 입력 후 임시저장

- ㉠ 전문 간호사 자격소지자에 한하여 '간호인력 자격 신고 항목' 입력
- ㉡ '자격추가' 클릭하여 자격종별 선택 후 자격조회 진행
- ㉢ 자격조회 진행되지 않는 경우, 수기 입력 후 사본 첨부하여 신고
- ㉣ 교육·경력사항이 있는 경우 '교육/경력추가' 클릭하여 교육이수종별 입력
- ㉤ '경력 정보 신고 항목'은 감염관리실 근무경력에 한하여 입력

의료인력정보변경
✕

기본정보
자격등록
휴가등록
5 병동등록

○ 근무병동 신고항목
5 병동추가
병동삭제
전체삭제
총 : 1 건

구분	병동	UNIT	전담여부	시작일자	종료일자
없음	039 21층1병동 Q		N v	2020-04-01 📅	9999-12-31 📅

5 임시저장
취소

5 '병동등록' 신고사항 입력 후 임시저장

- ㉠ 병동추가 클릭 후 근무병동 선택 후 전담여부, 시작일자, 종료일자 등 정보 입력
- ㉡ 근무병동 선택 입력 시, 직종 및 차등제별 적용기준과 맞추어 입력
 - ※ '휴가등록' 및 최종제출 절차는 의(약/조산)사와 동일



● 온라인 신고 따라하기(정신건강임상심리사/동위원소취급인력 신고)

보건기자원통합신고포털 | 기호부여용병원 [00000000] | 2016-01-18 17:00:33 | IP: 0:0:0:0:0:0:1 | 로그아웃 (54: 03) | 서면신고진행조회 | 마이페이지 | 고객센터

서비스안내	개실신고·변경	현황신고·변경	휴·폐업	관계기관정보등록	정보마당	등계	마이페이지
일반현황 요양기관 주(→) 공동개설자 변경신고 사업자번호·청구SW업체 변경신고	시설현황 시설현황 신고 차등제 운영병상 신고 요양병원 일반입원실 6인이상 병상 신고	인력현황 비인가 신고안내 의(약/조산)사 신고 의료기사 신고 간호인력 신고 정신건강임상심리사 신고 동위원소 취급인력 신고 의료인수 신고 의료인력 건강보험자격 연계조회	차등제 일반병동 간호관리로 차등제 신고 중환자실 간호관리로 차등제 신고 요양병원 입원로 차등제 신고 의료급여 정신과 입원로 차등제 신고 호스피스수가 가산제 신고 호스피스도우미 현황조회 감염예방관리로 차등제 신고 집중치료실 입원로 신고 차등제 적용 결과 조회	특수운영현황 특수운영 지정현황 조회 특수운영 현황 조회 전문병원 지정현황 조회 상급종합병원 지정현황 조회 3차 의료급여기관 지정현황 조회 장기이식의료기관 지정현황 조회 검체검사 수탁기관 정보 조회 지역별 검체검사 수탁기관 정보조회 진료 의뢰·회송기관 정보조회 특수운영현황 신고 특수운영현황 신고목록 조회 응급의료기관 신고 촉탁의 및 협약 사회복지시설 신고 시설 공동이용기관 신고 장비 공동이용기관 신고 가정간호사업 실시기관 신고 참여병의원 신고(개방병원) 소외계층 의료서비스 지원사업 기관 신고	장비현황 장비현황 신고목록 진방장치 현황신고 진방장치 인력신고 특수장비 현황·인력 신고 특수장비 인력 신고목록 일반장비 현황신고 바코드 재발급 신청 바코드 재발급 진행현황 조회 의료장비 종합정보 조회	난임시술 의료기관 평가 기관조사표 신고 시술정보 등록	

- 1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현황신고·변경' 선택
- 2 '인력현황'의 '정신건강임상심리사 신고'/'동위원소 취급인력 신고' 클릭 후 화면 전환 시 우측 상단의 **신규신고** 클릭



● 온라인 신고 따라하기(영양사/조리사 신고)

보건의료자원통합신고포털

1

로그인 서면신고진행조회 회원가입 고객센터

서비스안내	개설신고·변경	현황신고·변경	휴·폐업	코로나관련신고	관계기관정보등록	정보마당	통계	마이페이지
일반현황 요양기관 주->공동개설자 변경신고 사업자번호·청구SW업체 변경신고	시설현황 시설현황 신고 팀운영 및 병동 현황신고 요양병원 일반입원실 6인이상 병상 신고	인력현황 의료인력 인력수 신고 대진의 신고안내 의(약/조산)사 신고 의료가사 신고 간호인력 신고 영양사/조리사 신고 정신건강임상심리사 신고 통위원소 취급인력 신고 의료인력 건강보험자격 연계조회	장비현황 장비현황 신고목록 진방장치 인력신고 진방장치 현황신고 특수장비 현황·인력 신고 특수장비 인력 신고목록 일반장비 현황신고 바코드 재발급 신청 바코드 재발급 진행현황 조회 의료장비 종합정보 조회					
식대 입원환자식 신고 치료식 영양관리료 신고	차동제 일반병동 간호관리료 차동제 신고 중환자실 간호관리료 차동제 신고 요양병원 입원료 차동제 신고 의료급여 정신과 입원료 차동제 신고 호스피스수가 가산제 신고 호스피스도우미 현황조회 감염예방관리료 차동제 신고 수술실 환자안전관리료 차동제 신고 집중치료실 입원료 신고 차동제 적용 결과조회 간호사 처우개선(TEST)	특수운영현황 특수운영 지정현황 조회 특수운영 현황 조회 전문병원 지정현황 조회 상급종합병원 지정현황 조회 3차 의료급여기관 지정현황 조회 장기이식의료기관 지정현황 조회 검체검사 수탁기관 정보조회 지역별 검체검사 수탁기관 정보조회 진료 의뢰·회송기관 정보조회 특수운영현황 신고 특수운영현황 신고목록 응급의료기관 신고 촉탁의 및 협약 사회복지시설 신고 시설 공동이용기관 신고 장비 공동이용기관 신고 가정간호사업 실시기관 신고 참여병의원 신고(개발병원) 소외계층 의료서비스 지원사업 기관 신고 장기이식의료기관 신고	난임사술 의료기관 평가 기관조사표 작성 난임사술기록서 조회 난임마당					

1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현황신고·변경' 선택

2 '인력현황'의 '영양사/조리사 신고' 클릭 후 화면 전환 시 우측 상단의 **신규신고** 클릭

식대 적용여부 선택 ✕

취소

- 식대(입원환자식/치료식)적용 인력신고
- 식대 미적용 인력신고

3 식대 적용여부 선택에서 '식대 미적용 인력신고' 클릭

의료인력정보변경

- 4 기본정보 자격등록 병동등록 휴가신고

○ 영양사/조리사 등록

* 면허종별	✓ 선택	세부종별	
* 입사일자	✓ --	최종근무일자	--
* 성명	✓	* 주민번호	✓ - 면허확인
면허취득일자	--	면허번호	
* 식대관련 적용유무	<input type="radio"/> 적용 <input checked="" type="radio"/> 미적용	* 급식시설	✓
* 근무형태	✓	근무시간	
* 휴가자인력등록	휴가기간	-- ~ --	
	대체기간	-- ~ --	

- ① 2015.10.01일부터 식대관련 영양사·조리사의 근무형태는 전일제(40시간) 또는 단시간제(32시간) 만 선택
- ① 면허번호 및 취득일자는 주민번호, 입사일자 입력 후 면허확인 시 자동세팅 (단, 자동세팅이 되지 않을 경우 직접 입력 후 면허증 사본 첨부)
- ① 조리사의 경우 면허증 발급 이후 입사신고 가능 (자격증으로 신고 시 반영 안됨)

4 임시저장 취소

- 4 신고신고 클릭 후 '기본정보', '자격등록' 신고사항 입력 후 임시저장
 ※ '병동등록', '휴가등록' 및 최종제출 절차는 의(약/조산)사와 동일



● 온라인 신고 따라하기(의료인력 건강보험자격 연계조회)

현황신고·변경 > 인력현황 > 의료인력 건강보험자격 연계조회 점검요청 도움말

2015-11-08 ~ 2019-05-08

○ 통보서 목록 총: 1 건

기호	명칭	차수	통보일시	통보문조회	소명자료제출
				<input type="button" value="내역조회"/>	<input type="button" value="작성"/>

- ①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현황신고·변경' 선택, '인력현황'의 '의료인력 건강보험자격 연계조회' 클릭 후 화면 전환 시 연계 조회 하고자 하는 '통보일자' 혹은 '차수'를 입력
- ② [조회] 버튼을 클릭하여 통보서 목록을 확인
- ③ 목록이 있는 경우 [내역조회] 버튼을 클릭하여 통보문을 확인
- ④ 제출할 소명자료가 있는 경우 [작성] 버튼을 클릭

소명자료제출팝업

○ 전달사항 등록

⑤ 첨부서류를 스캔하여 파일명을 "요양기호_붙임할내용"으로 제출합니다.

파일첨부	파일명	파일 용량
<input type="checkbox"/>		

① 파일업로드가 모두 끝난 후에 전달사항을 작성하세요.

전달사항

○ 작성자 정보등록

작성자 전화번호

- ⑤ 소명자료제출 팝업에서 제출 자료가 있는 경우 '전달사항 등록'에, 별도 기재사항은 '작성자 정보 등록'란에 내용을 입력
- ⑥ [소명자료제출] 버튼을 클릭해서 등록 사항을 제출

1-2 | 인력신고 관련 자주하는 질문(FAQ)

연번	구분	문의사항	답변내용
1	인력에 관한 사항 등록	근무형태가 대진의, 기타인력인 한의사의 경우 추나요법사전교육 등록 가능여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근무형태와 상관없이 추나요법사전교육 등록 가능 • 다만, 한의사 1인당 1일 추나요법 실시 인원은 상근과 비상근으로 신고한 한의사 기준으로 산정됨
2		약국 휴업중 약국개설자 타 요양기관 근무 가능 여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휴업중인 약국개설자는 타 약국 근무 가능 • 휴업중인 약국에서 인력으로 등록 되어 있지 않아야 타 약국 인력신고 가능



PART 2. 요양기관 시설 현황 신고

2-1 시설 현황 신고

● 알아두기

- '16년 1월 1일 보건의료자원 신고일원화 제도의 시행으로 의료기관의 주요 시설의 합은 지자체로 신고하고, 상세내역은 심사평가원으로 신고함
- 시설별 신고 접수기관 및 신고범위

구분	관할 지자체(시·도, 시·군·구)	심사평가원(본·지원)
허가 병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허가병상 총 병실·병상수 - 일반입원실, 정신과폐쇄병동, 정신과개방병동, 중환자실, 격리병실, 무균치료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허가병상 상세내역 - 상급·일반, 1~다인실, 성인·소아·신생아, 음압·비음압 등
특수 병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요 특수진료실 병실·병상수 - 수술실, 회복실, 응급실, 물리치료실, 임상검사실, 조제실, 탕전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타 특수진료실 병실·병상수 - 분만실, 신생아실, 인공신장실, 강내치료실, 방사선옥소, 낮병동, 조혈모처치실, 혈액은행, 모자동실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타 시설의 보유여부 관리 - 구급자동차, 세탁물처리시설, 의무기록실, 급식시설, 소독시설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차등제 병상내역 - 일반병동 간호관리료 차등제 병상, 완화의료지정병상 등

● 진행절차

- 1)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개설신고·변경' 선택
- 2) '의료기관 개설 변경신고(허가변경신청)'클릭 ▶ '변경 신고'클릭 ▶ 해당 변경 신고항목 선택 후 입력·진행
 - 지자체 신고 : 관할 지자체 신고(허가) → 의료기관(기관, 대표자, 진료과목, 시설) 변경신고
 - 심사평가원 신고 : 심사평가원 신고 → 요양기관 시설상세 변경 신고 또는 팀운영 및 병동현황 신고

● 제출서류

구분	관할 지자체	심사평가원
병원급	• 의료법 시행규칙 별지 제16호서식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7호 서식 •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별지 제1호·제2호의2·제3호·제5호·제8호·제9호서식
의원급	• 의료법 시행규칙 별지 제14호서식	
부속 의료기관	• 의료법 시행규칙 별지 제20호서식	

※ 공통 제출서류 : 의료기관 개설신고증명서 또는 의료기관 개설허가증(포털신고 시 제출 불필요), 기타 변경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본

● 온라인 신고 따라하기



- ①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개설신고·변경' 선택
- ② '의료기관 개설 변경신고(허가변경신청)' 클릭 후 화면 전환 시 우측 상단의 **변경신고** 클릭



☛ 개설신고 변경 > 의료기관 개설 변경신고(허가변경신청)

● 점검요청 ● 도움말

기본 진료과목 **3** 시설 최종제출 목록

○ **초(운영, 허가) 병실 및 병상 현황** **6** 임시저장

총문명수	병실	병상	변경전 총허가수	병실	병상	변경후 총허가수	병실	병상
	20	59		17	50		17	50
시설총면적(㎡)	변경전		3734.26 ㎡	기본 적용일		2015-12-01		
	- 변경후		3734.26 ㎡	5 - 변경 적용일		2021-05-13		

○ **병실 및 병상현황** **4**

구분	변경전					변경후				
	형태	세무구분	면적(㎡)	병실수	병상수	형태	세무구분	면적(㎡)	병실수	병상수
입원병실	일반입원실		0	17	50	일반입원실		0	17	50
	정신과계합		0	0	0	정신과계합		0	0	0
	정신과입원실		0	0	0	정신과입원실		0	0	0
	정신과병내		0	0	0	정신과병내		0	0	0
	출판	상인소아		0	0	출판	상인소아		0	0
	자실	산생아		0	0	자실	산생아		0	0
격리병실		0	0	0	격리병실		0	0	0	
무균치료실					무균치료실		0	0	0	

○ **특수진료실** **4**

구분	변경전		변경후	
	병실수	병상수	병실수	병상수
수술실	3	3	3	3
회복실	0	0	0	0
응급실	0	0	0	0
출산치료실	0	0	0	0
구분	유/무		유/무	
당연실	<input type="checkbox"/> 내부	<input type="checkbox"/> 외부	<input type="checkbox"/> 내부	<input type="checkbox"/> 외부
임상검사실	<input type="checkbox"/> 있음	<input checked="" type="checkbox"/> 없음	<input type="checkbox"/> 있음	<input checked="" type="checkbox"/> 없음
조제실	<input type="checkbox"/> 있음	<input checked="" type="checkbox"/> 없음	<input type="checkbox"/> 있음	<input checked="" type="checkbox"/> 없음

① 심평원 신고내역과 상이한 항목은 신고(허가) 변경신고(한일 지자체) 또는 시설/요양기관장제변경신고에서 변경신고(심사평가) 하세요.

○ **기타시설** **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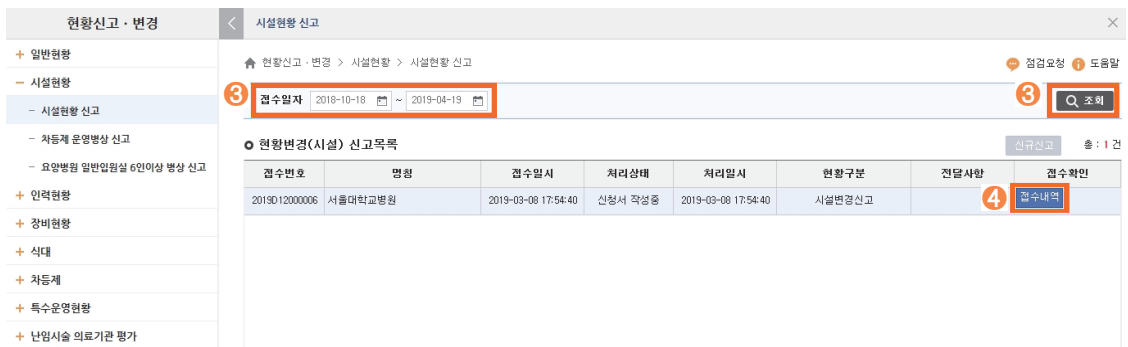
구분	변경전		변경후	
	유/무	유/무	유/무	유/무
급식시설	<input type="checkbox"/> 있음	<input checked="" type="checkbox"/> 없음	<input type="checkbox"/> 있음	<input checked="" type="checkbox"/> 없음
방사선장치	<input type="checkbox"/> 있음	<input checked="" type="checkbox"/> 없음	<input type="checkbox"/> 있음	<input checked="" type="checkbox"/> 없음
병리해부실	<input type="checkbox"/> 있음	<input checked="" type="checkbox"/> 없음	<input type="checkbox"/> 있음	<input checked="" type="checkbox"/> 없음
세탁물처리시설	<input type="checkbox"/> 있음	<input checked="" type="checkbox"/> 없음	<input type="checkbox"/> 있음	<input checked="" type="checkbox"/> 없음
소독시설	<input type="checkbox"/> 있음	<input checked="" type="checkbox"/> 없음	<input type="checkbox"/> 있음	<input checked="" type="checkbox"/> 없음
시계실	<input type="checkbox"/> 있음	<input checked="" type="checkbox"/> 없음	<input type="checkbox"/> 있음	<input checked="" type="checkbox"/> 없음
한방모방실	<input type="checkbox"/> 있음	<input checked="" type="checkbox"/> 없음	<input type="checkbox"/> 있음	<input checked="" type="checkbox"/> 없음
외무기록실	<input type="checkbox"/> 있음	<input checked="" type="checkbox"/> 없음	<input type="checkbox"/> 있음	<input checked="" type="checkbox"/> 없음
자가발전실	<input type="checkbox"/> 있음	<input checked="" type="checkbox"/> 없음	<input type="checkbox"/> 있음	<input checked="" type="checkbox"/> 없음
강제식당	<input type="checkbox"/> 있음	<input checked="" type="checkbox"/> 없음	<input type="checkbox"/> 있음	<input checked="" type="checkbox"/> 없음
직물물처리시설	<input type="checkbox"/> 있음	<input checked="" type="checkbox"/> 없음	<input type="checkbox"/> 있음	<input checked="" type="checkbox"/> 없음
목실	<input type="checkbox"/> 있음	<input checked="" type="checkbox"/> 없음	<input type="checkbox"/> 있음	<input checked="" type="checkbox"/> 없음
화장실	<input type="checkbox"/> 있음	<input checked="" type="checkbox"/> 없음	<input type="checkbox"/> 있음	<input checked="" type="checkbox"/> 없음
휴게실	<input type="checkbox"/> 있음	<input checked="" type="checkbox"/> 없음	<input type="checkbox"/> 있음	<input checked="" type="checkbox"/> 없음
식당	<input type="checkbox"/> 있음	<input checked="" type="checkbox"/> 없음	<input type="checkbox"/> 있음	<input checked="" type="checkbox"/> 없음
규격자동차	0 대	0 대	0 대	0 대

- 3** '시설' 탭 클릭
- 4** 입원병실, 특수진료실, 기타시설에 대한 변경내역을 '변경 후' 란에 데이터 입력
- 5** 신고(허가)하는 시설의 변경 적용일 선택
- 6** 변경이 완료된 후 '임시저장' 클릭 후 최종 제출

● 온라인 신고 따라하기(시설현황 신고목록 조회)



- ①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현황신고·변경' 선택
- ② '시설현황 신고/팀운영 및 병동 현황신고/요양병원 일반입원실 6인이상 병상신고' 클릭



- ③ 기 신고건이 있을 경우 신고일자 선택 후 조회버튼 클릭 시 신고내역 조회 확인 가능
* 기 신고건이 없을 경우 **신규신고** 클릭하여 신규변경 신고
- ④ '접수내역' 클릭 시 접수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화면으로 이동



● 온라인 신고 따라하기(시설 현황 신고)

서비스안내	개설신고·변경	현황신고·변경	휴·폐업	관계기관정보등록	정보마당	통계	마이페이지
일반현황 모양기관 주(→) 공동개설자 변경신고 사업자번호·청구SW업체 변경신고	시설현황 2 시설현황 신고 팀운영 및 병동 현황신고 모양병원 일반인원실 6인이상 병상 신고	인력현황 대진의 신고안내 의(약/조선)사 신고 의료기사 신고 간호인력 신고 정신건강임상심리사 신고 동위원소 취급인력 신고 의료인수 신고 의료인력 건강보험자격 연계조회	장비현황 장비현황 신고목록 진방장치 현황신고 진방장치 인력신고 특수장비 현황·인력 신고 특수장비 인력 신고목록 일반장비 현황신고 바코드 재발급 신청 바코드 재발급 진행현황 조회 의료장비 종합정보 조회				
식대 입원환자식 신고 치료식 영양관리로 신고	차등제 일반병동 간호관리로 차등제 신고 중환자실 간호관리로 차등제 신고 모양병원 입원료 차등제 신고 의료급여 정신과 입원료 차등제 신고 호스피스수가 가산제 신고 호스피스도우미 현황조회 감염예방관리로 차등제 신고 집중치료실 입원료 신고 차등제 적용 결과 조회	특수운영현황 특수운영 지정현황 조회 특수운영 현황 조회 전문병원 지정현황 조회 상급종합병원 지정현황 조회 3차 의료급여기관 지정현황 조회 장기이식의료기관 지정현황 조회 검체검사 수탁기관 정보 조회 지역별 검체검사 수탁기관 정보조회 진료 의뢰·회송기관 정보조회 특수운영현황 신고 특수운영현황 신고목록 조회 응급의료기관 신고 촉탁의 및 협약 사회복지시설 신고 시설 공동이용기관 신고 장비 공동이용기관 신고 가정간호사업 실시기관 신고 참여병원 신고(개방병원) 소외계층 의료서비스 지원사업 기관 신고	난임시술 의료기관 평가 기관조사표 신고 시술정보 등록				

1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현황신고·변경' 선택

2 '시설현황 신고' 클릭 후 화면 전환 시 우측 상단의 **신규신고** 클릭

속 현황신고 변경 > 시설현황 > 시설현황 신고

점검요청 ① 도움말

시설 최종제출 ⑤ 시설현황

○ 총(운영, 허가) 병실 및 병상 현황

총병상수 *허가기준상임	병실	병상	변경전 총허가수 *허가기준상임	병실	병상	변경후 총허가수	병실	병상
3734.26	3	3	0	0	0	0	0	0
시설총면적(m ²)	3734.26		기본 적용일	-		-	-	

○ 병실 및 병상현황

구분	입원병동 간호등급 적용여부	변경전				변경후								
		입원료 기준		실제 기준		입원료 기준		실제 기준						
		병실수	병상수	병실수	병상수	병실수	병상수	병실수	병상수					
일반입원실	(허가사항) 소개	일반입원실(상급)	1인	0	0	0	0	0	0	0	0	0	0	0
		2인	0	0	0	0	0	0	0	0	0	0	0	
		3인	0	0	0	0	0	0	0	0	0	0	0	
		호스피스1인	0	0	0	0	0	0	0	0	0	0	0	
	일반입원실(일반)	1인	0	0	0	0	0	0	0	0	0	0	0	0
		2인	0	0	0	0	0	0	0	0	0	0	0	0
		3인	0	0	0	0	0	0	0	0	0	0	0	0
		4인	0	0	0	0	0	0	0	0	0	0	0	0
		5인	0	0	0	0	0	0	0	0	0	0	0	0
		6인이상	0	0	0	0	0	0	0	0	0	0	0	0
		호스피스1인	0	0	0	0	0	0	0	0	0	0	0	0
		호스피스2인	0	0	0	0	0	0	0	0	0	0	0	0
	외국인전용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정신과입원실	(허가사항) 소개	정신과계방(상급)	1인	0	0	0	0	0	0	0	0	0	0	0
		2인	0	0	0	0	0	0	0	0	0	0	0	
		3인	0	0	0	0	0	0	0	0	0	0	0	
		1인	0	0	0	0	0	0	0	0	0	0	0	
	정신과계방(일반)	2인	0	0	0	0	0	0	0	0	0	0	0	0
		3인	0	0	0	0	0	0	0	0	0	0	0	0
		4인	0	0	0	0	0	0	0	0	0	0	0	0
		5인	0	0	0	0	0	0	0	0	0	0	0	0
		6인이상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정신과특별세	(허가사항) 소개	0	0	0	0	0	0	0	0	0	0	0	0
		정신과특별세(상급)	1인	0	0	0	0	0	0	0	0	0	0	0
		2인	0	0	0	0	0	0	0	0	0	0	0	0
		3인	0	0	0	0	0	0	0	0	0	0	0	0
1인		0	0	0	0	0	0	0	0	0	0	0	0	
2인		0	0	0	0	0	0	0	0	0	0	0	0	
중환자실	생인: 소아	(허가사항) 소개	일반병상	0	0	0	0	0	0	0	0	0	0	0
		격리병상	응답	0	0	0	0	0	0	0	0	0	0	0
	소아	일반병상	0	0	0	0	0	0	0	0	0	0	0	0
		격리병상	응답	0	0	0	0	0	0	0	0	0	0	0
	신생아	(허가사항) 소개	일반병상	0	0	0	0	0	0	0	0	0	0	0
		격리병상	응답	0	0	0	0	0	0	0	0	0	0	0
격리병실	(허가사항) 소개	응답	공조	1인	0	0	0	0	0	0	0	0	0	0
			다인	0	0	0	0	0	0	0	0	0	0	0
		기계식	1인	0	0	0	0	0	0	0	0	0	0	0
			2인	0	0	0	0	0	0	0	0	0	0	0
	비응답	1인	0	0	0	0	0	0	0	0	0	0	0	0
			2인	0	0	0	0	0	0	0	0	0	0	0
		다인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무균치료실	(허가사항) 소개	0	0	0	0	0	0	0	0	0	0	0	0	
	1인	0	0	0	0	0	0	0	0	0	0	0	0	
다인	0	0	0	0	0	0	0	0	0	0	0	0		



○ 특수진료실 현황 심원환기신고내역보기 ① 심원환과 지자체의 특수진료실신고내역이 다른 경우 지자체에 허가변경신고바랍니다.

구분	변경전 ③			변경후			구분 ③	변경전	변경후	
	일반병동 간호등급 적용여부	병실수	병상수	일반병동 간호등급 적용여부	병실수	병상수		시설유무	시설유무	
수술실		3	3		3	3	방진실	방진실내부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회복실		0	0		0	0		방진실외부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물리치료실		0	0		0	0		원외공동이용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응급실	(허가사항) 소개	0	0		0	0	임상검사실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일반병상	0	0		0	0	조제실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격리병상	음압		0			0	조할모세포처리실		<input type="checkbox"/>
비음압			0			0	혈액은행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분만실		0	0		0	0	모자통실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신생아실		0	0		0	0				
인공신장실		0	0		0	0				
강제치료실	<input type="checkbox"/>	0	0	<input type="checkbox"/>	0	0				
방사선핵소	<input type="checkbox"/>	0	0	<input type="checkbox"/>	0	0				
낮병동		0	0		0	0				

① 변경후 열의 회색 조희항목은 지자체 관리 항목으로 변경을 원하실 경우에는 「개설신고 변경」 외의기관 개설 변경신고(허가변경신청) 메뉴에서 먼저 변경신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 ③ 입원병실, 특수진료실, 기타시설에 대한 변경내역을 '변경 후' 란에 데이터 입력
- ④ 신고(허가)하는 시설의 변경 적용일 선택
- ⑤ 변경이 완료된 후 '임시저장' 클릭 후 최종 제출

※ 병실의 허가병상은 지자체 관리 항목이므로 변경을 원할 경우 '현황신고·변경' ▶ '관할 지자체 신고(허가)' ▶ '의료기관(기본, 대표자, 진료과목, 시설) 변경신고' 메뉴에서 먼저 변경신고 해야함 (관할 지자체 신고 부분 참고)

※ 실제 기준 병실·병상수와 입원료 기준 병실·병상 수의 합은 동일해야 함.

실제 기준 병실·병상수 : 물리적인 병실·병상 수

입원료 기준 병실·병상 수 : 영양급여비용 청구 시 산정하는 입원료를 기준으로 구분되는 병실·병상 수

● 온라인 신고 따라하기(팀운영 및 병상 신고)

보건의료자원통합신고포털 | 기호부여용병원 [00000000] | 2016-01-18 17:00:33 | IP: 0:0:0:0:0:0:1 | 로그아웃 (54: 03) | 서면신고진행조회 | 마이페이지 | 고객센터

서비스안내	개실신고·변경 1	현황신고·변경	휴·폐업	관계기관정보등록	정보마당	등계	마이페이지
일반현황 요양기관 주(←) 공동개설자 변경신고 사업자번호·청구SW업체 변경신고	시설현황 시설현황 신고 2 팀운영 및 병동 현황신고 요양병원 일반입원실 6인이상 병상 신고	인력현황 대진의 신고안내 의(약/조선)사 신고 의료기사 신고 간호인력 신고 정신건강임상심리사 신고 동위원소 취급인력 신고 의료인수 신고 의료인력 건강보험자격 연계조회	장비현황 장비현황 신고목록 진방장치 현황신고 진방장치 인력신고 특수장비 현황·인력 신고 특수장비 인력 신고목록 일반장비 현황신고 바코드 재발급 신청 바코드 재발급 진행현황 조회 의료장비 통합정보 조회	식대 입원환자식 신고 치료식 영양관리로 신고	차동제 일반병동 간호관리로 차동제 신고 중환자실 간호관리로 차동제 신고 요양병원 입원로 차동제 신고 의료급여 정신과 입원로 차동제 신고 호스피스수가 가산제 신고 호스피스도우미 현황조회 감염예방관리로 차동제 신고 집중치료실 입원로 신고 차동제 적용 결과 조회	특수운영현황 특수운영 지정현황 조회 특수운영 현황 조회 전문병원 지정현황 조회 상급종합병원 지정현황 조회 3차 의료급여기관 지정현황 조회 장기이식의료기관 지정현황 조회 검체검사 수탁기관 정보 조회 지역별 검체검사 수탁기관 정보조회 진료 의뢰·회송기관 정보조회 특수운영현황 신고 특수운영현황 신고목록 조회 응급의료기관 신고 축락의 및 협약 사회복지시설 신고 시설 공동이용기관 신고 장비 공동이용기관 신고 가정간호사업 실시기관 신고 참여병의원 신고(개방병원) 소외계층 의료서비스 지원사업 기관 신고	난임시술 의료기관 평가 기관조사표 신고 시술정보 등록

1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현황신고·변경' 선택

2 '팀운영 및 병동 현황신고' 클릭 후 화면전환 시 우측 상단의 **신규신고** 클릭



현황신고·변경 < 팀운영 및 병동 현황신고

현황신고·변경 > 시설현황 > 팀운영 및 병동 현황신고 점검요청 도움말

팀운영 및 병동 현황 **최종제출** ① 호스피스병동(특수) 병상수 변경 신고시 보건복지부의 시설변경 허가문서를 스캔하여 첨부하세요! 등록

③ **① 일반병동간호등급 산정에 정신과 폐쇄병동을 적용할지 여부** ① (적용하면 일반병동간호등급이 해당 폐쇄병동 입원 환자(건강보험)에게도 적용됩니다.)

변경 전 변경 전 적용일자 ----/--/-- 변경 후 적용 미적용 변경 후 적용일자 --/--/-- ① (적용일자는 산정분기 초일 기재)

④ **② 차등제 운영병상 현황** ① 목록장신이 안되는 경우 새로고침을 눌러주세요. 엑셀저장 총: 1 건

병동구분	병동코드	병동명	정신과 병동유형	단위코드	단위명	운영병상수	적용시작일자	적용종료일자	처리
특수	054	일반중환자실	해당없음	001	외과계	13	2015-09-01	9999-12-31	④ 변경

⑤ **③ 신고대상목록** 신규병동 엑셀저장 전체삭제 총: 0 건

변경구분	병동구분	병동코드	병동명	정신과 병동유형	단위코드	단위명	운영병상수	적용시작일자	적용종료일자	처리
데이터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⑥ **⑤ 임시저장**

- ③ 일반병동간호등급 산정에 정신과 폐쇄병동 적용 여부 확인 및 적용일자 입력
- ④ 기존 팀운영 및 병동 현황 목록에서 '변경'을 클릭하여 기존 병동정보를 변경
- ⑤ 신규병동 신고 시 '신규 병동'을 클릭하여 정보를 입력
- ⑥ '임시저장' 클릭 후 최종 제출

● 온라인 신고 따라하기(요양병원 일반입원실 6인이상 병상 신고)

보건의료자원통합신고포털 | 2016-01-18 17:00:33 | 로그아웃(32:13) 통합 신고조회 서면신고인행조회 마이페이지 고객센터

서비스안내 | **개설신고·변경** | **현황신고·변경** | 휴폐업 | 코로나관련신고 | 관계기관정보등록 | 정보마당 | 통계 | 마이페이지

<p>일반현황 요양기관 주(→)공동거설자 변경신고 사업자번호 청구 SW업체 변경신고</p>	<p>시설현황 시설현황 신고 탈원정 및 병동 현황신고 ② 요양병원 일반입원실 6인이상 병상 신고</p>	<p>인력현황 의료인력 인원수 신고 대건의 신고안내 의(약)조산)사 신고 의료기사 등 신고 간호인력 신고 영양사/조리사 신고 정신건강임상심리사 신고 동위원소 취급인력 신고 의료인력 건강보통자각 연계조회</p>	<p>장비현황 장비현황 신고목록 진행장차 인력신고 진행장차 현황신고 특수장비 현황 인력 신고 특수장비 인력 신고목록 일반장비 현황신고 비포드 제발급 신청 비포드 제발급 진행현황 조회 의료장비 종합정보 조회</p>
<p>석대 입원환자식 신고 치료식 영양관리료 신고</p>	<p>차등제 일반병동 간호관리료 차등제 신고 중환자실 간호관리료 차등제 신고 요양병원 입원료 차등제 신고 의료급여 정신과 입원료 차등제 신고 호스피스수가 가산제 신고 호스피스도우미 현황조회 감염예방관리료 차등제 신고 수술실 환자안전관리료 차등제 신고 집중치료를 입원료 신고 회생료 차등제 신고 간호사 처우개선 모니터링 입원환자 진단진료의 권리로 신고 차등제 적용 결과조회</p>	<p>특수운영현황 특수운영 지정현황 조회 특수운영 현황 조회 전문병원 지정현황 조회 상급종합병원 지정현황 조회 3차 의료급여기관 지정현황 조회 장기이식의료기관 지정현황 조회 검체검사 수탁기관 정보조회 지역별 검체검사 수탁기관 정보조회 진료 의뢰-회송기관 정보조회 코로나19 중증환자 진단치료병상 정보조회 특수운영현황 신고 특수운영현황 신고목록 가정간호사업 실시기관 신고 응급의료기관 신고</p>	<p>난임시술 의료기관 평가 기관조사표 작성 난임시술기록기 업로드 및 조회 난임마당</p>

- 1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현황신고·변경' 선택
- 2 '요양병원 일반입원실 6인이상 병상 신고' 클릭 후 화면전환 시 우측 상단의 **신규신고** 클릭



현황신고 변경 > 시설현황 > 요양병원 일반입원실 6인 이상 병상 신고

시설 최종제출

총(운영,허가) 병실 및 병상 현황

기존 적용일 2018-11-01 변경 적용일 --

6인 이하 병실 및 병상 현황

시설구분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이상
실제기준 병실	0				0	17
실제기준 병상	0				0	251

병실 및 병상 현황

구분

변경전

실제 기준 병상수

입원병실	일반입원실	일반입원실(6인상세)	(일반입원실6~14인) 소계	17	250
			6인	1	6
			7인	1	7
			8인	1	8
			9인	1	9
			10인	1	10
			11인	1	11
			12인	1	12
			13인	2	26

요양병원 일반입원실 6인 이상 병상현황 신고안내

6인 이상 요양병원 시설 변경 신고 시,
일반입원실 6인 이상 변경 신고에 대한 심평원 승인 완료 후,
6인~14인 이상 상세 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오늘 하루 동안 이 팝업을 열지 않습니다. 닫기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 시설현황 일반입원실 6인 이상 상세신고 완료 후 (시설 현황 신고 방법 참조) 6인~14인 이상 병실 상세 신고를 진행해야 한다는 팝업 안내창 확인 후 닫기

원황신고 변경 < 요양병원 일반입원실 6인 이상 병상 신고

현황신고 변경 > 시설현황 > 요양병원 일반입원실 6인 이상 병상 신고

0 총(운영, 허가) 병실 및 병상 현황 (3)

기존 적용일 2018-11-01 변경 적용일 -- --

0 6인 이하 병실 및 병상 현황

시설구분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이상	적용시각일자	적용종료일자
실제기준 병실	0	0	0	0	0	17	2018-11-05	9999-12-31
실제기준 병상	0	0	0	0	0	251		

0 병실 및 병상 현황

④ 변경 값 입력 후 변경 전/후 비교

⑥ 기신고 내역 비교

구분	변경전		변경후	
	실제 기준 병상수	실제 기준 병상수	실제 기준 병상수	실제 기준 병상수
입원병실	17	250	17	251
일반입원실	1	6	2	12
일반입원실(6인상)	1	7	3	21
7인	1	8	1	8
8인	1	9	0	0
9인	1	10	1	10
10인	1	11	1	11
11인	1	12	0	0
12인	2	26	3	33
13인	8	161	6	150

⑤ 인실별 자동계산 (14인 병상 제외)

① 6인 이상 병상을 보유하고 있으나 현황이 조회되지 않는 경우, 먼저 '시설현황 신고'에서 실제 기준 병상 수를 변경해야 합니다.

문의: 본원 담당부서: 자원관리부 전화번호: 1644-2000 팩스: 033-911-7350
고객센터: 1644-2000 원격자문상담

- ③ 기존 적용일 확인 후 변경 적용일자 입력(기 신고된 내역 존재 시 기존 적용일자 이후로만 신고가능)
- ④ 변경 된 병실수 및 병상수 값 입력 후 변경 전/후 비교
- ⑤ 시설 6인부터 13인까지 각 항목별 병실 입력 시 자동 병상수 계산, 14인 이상 병실의 병상수는 직접입력
- ⑥ 기신고 내역과 변경 후 병실수 및 병상수 확인(기신고된 6인 이상 병실수 및 병상수와 6인 이상 상제신고 시 수가 동일해야 함)
- ⑦ '임시저장' 클릭 후 최종제출



2-2 시설 현황 신고 관련 자주하는 질문(FAQ)

연번	질의대상	문의사항	답변내용												
1	신고일반	요양병원 격리실 시설 신고방법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자체로부터 격리실 허가를 득한 후 심평원 상세신고 진행함. • 별도의 병동으로 구분 운영하는 경우는 '일반병동 간호등급 적용여부' 미체크, 구분 운영하지 않는 경우는 '일반병동 간호등급 적용여부'체크 ※ '18.12.31. 구비 의무화 300병상 당 1개 이상 격리병실(1인실 원칙, 샤워 시설을 갖춘 화장실) 												
2		요양병원 격리실 차등제 운영병상 신고방법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별도의 병동으로 구분 운영하는 경우, 병동구분 (특수), 병동코드(격리병실)로 운영병상 수 신고함. • 별도의 병동으로 구분 운영하지 않는 경우에는 격리실이 속한 일반병동에 포함하여 운영병상수 신고함. 												
3	신고기준	건보법 신고 항목 중 분만실, 신생아실, 인공신장실, 낮병동의 시설기준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별도의 시설기준이 없으나, 해당 목적에 따른 용도로 타 시설과 별도로 구축되어 있는 경우 신고가능함. ※ 건보법 신고 항목 중 강내치료실, 방사선옥소, 조혈모 처치실, 혈액은행, 모자동실의 경우 관련 법령에 따른 시설기준에 따름. (아래 표 참조) 												
<table border="1"> <thead> <tr> <th>구분</th> <th>관련 법·기준</th> </tr> </thead> <tbody> <tr> <td>강내치료실</td> <td>원자력안전법</td> </tr> <tr> <td>방사선옥소</td> <td>원자력안전위원회규칙 14호 및 고시 제2015-5호</td> </tr> <tr> <td>조혈모세포처리실</td> <td>조혈모세포이식의 요양급여에 관한 기준, 고시 제2015-44호</td> </tr> <tr> <td>혈액은행</td> <td>혈액관리법 시행규칙 별표4 1,2호</td> </tr> <tr> <td>모자동실</td> <td>의료법 시행규칙 별표4 1호 라항</td> </tr> </tbody> </table>		구분	관련 법·기준	강내치료실	원자력안전법	방사선옥소	원자력안전위원회규칙 14호 및 고시 제2015-5호	조혈모세포처리실	조혈모세포이식의 요양급여에 관한 기준, 고시 제2015-44호	혈액은행	혈액관리법 시행규칙 별표4 1,2호	모자동실	의료법 시행규칙 별표4 1호 라항		
구분		관련 법·기준													
강내치료실		원자력안전법													
방사선옥소		원자력안전위원회규칙 14호 및 고시 제2015-5호													
조혈모세포처리실		조혈모세포이식의 요양급여에 관한 기준, 고시 제2015-44호													
혈액은행	혈액관리법 시행규칙 별표4 1,2호														
모자동실	의료법 시행규칙 별표4 1호 라항														
4	병상확보 비율	현행 확보비율 유지 범위 변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중 정신병원, 의료재활 시설의 상급병실 급여화' 관련 기준 '19.12.31.까지 현행 확보 비율(4~6인 이상 50%)이 (2~6인 이상 50%) 유지로 변경되었습니다. 												

연번	질의대상	문의사항	답변내용
5		<p>'20.1.1.부터 변경되는 병원·한방병원의 일반병상 확보비율은? 비율 산정 시 나뉘지 않는 병상을 반올림해도 되나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1.부로 병원·한방병원(요양병원 中 정신병원, 의료재활시설 포함) 일반병상 확보비율은 기존 50%에서 60%로 상향됩니다. 비율 산정 시, 정수로 나누어 떨어지지 않는 병상의 경우 반올림(또는 버림)하지 않으며, 60% 비율 이상을 확보해야 합니다. 예) 총 허가병상이 42병상인 경우, $[42 \times 0.6 = 25.2]$로 계산하여 25.2병상(60%) 이상인 26병상을 일반병상으로 확보해야 합니다.



PART 3 요양기관 장비 현황 신고

3-1 장비 현황 신고

● 알아두기

- 신고 대상인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특수의료장비, 일반장비 현황을 통합신고포털 또는 서면으로 신고
- 진행절차
 - 1)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현황신고·변경' ▶ '장비신고' ▶ '진방장치 인력신고'(또는 '진방장치 현황 신고', '특수장비 현황·인력신고', '일반장비 현황신고') 클릭
 - 2) 장비별 신고화면에서 현황 신고
 - 진방 및 특수의료장비는 시·군·구 신고 처리시 심사평가원 신고로 간주됨

• 제출서류

구분	제출 서류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1. 구입증빙자료(세금계산서 또는 계약서 등) 사본 2. 의료기기 제조(수입)품목허가(신고)증 사본 3. 진방장치 검사성적서, 방사선 방어시설 검사성적서 4. 안전관리책임자선임, 방사선 관계 종사자 신고서 및 관련서류(추가 설치 또는 재사용 신고 등 종사자 변동이 없는 경우에는 제외) 5. 진방장치 사용중지·양도·이전 신고증명서 원본(재사용 또는 양도·이전 장비의 사용 시) 6. 진방특수장비(전산화단층촬영장치, 유방촬영용장치)의 경우 특수의료장비 등록증명서 사본 ※ 보건의료자원 통합신고포털을 통해 신고 시 2, 5는 생략 가능하며, 4의 방사선 관계 종사자 신고가 미리 선행되어야 함
특수의료장비	1. 구입증빙자료(세금계산서 또는 계약서 등) 사본 2. 의료기기 제조(수입)품목허가(신고)증 사본 3. 특수의료장비 등록신청한 의료기관의 개설허가증명서 또는 개설신고증명서 사본 4. 특수의료장비 운영인력기준의 영상의학과전문의 자격증 및 방사선사 면허증 사본 5. 병상 공동활용기관의 경우 병상 공동활용 동의서(유방 촬영용 장치 외의 특수의료장비로서 다른 의료기관과 공동활용하려는 경우에만 제출) ※ 보건의료자원 통합신고포털을 통해 신고 시 2,3,4는 생략 가능하며, 5는 사본으로 제출 가능
일반장비	1. 구입증빙자료(세금계산서 또는 계약서 등) 사본 2. 의료기기 제조(수입)품목허가(신고)증 사본 3. KINS(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에서 시행한 방사성동위원소 등에 대한 시설검사결과 통보 문서 4. Full PACS 정상가동일 확인 자료 및 장비현황표 각 1부 ※ 보건의료자원 통합신고포털을 통해 신고 시 2는 생략 가능 3은 「원자력안전법」 관련 장비, 4는 Full PACS 장비만 해당

※ 신고 내용에 따라 제출 서류가 달라지므로 '온라인 신고 따라하기' 부문 참조

• 제출방법

- 스캔 등 파일로 만들어 현황 신고시 첨부
- 파일 첨부가 어려운 경우 또는 서면 신고의 경우 팩스로 전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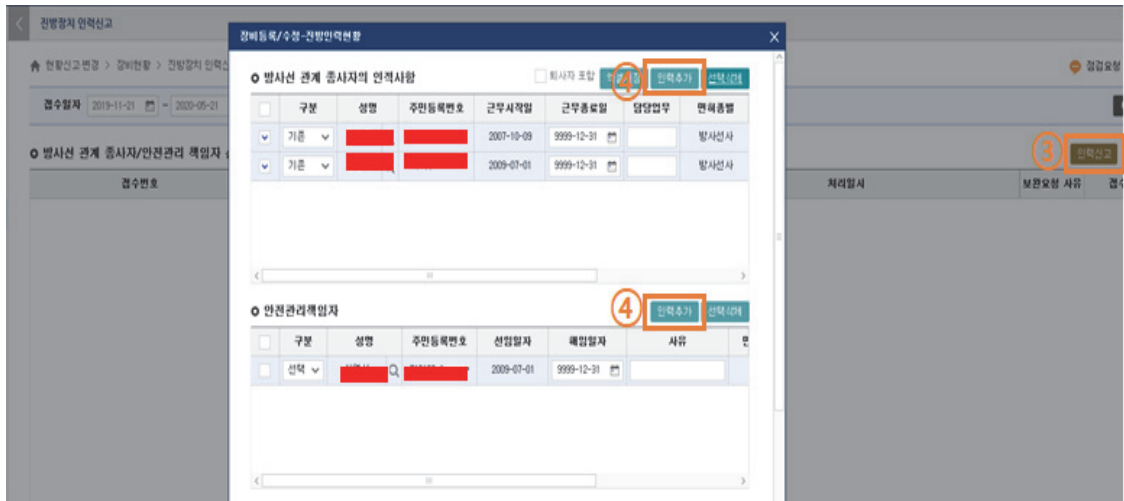
● 온라인 신고 따라하기(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인력신고)



①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현황신고·변경' 선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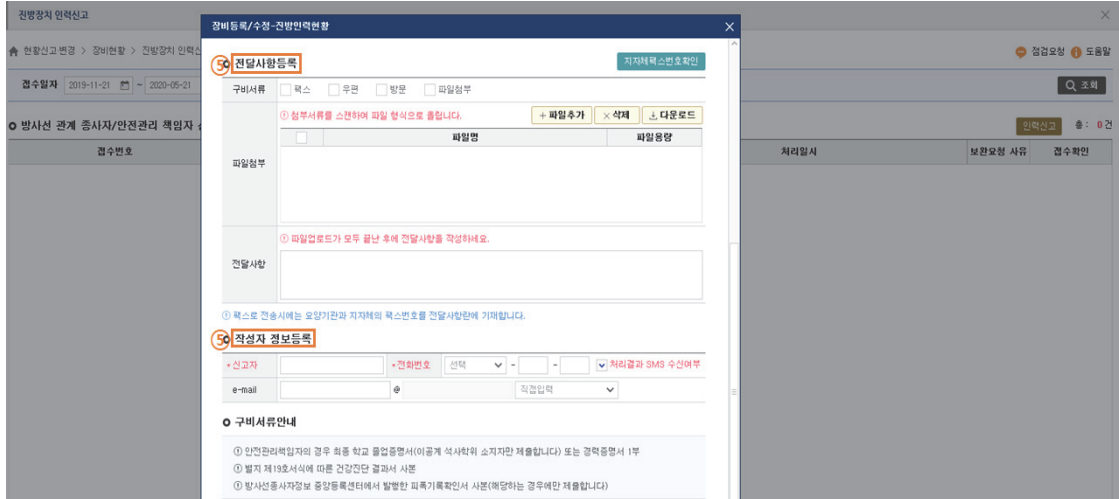
② '진방장치 인력신고' 클릭

※ 장비의 추가 설치 또는 재사용 신고 등 종사자 변동이 없는 경우 바로 '진방장치 현황신고' 진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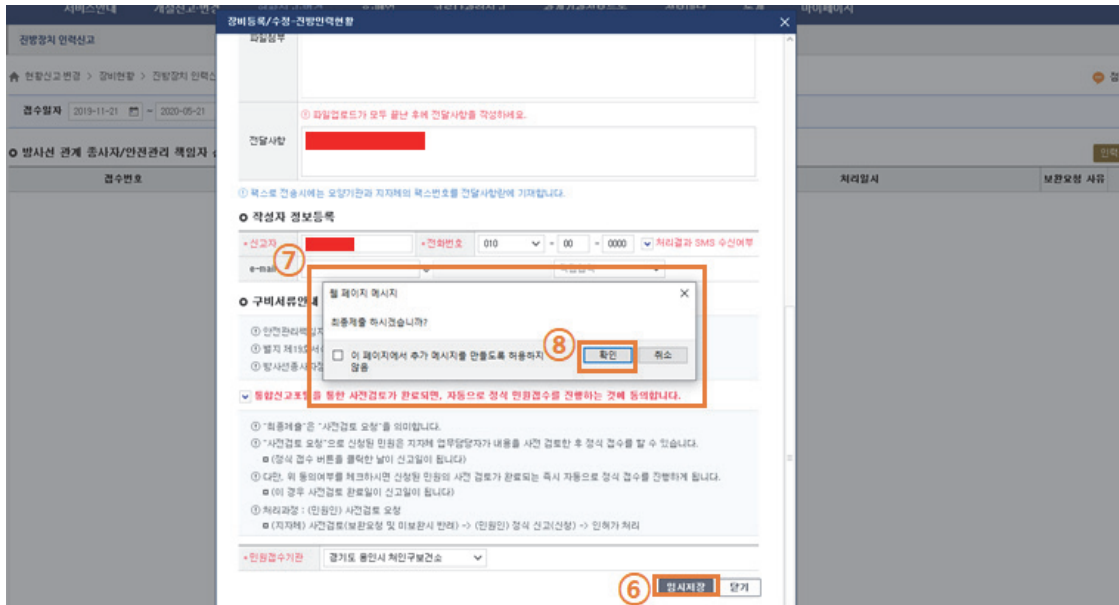


③ '인력신고' 클릭 시 '장비등록/수정-진방인력현황' 팝업 생성

④ '인력추가' 클릭 후 방사선 관계 종사자 및 안전관리책임자 입력



5 전달사항등록 및 작성자정보등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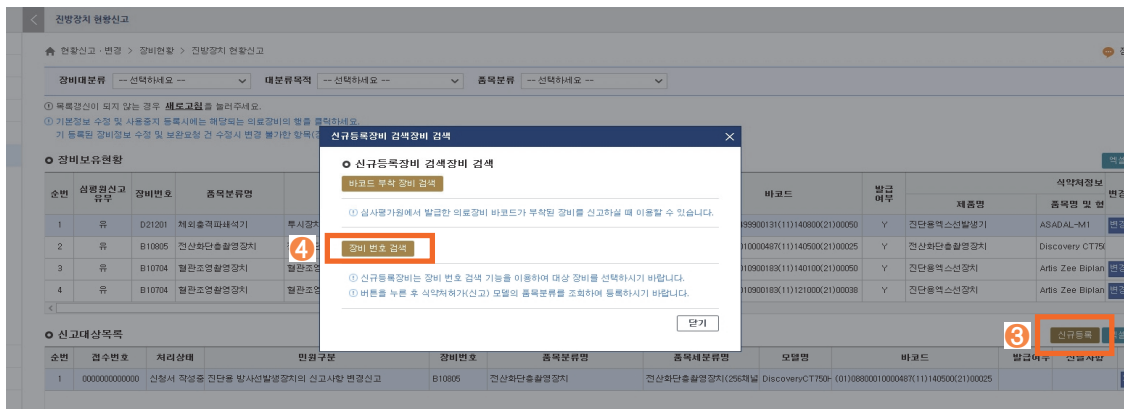
6 '임시저장' 클릭 시 7과 같은 팝업 생성

8 '확인' 클릭하여 최종제출

● 온라인 신고 따라하기(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 ①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현황신고·변경' 선택
- ② '진방장치 현황신고' 클릭



- ③ '신규등록' 클릭 시 '신규등록장비 검색장비 검색' 팝업 생성
- ④ '장비 번호 검색' 클릭시 '식약처 허가(신고)정보 보건복지부 품목분류정보' 팝업 생성



(팝업)식약처 허가(신고)정보-보건복지부 품목분류정보

5

식약처 허가(신고)번호
 모델명

 식약처분류번호
 장비번호

 업소허가번호 전체 호

① 주의사항

1. 조회 조건을 선택 입력 후 조회버튼을 눌러 아래의 결과를 확인하십시오. (☞ 조회결과가 없는 경우에는 취소 버튼을 눌러 창을 닫고 "(팝업)의료장비 등록" 화면에서 직접 입력 하십시오)
2. 식약처 허가(신고) 품목 중 기능이 확인된 모델에 한하여 [보건복지부 품목분류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식약처 허가(신고)정보만 조회를 경우 적용버튼을 눌러 식약처정보를 연정한 후 '장비번호'는 "(팝업)의료장비 등록" 화면에서 직접 입력 하십시오.

● 식약처 허가(신고)정보 및 보건복지부 품목분류정보

보건복지부 품목분류 조회 총 : 00 건

순번	식약처 허가(신고)정보									선택	장비번호	대분류
	모델명	허가(신고)번호	제품명	분류번호	허가(신고)일	업소허가번호	업소명	제조원	중고여부			
데이터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 5 '식약처 허가(신고)정보 보건복지부 품목분류정보' 창에서 식약처 허가번호 입력 조회 후 해당 장비 번호의 적용 버튼 클릭 ▶ '장비등록/수정' 화면 생성
 ※ 중고장비의 경우 바코드 검색 가능

서비스안내 | 개설 | 현황신고 | 변경 | 휴·폐업 | 관계기관정보등록 | 정보마당 | 통계 | 마이페이지

진행장치 현황신고 > 현황신고 > 변경 > 장비현황 > 진행장치

장비대분류 -- 선택하세요 --

① 목록경신이 되지 않는 경우 새로고침을 눌러
② 기본정보 수정 및 사용중지 등록시에는 해당장치가 등록된 장비정보 수정 및 보완요청 건 수정

○ 장비보유현황

순번	심평원신고유무	장비번호	품목분류
1	유	D21201	체외출력파쇄기
2	유	B10805	전산화단층촬영
3	유	B10704	혈관조영촬영
4	유	B10704	혈관조영촬영

○ 신고대상목록

순번	접수번호	처리상태
1	00000000000000	신청서 작성중 진단용

보안프로그램설치 | XP용 설치프로그램

장비등록/수정-진행장치로장비

○ 의료장비 품목분류

장비번호	D21201	장비 번호 검색	보건복지부고시 장비번호 다운로드
장비대분류	체치 · 수술방위 관련 장비	대분류목적	체치 · 수술장비
품목분류	체외출력파쇄기기	품목세분류	투시장치 부착 기기(마그네틱 방식)

○ 기본 정보 6

비코드	(01)0 : 8800499900131 (11) : 140800 (21) : 00050	비코드발급여부	<input checked="" type="radio"/> Y <input type="radio"/> N
·진반장치 명칭	진단용 엑스선 발생기		
·진반장치 용도	투시(C-ARM)		
구분	장비형식		
장비형식	[HF] 투시	- 120	- P
수정형식	선택	-	-
·형식명	HF-120-P		

① 비코드가 부착되어 있는 장비는 비코드를 입력하여 등록 비코드 중복체크

○ 허가/제조정보 6

·허가(신고)번호	제허09-465호	식약처 정보조회	① 버튼을 누르면 별도 입력없이 식약처정보를 연계등록할 수 있습니다.
·제품명	진단용엑스선발생기		
·제조년월일	2014-08-00		
·제조회사	엠스유로컴프	·제조국	대한민국

① 장비의 제조정보 확인, 제조년월은 8자리로 입력, 확인이 안되는 경우 0000-00-00으로 입력, 제조번호가 확인이 안되는 경우 기기업체에 확인

발급여부	제품명	비코드	발급여부
0)00050	진단용엑스선발생기	(1)08800010000487(11)140500(21)00025	
0)00025	전산화단층촬영장치		
0)00050	진단용엑스선장치		
0)00038	진단용엑스선장치		

비코드	발급여부
(1)08800010000487(11)140500(21)00025	

분원 담당부서 : 자원관리부 전화번호 : 164

6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기본정보, 허가/제조정보, 구입·판매·설치정보 등 필수항목을 입력
※ 주황색의 입력 기준 설명을 참조하여 입력



○ 전달사항등록

지자체팩스번호확인

구비서류 팩스 우편 방문 파일첨부

① 첨부서류를 스캔하여 파일 형식으로 올립니다 **7** + 파일추가 × 삭제 ↓ 다운로드

	파일명	파일용량
파일첨부		

① 파일업로드가 모두 끝난 후에 전달사항을 작성하세요.

전달사항

신고증명서신청 온라인 발급을 신청합니다.

○ 작성자 정보등록 **8**

* 신고자 *전화번호 선택 - - 처리결과 SMS 수신여부

e-mail @ 직접입력

○ 구비서류안내

- ①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는 진단용방사선 발생장치설치 및 사용 신고필증 사본 추가(보건기관 신고내역 조회 활용 시 생략가능)
- ① 구입증빙자료(세금계산서 또는 계약서 등) 사본
- ① 식약처 의료기기제조(수입) 품목허가(신고)증 사본(식약처 정보조회 활용시 생략가능)
- ① 특수의료장비(MRI, CT, 유방촬영용장치)는 특수의료장비등록필증, 영상 품질검사필증 사본 추가(보건기관 신고내역조회 활용시 생략가능)
- ① 원자력안전법에 의한 장비는 방사성동위원소 등에 대한 시설검사 및 결과 통보(문서)사본 추가
- ① 영상저장 및 전송시스템(Full PACS)인 경우에는 영상저장 및 전송시스템(Full PACS)장비 현황표 및 정사가동일 확인자료 사본

▼ 통합신고포털을 통한 사전검토가 완료되면, 자동으로 정식 민원접수를 진행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① "최종제출"은 "사전검토 요청"을 의미합니다.
- ① "사전검토 요청"으로 신청된 민원은 지자체 업무담당자가 내용을 사전 검토한 후 정식 접수를 할 수 있습니다.
 - (정식 접수 버튼을 클릭한 날이 신고일이 됩니다)
- ① 다만, 아래 동의여부를 체크하시면 신청된 민원의 사전 검토가 완료되는 즉시 자동으로 정식 접수를 진행하게 됩니다.
 - (이 경우 사전검토 완료일이 신고일이 됩니다)
- ① 처리과정 : (민원인) 사전검토 요청
 - (지자체) 사전검토(보안요청 및 미보완시 반려)
 - (민원인) 정식 신고(신청)
 - 인허가 처리

* 민원접수기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보건소

9 최종제출 임시저장 닫기

- 7** '파일추가'를 클릭하여 제출 서류 첨부
- 8** 작성자 정보를 입력
- 9** '임시저장' 버튼 클릭 후 '최종 제출' 클릭

현황신고·변경 < 진행중지 현황신고 >

현황신고 > 변경 > 장비현황 > 진행중지 현황신고

10 장비대분류 영상진단 방사선치료방위 관 대분류목적 방사선진단장비 종류분류 일반엑스선촬영장치

① 목록강선이 되지 않는 경우 **새로고침**을 눌러주세요.
 ② 기본정보 수정 및 사용중지 등록시에는 해당되는 의료장비의 행을 클릭하세요.
 * 등록된 장비정보 수정 및 보완요청 건 수정시 변경 불가한 항목(장비번호, 금액(적용일자)은 삭제 후 신규등록 하셔야 합니다.

0 장비보유현황 등록차량 총: 10건

순번	성명/신고유주	장비번호	종목분류명	종목세분류명	관련번호	금액적용 계시일자	금액적용 종료일자	사용구분	비코드	발급 여부	선택제정보	
											제품명	변경신고 종목명 및 형
1	유	B10102	일반엑스선촬영장치	일반엑스선촬영장치(디지털)	12	2010-11-08	2016-01-13	사용중	(01)08800001500217(11)03000(21)00001	Y	진단용엑스선장치	CVD-6 11 변경신고 사용구분
2	유	B10101	일반엑스선촬영장치	일반엑스선촬영장치(아날로그)	10	2006-06-30	2016-06-20	사용중	(01)08800001500897(11)0606000(21)00001	Y	진단용엑스선발광기	Sinus 130HP 변경신고 사용구분
3	유	B10101	일반엑스선촬영장치	일반엑스선촬영장치(아날로그)	13	2004-05-10	9999-12-31	사용중	(01)08800001500897(11)0402000(21)00003	Y	진단용엑스선발광기	Sinus 130HP 변경신고 사용구분
4	유	B10101	일반엑스선촬영장치	일반엑스선촬영장치(아날로그)	14	2004-05-10	9999-12-31	사용중	(01)08800001500897(11)0402000(21)00002	Y	진단용엑스선발광기	Sinus 130HP 변경신고 사용구분

0 신고대상목록 신규등록 등록차량 총: 1건

순번	결수번호	처리상태	현황구분	장비번호	종목분류명	종목세분류명	오명명	비코드	발급여부	전달사항	신고관리
1	000000000000	신청서 작성중	간단용 방사선발광장치의 신고사할 변경신고	B10605	간단용엑스선촬영장치	간단용엑스선촬영장치(256계급)	DiscoveryCT75H	(01)08800010000467(11)40500(21)00025			기속입력 삭제

- 10 양도·폐기·사용중지 및 신고사할 변경 신고의 경우, 신고 대상 장비의 장비 분류를 선택 후 조회
- 11 신고 내용에 따라 신고 대상 장비의 '변경신고' 또는 '사용구분' 버튼 클릭
 - ※ 기존 신고 사항의 변경 신고는 '변경신고', 양도·폐기·사용중지·이전은 '사용구분'
 - ※ '변경신고' 클릭시 기존 신고된 현황 정보가 보이며, 수정할 내용을 변경 후 하단의 **임시저장**

▶ **최종제출**

• 참고 : 신고 유형별 구비 서류

구 분	구비 서류
<p>설치 및 (재)사용신고 (별지 제1호서식)</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검사성적서 사본 1부 2. 방사선 방어시설 검사성적서 사본 1부 3.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방사선 관계 종사자 안전관리책임자 신고서 1부(추가 설치인 경우 또는 종사자 변동이 없는 재사용 신고시 제외, 보건의료자원 통합신고포털을 통해 신고시 사본 제출 가능) 4. 양도 또는 이전한 자의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신고증명서 원본 1부(양도받거나 이전 설치하는 경우에만 제출하며, 보건의료자원 통합신고포털을 통해 신고시 생략) 5. 특수의료장비 등록증명서 사본 1부(특수의료장비를 설치하는 경우에만 제출하며, 보건 의료자원 통합신고포털을 통해 신고하는 경우에는 사본으로 제출 가능) 6.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사용중지 신고증명서 원본(사용중지 후 다시 사용하는 경우에만 제출하며, 보건의료자원 통합신고포털을 통해 신고시 생략 가능) 7. 의료기기 제조허가증 또는 수입허가증 사본 1부(보건의료자원 통합신고포털을 통해 신고시 생략 가능) 8. 세금계산서, 계약서 등 구입 또는 임차 사실 증명자료 사본 1부
<p>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p> <p>방사선 관계 종사자 변동 및 안전관리책임자 선임·해임·겸임 신고 (별지 제6호서식)</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안전관리책임자의 경우 최종 학교 졸업증명서(이공계 석사학위 소지자만 제출) 또는 경력증명서 1부 2. 별지 제19호서식에 따른 건강진단 결과서 사본 1부 3. 방사선종사자정보 중앙등록센터에서 발행한 피폭기록확인서 사본 1부(해당되는 경우에만 제출) <p>※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안전관리책임자의 면허(자격)증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그 사본을 제출</p>
<p>신고사항 변경신고 (별지 제5호서식)</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신고증명서 원본 1부(보건의료자원 통합신고포털을 통해 변경신고시 생략 가능) 2.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검사 성적서 사본 1부(관할 구역 내 의료기관 이전의 경우만 해당) 3. 방사선 방어시설 검사 성적서 사본 1부(관할 구역 내 의료기관 이전의 경우만 해당) 4. 이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관할 구역 내 의료기관 이전의 경우만 해당)
<p>사용중지·양도· 이전·폐기신고 (별지 제2호서식)</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신고증명서 원본 1부(보건의료자원 통합신고포털을 통해 신고시 생략 가능) 2. 양도·양수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양도신고를 하는 경우에만 제출) 3. 폐기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폐기신고를 하는 경우에만 제출) 4. 이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이전신고를 하는 경우에만 제출)



● 온라인 신고 따라하기(특수의료장비)

보건의료자원통합신고포털 | 기호부여용병원 [00000000] | 2016-01-18 17:00:33 | IP: 0:0:0:0:0:0:1 | 로그아웃(54:03) | 서면신고진행조회 | 마이페이지

서비스안내 | 개설신고·변경 **1** | **현황신고·변경** | 휴·폐업 | 관계기관정보등록 | 정보마당 | 통계 | 마이페이지

일반현황 요양기관 주->공동개설자 변경신고 사업자번호·청구SW업체 변경신고	시설현황 시설현황 신고 차등제 운영방상 신고 요양병원 일반입원실 6인이상 병상 신고	인력현황 매진의 신고안내 의(약/조산)사 신고 의료기사 신고 간호인력 신고 정신건강임상심리사 신고 동위원소 취급인력 신고 의료인수 신고 의료인력 건강보험자격 연계조회	장비현황 장비현황 신고목록 진방장치 현황신고 진방장치 이력신고 2 특수장비 현황·인력 신고 특수장비 인력 신고목록 일반장비 현황신고 바코드 재발급 신청 바코드 재발급 진행현황 조회 의료장비 종합정보 조회
--	--	---	--

- 1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현황신고·변경' 선택
- 2 '특수장비 현황·인력신고' 클릭

특수장비 현황·인력 신고

현황신고·변경 > 장비현황 > 특수장비 현황·인력 신고

장비대분류 -- 선택하세요 -- | 대분류목적 -- 선택하세요 -- | 품목분류 -- 선택하세요 --

① 목록경신이 되지 않는 경우 새로고침을 눌러주세요.
 ① 기본정보 수정 및 사용중지 등록시에는 해당되는 의료장비의 열람 권한이 필요합니다.
 ① 등록된 장비정보 수정 및 보완 요청 건 수정시 변경 불기한 알림()

3 신규 팝업

○ 신규등록장비 검색장비 검색

바코드 부착 장비 검색

장비 번호 검색

① 심사평가원에서 발급한 의료장비 바코드가 부착된 장비를 신고하실 때 이용할 수 있습니다.
 ① 신규등록장비는 장비 번호 검색 기능을 이용하여 대상 장비를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① 버튼을 누른 후 식약처허가(신고) 도열의 품목분류를 조회하여 등록하시기 바랍니다.

닫기

3 신규등록

순번	심평원신고유무	장비번호	품목분류명	바코드	발급여부	제증명	변경신고/중지
1	유	B10502	유방촬영용장치	0883001000152(11)050600(2)00001	Y	유방촬영용장치(mammograph)	변경신고 사용자
2	유	B10804	전산화단층촬영장치	0883001030108(11)080200(2)00001	Y	전산화단층촬영장치(CT)	변경신고 사용자
3	유	B10805	전산화단층촬영장치	08830010300554(11)100800(2)00001	Y	전산화단층촬영장치(CT)	변경신고 사용자
4	유	B30104	자기공명영상진단기	08830010300602(11)120300(2)00009	Y	자기공명영상촬영장치(MRI)	변경신고 사용자

○ 신고대상목록

순번	접수번호	처리상태	민원구분	장비번호	품목분류명	품목세분류명	모형명	바코드	전달사항
1	0000000000000	신청서 작성중	특수의료장비(유방촬영용장치)신고	B10502	유방촬영용장치	유방촬영용장치(디지털)	Senographe DS		

- 3 '신규등록' 클릭 시 신규등록장비 검색장비 검색 팝업 생성
 ※ 장비번호 검색 등 이후 신고 절차는 진단응 방사선 발생장치와 동일

• 참고 : 신고 유형별 구비 서류

구 분	구비 서류
<p>등록신청 (별지 제1호서식)</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특수의료장비 관련 등록인력의 영상의학과 전문의 자격증 및 방사선사 면허증 사본 각 1부(보건의료자원 통합신고포털을 통해 신고시 제출 생략 가능) 2. 특수의료장비 등록신청을 한 의료기관의 개설허가증명서 또는 개설신고증명서 사본 1부(보건의료자원 통합신고포털을 통해 신고시 제출 생략 가능) 3. 「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별지 제2호서식의 특수의료장비 공동활용 동의서 1부(유방 촬영용 장치 외의 특수의료장비로서 다른 의료기관과 공동활용하려는 경우에만 제출하며, 보건의료자원 통합신고포털을 통해 신고시 사본으로 제출 가능) 4. 의료기기 제조허가증 또는 수입허가증 사본 1부(보건의료자원 통합신고포털을 통해 신고시 제출 생략 가능) 5. 세금계산서, 계약서 등 구입 또는 임차 사실 증명자료 사본 1부
<p>인력등록사항 변경 (별지 제5호서식)</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특수의료장비 등록증명서 원본 1부(보건의료자원 통합신고포털을 통해 변경 통보시 생략 가능) 2. 특수의료장비 관련 변경인력의 영상의학과 전문의 자격증 및 방사선사 면허증 사본 각 1부(보건의료자원 통합신고포털을 통해 신고시 생략 가능)
<p>특수 의료 장비</p> <p>시설등록사항/ 개설자/ 의료기관명칭/용 도/설치장소(주 소) 변경 (별지 제6호서식)</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특수의료장비 등록증명서 원본 1부(보건의료자원 통합신고포털을 통해 변경신고시 생략 가능) 2. 의료기관 개설허가증명서 또는 개설신고증명서 사본 1부(설치의료기관의 종류 또는 병상수를 변경한 경우에만 제출하며, 보건의료자원 통합신고포털을 통해 신고시 제출 생략 가능) 3. 변경사항이 적혀 있는 의료기관 개설허가증명서 또는 개설신고증명서 사본 1부(의료기관의 개설자 또는 명칭이 변경되거나 의료기관이 개설장소를 이전하여 특수의료장비 설치장소가 변경된 경우에만 제출하며, 보건의료자원 통합신고포털을 통해 신고시 제출 생략 가능) 4. 변경된 공동활용 의료기관의 특수의료장비 공동활용 동의서 사본 및 병상수 확인서 사본 각 1부(유방 촬영용 장치 외의 특수의료장비의 공동활용에 동의한 의료기관을 변경한 경우에만 제출)
<p>양도·폐기· 사용중지 (별지 제7호서식)</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특수의료장비 등록증명서 원본 1부(보건의료자원 통합신고포털을 통해 통보시 생략 가능) 2. 양도 및 폐기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



● 온라인 신고 따라하기(일반장비)

보건의료자원통합신고포털 | 기호부여용병원 [00000000] | 2016-01-18 17:00:33 | IP: 0:0:0:0:0:1 | 로그아웃(54:03) | 서면신고진행조회 | 마이페이지

서비스안내 | 개설신고·변경 **1** | **현황신고·변경** | 휴·폐업 | 관계기관정보등록 | 정보마당 | 통계 | 마이페이지

일반현황 오양기관 주<->공동개설자 변경신고 사업자번호·청구SW업체 변경신고	시설현황 시설현황 신고 차등제 운영병상 신고 요양병원 일반입원실 6인 이상 병상 신고	인력현황 대진의 신고안내 의(약/조산)사 신고 의료기사 신고 간호인력 신고 정신건강임상심리사 신고 동위원소 취급인력 신고 의료인수 신고 의료인력 건강보험자격 연계조회	장비현황 장비현황 신고목록 진방장치 현황신고 진방장치 인력신고 특수장비 현황·인력 신고 특수장비 인력 신고목록 2 일반장비 현황신고 바코드 재발급 신청 바코드 재발급 진행현황 조회 의료장비 종합정보 조회
---	---	---	---

- 1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현황신고·변경' 선택
- 2 '일반장비 현황신고' 클릭

일반장비 현황신고

현황신고·변경 > 장비현황 > 일반장비 현황신고

의료장비현황 | 최종제출

장비대분류 -- 선택하세요 -- | 대분류목적 -- 선택하세요 -- | 품목분류 -- 선택하세요 --

① 목록장신이 되지 않는 경우 **새로고침** 을 눌러주세요.
 ② 기본정보 수정 및 사용중지 등록시에는 해당되는 의료장비(일반장비) 기 등록된 장비번호 수정 및 보완요청 건 수정시 변경 불가능 항목

③ **신규등록 일반장비 검색장비 검색**

신규등록장비 검색장비 검색

바코드 부속 장비 검색

① 심사평가원에서 발급한 의료장비 바코드가 부착된 장비를 신고하실 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장비 번호 검색

① 신규등록장비는 장비 번호 검색 기능을 이용하여 대상 장비를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② 버튼을 누른 후 식약처허가(신고) 모델의 품목분류를 조회하여 등록하시기 바랍니다.

닫기

장비번호	품목분류명	품목세분류명	바코드	발급여부	제품명	품목명 및 현명
AI1000	오화학검사기	없음		N	오화학분석기	유리스크린 슈뢰 (URIS
AI1001	오화학검사기	없음		N	오화학분석기	유리스크린 슈뢰 (URIS
AI1002	오화학검사기	없음		N	오화학분석기	cobas 6500 urine ar
AI1003	오화학검사기	없음		N	오화학분석기	cobas 6500 urine ar

신규등록

- 3 '신규등록' 클릭 시 신규등록장비 검색장비 검색 팝업 생성
 - ※ 장비번호 검색 등 이 후 신고 절차는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와 동일
 - 단, 신고사항의 변경 또는 양도·폐기 등 사용중지 신고 모두 '변경신고' 버튼을 눌러 진행

• 참고 : 신고 유형별 구비 서류

구 분	구비 서류
일반 장비	1. 구입증빙자료(세금계산서 또는 계약서 등) 사본 2. 의료기기 제조(수입)품목허가(신고)증 사본 3. KINS(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에서 시행한 방사성동위원소 등에 대한 시설검사결과 통보 문서 4. Full PACS장비의 경우 정상가동일 확인 자료 및 장비현황표 각 1부 ※ 보건의료자원 통합신고포털을 통해 신고 시 2는 생략 가능 3은 「원자력안전법」 관련 장비, 4는 Full PACS 장비만 해당



3-2 | 의료장비 바코드 라벨 온라인 발급

● 알아두기

- CT 등 23종 장비*에 대해 바코드를 부여받으면 그 라벨을 출력하여 장비에 부착

* 바코드 대상 장비 : 특수의료장비 및 진단방사선발생장치 등 23종 장비
 전산화단층촬영장치(CT), 자기공명영상진단기(MRI), 유방촬영장치(Mammography), 양전자방출단층촬영장치(PET·PET-CT), 엑스선촬영·투시장치, 혈관조영촬영장치, C-Arm형 엑스선장치, 체외충격파쇄석기, 일반 엑스선촬영장치, 치과용방사선촬영장치, 치과방사선파노라마장치, 콘빔 CT, 골밀도검사기, 감마카메라, 초음파 영상진단기, 선형가속기, 후장전치료기, 감마나이프, 사이버나이프, 토모테라피, 중성자치료기, 양성자치료기, 혈액방사선조사기

• 진행절차

-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정보마당' ▶ '마이페이지' ▶ '증명서 발급' ▶ 장비 바코드 ▶ 바코드 출력 또는 우편신청(우편으로 라벨 수령을 원하는 기관)

● 온라인 발급 따라하기(의료장비 바코드 라벨 온라인 발급)



- 1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마이페이지' 선택
- 2 '장비 바코드' 클릭

장비바코드

마이페이지 > 증명서 발급 > 장비바코드

바코드 발급일자 2017-10-15 ~ 2018-10-10

바코드 출력 목록

순번	장비번호	종목분류명	세부분류명	바코드	모델명	제조번호	바코드	우편신청
3	830203	영상진단 방사선치료행위 관련 장비	범용초음파영상진단기	(01)0880045	IViz Ultrasound System Q4LX5W		바코드출력	우편신청
4	830203	영상진단 방사선치료행위 관련 장비	범용초음파영상진단기	(01)0880001	ACCUVIX A30	B23802300001028	바코드출력	우편신청
5	830203	영상진단 방사선치료행위 관련 장비	범용초음파영상진단기	(01)0880000	EPI0 7	US91480135	바코드출력	우편신청

③ '바코드 출력' 선택(바코드 라벨 우편수령을 원하는 기관은 ④ '우편신청' 선택)

(팝업)장비 바코드 조회 - Internet Explorer

증명서 출력

① 안내) 장비 바코드 출력은 1회 이상 가능합니다.
 ② 인쇄 프린터가 불가능으로 보일경우 [프린트 업데이트]가 필요합니다. ([ePaprus Print Update 바로가기](#))
 ③ 관련 기술 문의는 (주)이파피루스 로 하시기 바랍니다. (전화1544-1204)

닫기

5

일반엑스선촬영장치

(01)0880045 00(21)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건강정보" 앱에서 바코드를 찍으면 장비 상세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모바일앱(m.hba.or.kr)에서도 조회가 가능합니다.

-----절 취 선-----

·요양기관기호 :
 ·요양기관명칭 :
 ·모델명 :
 ·장비제조번호 :

1/1

⑤ (인쇄) 클릭하여 바코드 라벨 인쇄 후 장비에 부착



3-3 장비 현황 신고 관련 자주하는 질문(FAQ)

연번	질의종류	문의사항	답변내용
1	신고방법	예전부터 사용 중인 광중합기 장비를 신고하려고 합니다. 급여적용일자를 언제로 입력해야 하나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입 또는 임차 사실 증명자료 (세금계산서 또는 계약서)에 나와 있는 도입일로 기재.
2		“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 수가 청구 시 장비를 먼저 신고 해야 하나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민건강보험법」제43조(요양기관 현황에 대한 신고) 및 「의료장비현황 신고대상 및 식별부호화에 관한 기준」에 따라 요양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장비는 신고하여야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9년 1월1일 부터 만 12세 이하 아동에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은 광중합기(E20100)를 신고하여야 수가를 인정 받을 수 있음 ※ 미신고 시 조정사유코드 'R'로 조정됨
3	신고기준 및 대상	식약처 허가번호로 조회했을 시 엑스선촬영장치(아날로그) 장비로 확인이 되나, 요양기관에서는 해당 장비가 엑스선촬영장치(디지털) 장비인지 문의하는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엑스선촬영장치(아날로그) 장비에 컴퓨터영상처리장치(B30400) 또는 디지털영상처리장치(B30500)를 연결하여 영상을 획득하기 때문에 엑스선촬영장치(아날로그) 장비 자체가 엑스선촬영장치(디지털) 장비로 변경되었다고 문의하는 경우가 자주 발생 • 이 경우 엑스선촬영장치(아날로그) 장비는 변경 없이, 해당 요양기관의 컴퓨터영상처리장치(B30400) 또는 디지털영상처리장치(B30500)의 장비보유 여부를 확인하시어 미신고시 우리원에 신고하도록 안내
4		혈액관리료를 청구할 때 신고해야 하는 장비	<p>[혈액관리료 급여기준-장비] 혈액전용 냉장고, 혈액전용 냉동고, 전용해동기, 혈소판교반기 각 1대 이상씩 설치토록 함. 다만, 혈액전용 냉동고, 혈소판교반기에는 모두 온도 감시·기록·경보 장치가 있어야함.</p> <p>[혈액관리장치 관련 장비번호] ① D22201(혈액용 냉장고) ② D22202(혈액용 냉동고) ③ D22203(혈액용 해동기)</p>

연번	질의종류	문의사항	답변내용
5			④ D22204(혈소판 교반기) ⑤ D22205(혈액용 냉장고 및 냉동고 병용기기) → ①,②,③,④ 또는 ③,④,⑤가 각 1대이상씩 신고 되어 있어야함.
		식약처에서 허가받은 무호흡측정기를 심평원에 수면다원검사기로 신고할 수 있나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면다원검사는 수면장애를 검사하기 위한 장비로, 우리원에서는 9가지 인체 전기생리학적 변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뇌파(EEG) ② 안전도(ECG) ③ 근전도-턱(EMG-submental) ④ 심전도(ECG) ⑤ 호흡기류(Airflow) ⑥ 호흡노력(Respiratory effort) ⑦ 산소포화도(SaO2) ⑧ 체위감시(Body position) ⑨ 하지근전도(EMG-ant.tibialis) 모두 기록·분석 가능한 장비를 장비번호 A22600 수면다원검사기로 신고 받고 있음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135호 (2018.7.1.시행))
6	신고기준 및 대상	제품명이 의료용조합자극기이고 여러 기능이 조합된 장비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 해당 장비가 C21400(의료용조합자극기) 신고 대상이 맞나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C21400(의료용조합자극기)은 두 가지 이상의 이학요법 장비가 합쳐진 경우에 해당. 제품명과 식약처 분류명이 의료용조합자극기라도 동일한 장비번호가 아닐 수 있음 예1)극초단파치료기(C10600)+레이저치료기(C20900) → C21400(의료용조합자극기) 예2)고주파자극기(신고대상아님)+초음파치료기(C10400) → C10400(초음파치료기) 예3)고주파자극기(신고대상아님)+온열매트(신고대상아님) → Z99999(신고대상아님)



연번	질의종류	문의사항	답변내용																																	
7		사용중지·폐기 신고 완료된 장비 정보를 재확인하는 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보건의료자원통합신고포털(https://www.hurb.or.kr) 접속 > 공인인증서 로그인 > 마이페이지 > 현황조회 > 장비현황 > 상세조회 > 사용중지 장비포함(클릭)후 조회 																																	
8	신고일반	최근 의료장비현황 신고대상 고시 일부 개정을 통한 신설·변경 장비가 무엇인지와 신고대상 의료장비(세분류 294품목)를 확인할 수 있는 경로가 궁금합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214호('20.9.25.) 「의료장비현황 신고대상 및 식별부호화에 관한 기준」일부 개정 - 주요내용 <table border="1" style="margin-left: 20px;"> <thead> <tr> <th colspan="3">개정</th> </tr> <tr> <th colspan="3">[별표 1]</th> </tr> <tr> <th colspan="3">의료장비현황 신고대상</th> </tr> <tr> <th>장비번호</th> <th>장비 품목 대분류</th> <th>장비 품목 소분류</th> </tr> </thead> <tbody> <tr> <td colspan="3" style="text-align: center;">검사 행위 관련 장비 [기능검사장비]</td> </tr> <tr> <td>A22700 변경</td> <td>요역동학검사기</td> <td style="text-align: center;">-</td> </tr> <tr> <td colspan="3" style="text-align: center;">이학요법 행위 관련 장비 [기타이학요법장비]</td> </tr> <tr> <td>C40700 신설</td> <td>증진된 외부 역박동술 치료기(EECP)</td> <td style="text-align: center;">-</td> </tr> <tr> <td colspan="3" style="text-align: center;">처치·수술행위 관련 장비 [처치·수술 장비]</td> </tr> <tr> <td>D21401 변경</td> <td>인공신장기</td> <td>(일반)혈액투석기</td> </tr> <tr> <td>D21402 신설</td> <td>인공신장기</td> <td>(지속적)혈액투석기</td> </tr> </tbody> </table>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행일 : 2020.10.1.부터 ※ 보건의료자원통합신고포털 > 현황신고·변경 > 일반장비 현황신고를 통해 신고 신고대상 의료장비 194종 294품목 확인 경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민포털(http://www.hira.or.kr)>알림>공지사항> '[의료장비]고시 제2020-214호 「의료장비현황 신고대상 및 식별부호화에 관한 기준」일부 개정' 검색>(전문)의료장비현황 신고대상 및 식별부호화에 관한 기준 첨부파일 확인 	개정			[별표 1]			의료장비현황 신고대상			장비번호	장비 품목 대분류	장비 품목 소분류	검사 행위 관련 장비 [기능검사장비]			A22700 변경	요역동학검사기	-	이학요법 행위 관련 장비 [기타이학요법장비]			C40700 신설	증진된 외부 역박동술 치료기(EECP)	-	처치·수술행위 관련 장비 [처치·수술 장비]			D21401 변경	인공신장기	(일반)혈액투석기	D21402 신설	인공신장기	(지속적)혈액투석기
개정																																				
[별표 1]																																				
의료장비현황 신고대상																																				
장비번호	장비 품목 대분류	장비 품목 소분류																																		
검사 행위 관련 장비 [기능검사장비]																																				
A22700 변경	요역동학검사기	-																																		
이학요법 행위 관련 장비 [기타이학요법장비]																																				
C40700 신설	증진된 외부 역박동술 치료기(EECP)	-																																		
처치·수술행위 관련 장비 [처치·수술 장비]																																				
D21401 변경	인공신장기	(일반)혈액투석기																																		
D21402 신설	인공신장기	(지속적)혈액투석기																																		
9		바코드 재발급 신청을 했는데 처리상태가 '생성제외'로 되어있어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신규 등록된 장비는 바코드 재발급 신청하지 않아도 바코드 라벨이 발행되므로 재발급 신청 할 필요 없이 '마이페이지 - 증명서발급 - 장비바코드'에서 온라인출력 또는 우편신청 하시면 됩니다. 																																	

연번	질의종류	문의사항	답변내용
10		의료기관 간에 의료기기 유통이 가능한가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료기기법에 따라 별도의 의료기기 판매업 신고를 하지 않은 의료기관이 타 의료기관으로 의료기기를 유통하는 행위는 금지되어 있음 - 단, 의료기관의 개설자 변경 사유로 의료기관의 양도·양수가 발생하여 의료기관 내의 의료기기가 양도·양수 되는 경우, 두 병원이 동일 법인인 경우에는 가능함.
11	장비유통	해외에서 직접구매한 의료기기를 심평원에 신고하고 사용할 수 있나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료기기법」 제26조(일반행위의 금지) 제1항에서는 '누구든지 허가 또는 인증을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의료기기를 수리·판매·임대·수여 또는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판매·임대·수여 또는 사용할 목적으로 제조·수입·수리·저장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의료기기를 수입하려는 자는 법 제15조(수입업 허가 등)에 따라 수입업 및 수입허가를 득해야 하므로 이를 위반하여 개인이 해외 인터넷 구매 사이트 등을 통해 의료기기를 수입 및 사용하는 행위는 상기 규정에 위반되며, 동 법 제51조(벌칙)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음

2021년

보건의료자원

통합신고포털 매뉴얼

Health Insurance Review & Assessment Service



항목별 신고



1. 특수 운영 현황
2. 차등제
3. 식대





PART 1. 특수 운영 현황

1-1 | 특수운영현황 신고

● 진행절차

- 1)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현황신고·변경' ▶ '특수운영현황'의 '특수운영현황 신고'
- 2) 특수운영현황 신고목록 중 신고할 항목을 선택하여 클릭

● 제출서류

- 1) 공통서류 : 요양기관현황신고서 또는 요양기관현황변경신고서
- 2) 신고내역 별 제출(첨부)서류

구분	제출서류
가정간호사업 실시기관 신고	지정 내부품의서, 평면도, 사업부 사진, 가정방문용 차량사진
가정형 호스피스 전문기관 신고	사무실 내/외부 사진 또는 평면도, 이동차량 및 상담실 사진
소외계층 의료서비스 지원사업	외국인근로자 등 의료지원 사업 시행의료기관 지정서
수면다원검사 실시기관 신고	수면다원검사실 사진
시설(장비) 공동이용기관 신고	공동이용계약서
응급의료기관 신고	응급의료기관 지정서
인공와우실시기관	인공와우시술자의 이과전문경력 및 시술 경험 증빙 서류
자문형 호스피스 시범기관 신고	임종실, 상담실 내/외부 사진, 평면도
장기이식 의료기관 신고	장기이식 의료기관 지정서
참여병의원 (개방병원) 신고	개방병원 이용계약서
촉탁의 및 협약 사회복지시설 신고	협약(계약)서, 사회복지시설신고증
호스피스전문기관 신고	호스피스전문기관 지정서
구순구개열 치과교정 및 악형 치료 실시기관 신고	수련치과병원 지정서 또는 협진체계 구축의 경우 증빙서류
병문안 관리규정 신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통 : 병문안 관리규정(기관장 직인 포함) • 인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료기관 소속 : 근로계약서와 재직증명서 중 1종 및 근무대장(최근 15일 이내) - 위탁계약 : 위탁운영계약서와 근무대장(최근 15일 이내) • 시설 : 설치도면 또는 설치사진(건물별 1개 이상) • 기타 : 면회실 설치 등 인력 및 시설 외의 방법
염색체 마이크로레이검사 실시기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평가결과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유전자검사 정확도평가 인증서, 유전자 검사기관 질평가 인증서 등) - 인증서는 최근 3회 인증받은 내역을 제출
원격협의진찰 실시기관	요양기관현황신고서

● 온라인 발급 따라하기(신고 절차 (예, 호스피스 전문기관 신고))

보건의료자원통합신고포털 | 기호부여유병명 [00000000] | 2016-01-18 17:00:33 | IP 0:0:0:0:0:1 | 로그아웃(54:03) | 서면신고진행조회 | 마이페이지 | 고객센터

서비스안내	개설신고·변경	현황신고·변경	휴·폐업	관계기관정보등록	정보마당	통계	마이페이지
일반현황 요양기관 주<->공동개설자 변경신고 사업자번호·청구SW업체 변경신고	시설현황 시설현황 신고 차등제 운영명상 신고 요양병원 일반입원실 6인이상 병상 신고	인력현황 마진의 신고안내 의(약/조산)사 신고 의호기사 신고 간호인력 신고 정신건강임상심리사 신고 동위원소 취급인력 신고 의료인수 신고 의료인력 건강보험자격 연계조회	장비현황 장비현황 신고목록 전방장치 현황신고 전방장치 인력신고 특수장비 현황·인력 신고 특수장비 인력 신고목록 일반장비 현황신고 바코드 재발급 신청 바코드 재발급 진행현황 조회 의료장비 통합정보 조회	식대 입원환자식 신고 치료식 영양관리로 신고	차등제 일반병동 간호관리로 차등제 신고 중환자실 간호관리로 차등제 신고 요양병원 입원료 차등제 신고 의료급여 정신과 입원료 차등제 신고 호스피스수가 가산제 신고 호스피스도우미 현황조회 감염예방관리로 차등제 신고 집중치료실 입원료 신고 차등제 적용 결과 조회	특수운영현황 특수운영 지정현황 조회 특수운영 현황 조회 전문병원 지정현황 조회 상급종합병원 지정현황 조회 3차 의료급여기관 지정현황 조회 장기이식의료기관 지정현황 조회 검체검사 수탁기관 정보 조회 지역별 검체검사 수탁기관 정보조회 진료 의뢰-회송기관 정보조회 특수운영현황 신고 특수운영현황 신고목록 조회	난임시술 의료기관 평가 기관조사표 신고 시술정보 등록

2

- 1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현황신고·변경' 선택
- 2 '특수운영현황 신고' 항목 중 신고하고자 하는 내역을 클릭



서비스안내 | 개설신고·변경 | 현황신고·변경 | 유·폐업 | 관계기관정보등록 | 정보마당 | 통계 | 마이페이지

현황신고·변경 < 호스피스전문기관 신고

현황신고·변경 > 특수운영현황 > 특수운영현황 신고 > 호스피스전문기관 신고

신고년도: 2019 | 신고구분: 호스피스전문기관 신고

특수운영신고 **3** 신규신고 총: 0 건

접수번호	신고구분	접수일시	처리상태	처리일시	전달사항	처리
<div data-bbox="551 662 1034 862" data-label="Complex-Block"> <p>특수기관등록입업</p> <p>호스피스전문기관 등록</p> <p>요양기관기호: 1110****</p> <p>요양기관명: 서울대학교병원</p> <p>적용일자: 2019-01-01 ~ 9999-12-31</p> <p>지정일자: 2019-01-01 ~ 9999-12-31</p> <p>4 5 임시저장 취소</p> </div>						

문의: 분월 | 담당부서: | 전화번호: | 팩스:

3~5 신규 호스피스 전문기관에 대한 현황신고 시 '신규신고' 클릭 후 팝업창에 지정서상 지정일자 및 적용일자 기입 후 임시저장 클릭

호스피스전문기관 신고

현황신고·변경 > 특수운영현황 > 특수운영현황 신고 > 호스피스전문기관 신고 - 상세타이틀

호스피스전문기관 현황 **6** 최종제출

전달사항 등록

우편발송여부: 팩스 우편 방문 파일첨부

7 + 파일추가

파일명	파일용량
호스피스 전문기관 지정서.hwp	8.5 KB

전달사항: test

작성자 정보등록

8 신고담당자: 홍길동 | 전화번호: 010-2222-2222

9 최종제출

6~8 최종제출 탭 클릭하여 파일추가 후, '호스피스 전문기관 지정서'를 첨부하고 신고담당자 정보 입력

9 '최종 제출' 클릭

1-2 | 특수운영현황 신고 관련 자주하는 질문(FAQ)

● 특수기관

연번	질의종류	문의사항	답변내용
1	공동이용 기관	공동이용기관(시설, 장비) 포털 신고 시 소급적용이 가능한가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급적용이 불가하며, 공동이용을 신고하는 날부터 적용이 가능합니다. <p>[참고] 보건복지부 고시 제2008-5호(2008.1.24.)</p> <p>* (생략) 동 시설·장비 등을 공동으로 이용하고자 하는 요양기관은 공동이용기관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제출한 후 공동이용하여야 하며, 해당 항목의 요양급여 비용은 실제 환자를 진료하고 있는 요양기관에서 청구하여야 함.</p>
2	환자안전 활동	신설기관 또는 입원환자 안전관리료를 최초 청구하는 기관은 환자안전활동 관련 자료를 어떻게 제출해야하나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당년도 환자안전위원회 연간 운영 계획을 최초 수가 청구 전까지 의료기관평가인증원 환자안전 보고학습시스템을 통해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 해당년도 말까지 환자안전위원회 연간 운영계획 및 활동 증빙서류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3	장기이식 의료기관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기이식의료기관 지정은 받았습니니다. 심평원에도 신고를 해야 하나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건복지부의 지정을 받은 후 심사평가원 보건 의료자원통합신고포털을 통해 지정받은 내용을 신고하여야 합니다. 또, 지정이 취소된 경우에도 동일하게 신고가 필요합니다. - 신고방법 : 보건의료자원통합신고포털 > 현황 변경신고 > 특수운영현황신고 > 장기이식의료 기관 신고(해당 화면 우측 상단 도움말 버튼 클릭 시 신고방법 조회 가능)
4	참여병 의원	개방병원으로 지정받은 후 참여병의원 신고는 누가 해야되나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방병원에서 참여병의원 신고를 진행해야 하며, 소급적용이 불가합니다. - 신고방법 : 보건의료자원통합신고포털 > 현황 변경신고 > 특수운영현황신고 > 참여병의원 신고 (해당 화면 우측 상단 도움말 버튼 클릭 시 신고 방법 조회 가능)



연번	질의종류	문의사항	답변내용
5	원격협의진찰 실시기관	원격협의진찰의 시작, 종료일자는 언제로 입력하나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원격협의진찰 수가는 2020.7.1.신설수가로, 시작 일자를 2020-07-01로 입력 후 종료일은 9999-12-31로 입력하면 됩니다.
6	병문안 관리규정 신고	근무일자는 어떤 내용이 포함되어야 하나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병문안 관리인력으로 신고된 인력의 근무내용이 일지에서 확인되어야하며, 신규 신고인력이 모두 근무일지에서 확인되어야 합니다.
7	환자안전 관리료	요양병원 입원환자 안전관리료를 산정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요양병원 입원환자안전관리료는 '환자안전법'제11조, 제12조를 준수하고 '의료법' 제58조, 제58조의3에 따라 '인증 또는 '조건부인증 등급을 받은 200병상 이상 요양병원을 대상으로 함. 산정기준 : 환자안전 전담인력과 환자 안전위원회 운영기관, 의료기관 평가 인증 현황이 우리원에 등록되어 있고, 병상수 대비 전담인력 수가 아래의 기준을 충족해야 산정 가능함. 또한, 병문안관리규정 기준에 맞게 보건 의료자원 통합신고포털 상 신고되어 있어야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병상수 대비 전담인력 수 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500병상 이상 종합병원급 : 2명 이상 *100병상 이상~500병상 미만 종합병원급 : 1명 이상 *200병상 이상 병원급 : 1명 이상 ※ 환자안전 전담인력 및 위원회 운영현황, 의료기관 평가인증결과는 인증원으로 신고, 인증원에서 심평원으로 통보함. • 환자안전전담인력 신고 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건 의료자원통합신고포털>현황신고·변경>인력>의(약/조산)사 신고 또는 간호 인력신고 ※ 근무병동 생성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건 의료자원통합신고포털>현황신고·변경>시설 현황>차등제운영병상현황 신고>신규병동 클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병동구분 : 기타 / 적용일자: 전담인력의 최초배치일 · 병동명 : 환자안전전담 ※ 기본정보 입력시 유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근무병동은 기타/환자안전전담으로 입력 ※ 환자안전 전담인력은 차등제와 중복 산정할 수 없음 • 시행시기 : '19.11.1. <p>(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183호, 2019.08.22.)</p>



PART 2. 차등제

2-1 | 차등제 신고

● 알아두기

- 차등제 신고는 요양기관이 기 신고한 인력·시설·장비 현황에 의하여 자동 산정되므로 일부항목 (환자 수, 시설·장비현황) 입력을 제외하고 별도 신고사항 없음
 - 환자 수 : 「(일부) 일반병동」, 「요양병원」, 「의료급여 정신건강의학과」, 「호스피스수가 가산제」, 「입원전담전문의 관리료」
 - 시설·장비현황 : 「중환자실」, 「호스피스수가 가산제」, 「집중치료실 입원료」, 「감염·예방관리료」, 「회송료」, 「수술실 환자안전 관리료」
- 사전 확인사항
 - 차등제 등급 산정과 관련된 해당 분기의 인력·시설·장비에 대한 누락 신고 여부
 - ※ 누락 신고가 있을 경우 차등제 신고에 앞서 현황 신고

● 진행절차

- 1)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현황신고·변경' ▶ '차등제' ▶ 차등제 항목 중 신고하고자 하는 차등제 클릭
- 2) 차등제별 신고화면에서 차등제 등급, 인력·시설·장비 신고내역 확인 후 최종 제출
 - 「환자 수」, 「시설·장비현황」입력이 필요한 차등제는 해당 사항 입력



● 온라인 신고 따라하기

보건의료자원통합신고포털
 서울대학교병원 [11100079]
마지막 접속시간 2016-01-18 17:00:33
00:00:00:00:00
로그아웃 (56 : 18)

서비스안내
개실신고·변경 (1)
현황신고·변경
휴게입
코로나관련신고
관계기관정보등록
정보마당
등계
마이페이지

일반현황

요양기관 주<->공동계열자 변경신고
사업자번호청구SW접제 변경신고

식대

입원환자식 신고
치료실 영양관리료 신고

차등제

일반병동 간호관리료 차등제 신고
중환자실 간호관리료 차등제 신고
요양병원 입원료 차등제 신고
의료급여 정신과 입원료 차등제 신고
호스피스수가 가산제 신고
호스피스도우미 현황조회
감염예방관리료 차등제 신고
수술실 환자안전관리료 차등제 신고
집중치료실 입원료 신고
회송료 차등제 신고
간호사 처우개선 모니터링
입원환자 전문전문의 관리료 신고
차등제 적용 결과조회

시설현황

시설현황 신고
병원명 및 병동 현황신고
요양병원 일반입원실 8인이상 병상 신고

인력현황

의료인력 인원수 신고
대간비 신고안내
의(약)조산사 신고
의료기사 등 신고
간호인력 신고
영양사/조리사 신고
정신건강임상심리사 신고
통위원소 취급인력 신고
의료인력 건강보험자격 연계조회

특수운영현황

특수운영 지정현황 조회
특수운영 위험 조회
전문병원 지정현황 조회
상급종합병원 지정현황 조회
3차 의료급여기관 지정현황 조회
장기이식의료기관 지정현황 조회
검체검사 수탁기관 정보조회
지역별 검체검사 수탁기관 정보조회
진료 위탁·회송기관 정보조회
코로나19 중증환자 전달지속보상 정보조회
특수운영현황 신고
특수운영현황 신고목록
가정간호사업 실시간 신고
등급의료기관 신고
총탁의 및 협탁 사회복지사실 신고
시설 공동이용기관 신고
장비 공동이용기관 신고
침여행의원 신고(예방병원)
소외계층 의료서비스 지원사업 기관 신고
경기이식의료기관 신고

장비현황

장비현황 신고목록
전환장치 인력신고
전환장치 현황신고
특수장비 현황인력 신고
특수장비 인력 신고목록
일반장비 현황신고
바코드 재발급 신청
바코드 재발급 진행현황 조회
의료장비 종합정보 조회

난임시술 의료기관 평가

기관조사표 작성
내년시술기록지 검토 및 조회
난임마당

- ①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현황신고·변경' 선택
- ② '차등제'항목 중 신고하고자 하는 차등제 클릭

현황신고 · 변경 < 호스피스수가 가산제 신고

- + 일반현황
- + 시설현황
- + 인력현황
- + 장비현황
- + 식대
- 차등제
- 일반병동 간호관리료 차등제 신고
- 중환자실 간호관리료 차등제 신고
- 요양병원 입원료 차등제 신고
- 의료급여 정신과 입원료 차등제 신고
- 호스피스수가 가산제 신고
- 호스피스도우미 현황조회
- 감염예방관리료 차등제 신고
- 집중치료실 입원료 신고
- 차등제 적용 결과 조회
- + 특수운영현황
- + 난임시술 의료기관 평가

현황신고 · 변경 > 차등제 > 호스피스수가 가산제 신고 점검요청 1 도움달

접수분기 2018 ~ 2019 2Q 조회

○ 호스피스수가 가산제 신청현황 신고목록 신규신고 총: 1건

접수번호	요양기호	요양기관명	대상년도 및 분기		접수일시	처리상태	처리일시	처리내역	접수확인
			년도	분기					
2018A22000010	1110****	서울대학교병원	2018	4Q	2018-11-22 13:38:02	보완요청	20181122133940		접수확인 재작성물력

- ③ '신규신고' 클릭

호스피스수가 가산제 신고

현황신고 · 변경 > 차등제 > 호스피스수가 가산제 신고

점검요청 도움말

호스피스수가 가산제 산정대상

년도 2019 분기 2Q 분기시작일자 2019-04-01 호스피스적용시작일자 --

호스피스수가 가산제 산정등급

간호사				사회복지사			
1	등급	0 등급	5	등급	0 등급		
2	환자 수 (3개월 평균)	0 명	6	환자수(3개월 평균)	0 명		
3	간호사 수 (3개월 평균)	0 명	7	사회복지사수(3개월 평균)	0 명		
4	환자 수 대 적용 간호사 수 ② / ③	0 명	8	환자 수 대 사회복지사 수 ⑥ / ⑦	0 명		

환자수현황 의사현황 간호사현황 사회복지사현황 시설·장비현황 최종제출

환자수현황

구분	계	2019년 01월(12/15~01/14)					2019년 02월(01/15~02/14)					2019년 03월(02/15~03/14)				
		건강보험	의료급여	자보	산재	기타	건강보험	의료급여	자보	산재	기타	건강보험	의료급여	자보	산재	기타
입원환자수 (환자별 자원 일수의 합)	0															
적용입원환자수 (3개월평균)		0														

임시저장 목록

4 '환자 수 현황' 및 '시설·장비현황' 입력 후 임시저장

※ '환자 수' 없는 경우 0으로 입력

※ '시설·장비현황' 입력 사항이 없는 차등제는 입력하지 않음



⑤

⑥ 관리자현황 역사현황 간호사현황 사회복지사현황 시설·장비현황 **최종제출**

⑦

전달사항등록 지차등록스번호확인

구비서류 목스 우편 방문 파일첨부

① 첨부서류를 스캔하여 파일 형식으로 올립니다. + 파일추가 × 삭제 ↓ 다운로드

	파일명	파일용량
파일첨부		

① 파일업로드가 모두 끝난 후에 전달사항을 작성하세요.

전달사항

⑦

작성자 정보등록

신고자 +전화번호 없음 처리결과 SMS 수신여부

⑦ 최종제출 목록

- ⑤ '최종제출' 클릭
- ⑥ 전달사항이 있는 경우 전달사항 등록입력 후 최종 제출
※ 차등제 등급, 인력·시설·장비 등 신고내역 확인
- ⑦ 작성자 정보등록 신고자명, 전화번호 필수입력 후 최종 제출

2-2 차등제 관련 자주하는 질문(FAQ)

연번	질의종류	문의사항	답변내용
1	수술실 환자안전관리 차등제	수술실 환자 안전관리로 신고 시, 모든 시설이 있다고 신고하였는데도 불구하고 부대시설 등급이 2등급으로 뜨는데 사유가 있는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1등급 시설기준은 '멸균물품보관'에 대해 '별도 공간'으로만 운영하여야하며, '별도공간'과 '문이 설치된 보관장'을 혼용하는 경우 2등급 또는 3등급 기준에 해당함 (복지부 고시 제 2019-78호, 제2019-80호 관련 질의응답 19번 참고)
2		수술실 환자 안전관리로 신고 시, 시설 및 인력신고를 마친 후 등급신고를 하려는데 인력이 보이지 않습니다. 자동 산출이 안 되는 사유가 무엇인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수술실 환자 안전관리에서 인정하는 인력구분자는 전일제(주40시간), 및 단시간(16~40시간)임. 정규직(주40시간) 등으로 신고되어 있는지 확인하여 인정하는 인력구분자로 변경 신고하여야 함
3		수술실 환자 안전관리와 관련하여, 기존에 수술실이 신고 되어 있는데도 기존 수술실을 폐쇄하고 새로 신고하여야하는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특수' 병동 수술실이 이미 신고 되어 있는 경우 별도 신고 할 필요는 없음.(병상 수 변경이 있는 경우만 변경신고) 다만, '기타' 병동 수술실로 되어있는 경우, '특수' 병동 수술실을 새로 신고하여야 함 병동폐쇄는 최초운영일을 5.1. 이후로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만 해당
4		수술실 환자 안전관리로 등급 산정 시, 허가병상보다 많은 수술실을 운영하는 경우 어떤 병상 수를 기준으로 산정하는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수술실 환자 안전관리의 경우 허가병상과 운영 병상 중 많은쪽이 아닌 '운영병상'만을 기준으로 차등제 등급 산정함 단, 수술실은 허가병상보다 많이 운영할 수 없으므로, 허가받은 수술실보다 많은 수술실을 운영하는 경우 즉시 지자체에 허가 변경신고를 하여야 함
5	일반병동 차등제	입원환자(일반병동) 간호관리로 차등제 미신고시 10% 감산은 언제부터 시행인가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2020년 1월 1일부터 적용이며, 이를 위해서는 2019년 12월 16일부터 20일까지 차등제 신고 기간에 신고를 완료하여야 함
6		정신병원*도 일반병동 차등제 통보서를 제출하여야 하나요? *병원(정신병원),요양병원(정신병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20.1.1.부터 일반병동 차등제 미신고 기관(종합병원 및 병원급 요양기관)에 대하여 10%감산이 있음 (의료취약지역 소재 기관 제외) 이에 따라, 정신병원의 경우에도 일반병동 차등제 신고를 하여야 정신과개방병동 및 정신과폐쇄병동의 건강보험 환자의 입원료가 감산되지 않음 <p>※ 의료급여 환자는 의료급여 정신건강의학과 차등제 등급 적용</p>



PART 3. 식대

3-1 | 식대(입원 환자식 및 치료식 영양관리료 신고)

● 개요

- 입원환자 식대는 요양기관에 입원한 환자에게 의사 처방에 따라 일반식, 치료식, 멸균식 등으로 구분하여 각각 기본식 가격에 식사서비스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를 고려하여 가산금액을 추가하는 방식으로 운영
- 「입원환자식 신고」는 '운영현황'과 '인력현황'을 각각 신고 후 최종 제출
- 「치료식 영양관리료」는 신고화면에서 '환자 수' 입력 후 신고내역 확인 후 최종 제출

3-1-1 | 입원환자식 신고

● 진행절차

- 1)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현황신고·변경' ▶ '식대' ▶ '입원환자식 신고' 클릭
- 2) 운영현황 작성 후 최종 제출

● 온라인 신고 따라하기(급식시설 신고)

보건의료자원통합신고포털 서울대학교병원 [11100079] 2016-01-18 17:00:33 0:0:0:0:0:0:1 로그아웃(57:49) 서면신고진행조회 마이페이지 고객센터

서비스안내 개설신고·변경 **1 현황신고·변경** 휴·폐업 관계기관정보등록 정보마당 통계 마이페이지 >

<p>일반현황 요양기관 주(-) 공동개설지 변경신고 사업자번호·청구SW업종 변경신고</p>	<p>시설현황 시설현황 신고 차등제 운영명상 신고 요양병원 일반입원실 6인이상 명상 신고</p>	<p>인력현황 대진의 신고안내 의(약/조산)사 신고 의료기사 신고 간호인력 신고 정신건강임상심리사 신고 동위원소 취급인력 신고 의료인수 신고 의료인력 건강보험자격 연계 조회</p>	<p>장비현황 장비현황 신고목록 진방장치 현황신고 진방장치 인력신고 특수장비 현황·인력 신고 특수장비 인력 신고목록 일반장비 현황신고 바코드 개발급 신청 바코드 개발급 진행현황 조회 의료장비 종합정보 조회</p>
<p>신대 2 입원환자식 신고 치료식 영양관리료 신고</p>	<p>차등제 일반병동 간호관리료 차등제 신고 중환자실 간호관리료 차등제 신고 요양병원 입원료 차등제 신고 의료급여 장신과 입원료 차등제 신고 호스피스수가 가산제 신고 호스피스도우미 현황조회 감염예방관리료 차등제 신고 집중치료실 입원료 신고 차등제 적용 결과 조회</p>	<p>특수운영현황 특수운영 지정현황 조회 특수운영 현황 조회 전문병원 지정현황 조회 상급종합병원 지정현황 조회 3차 의료급여기관 지정현황 조회 장기이식의료기관 지정현황 조회 검체검사 수탁기관 정보 조회 지역별 검체검사 수탁기관 정보조회 진료 의료-회송기관 정보조회 특수운영현황 신고 특수운영현황 신고목록 조회 응급의료기관 신고 축택의 및 혈액 사회복지시설 신고 시설 공동이용기관 신고 장비 공동이용기관 신고 가정간호사업 실시기관 신고 참여병의원 신고(개발병원) 소외계층 의료서비스 지원사업 기관 신고</p>	<p>난임시술 의료기관 평가 기관조사표 신고 시술정보 등록</p>

- 1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현황신고·변경' 선택
- 2 '입원환자식 신고' 클릭



현황신고 · 변경 < 입원환자식 신고

현황신고 · 변경 > 식대 > 입원환자식 신고

접수일자 2018-10-21 ~ 2019-04-22

신규신고

신고 목록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상태	처리일시	접수확인
------	------	------	------	------

신고 기간 선택

① 신고 할 기간을 ④하세요

2015.09.30 이전 2015.10.01 이후

① 2015년 10월 이후의 변경 사항은 필히 2015.10.01 이후를 선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③ '신규신고' 클릭
- ④ 입원환자식 신고 기간 선택 팝업창에서 '2015.10.01 이후' 클릭

현황신고 · 변경

- + 일반현황
- + 시설현황
- + 인력현황
- + 장비현황
- 식대
- 입원환자식 신고
- 치료식 영양관리로 신고
- + 차등제
- + 특수운영현황
- + 난임시술 의료기관 평가

입원환자식 신고 X

현황신고 > 변경 > 식대 > 입원환자식 신고 - 입원환자식 신고(2015.10.01이후) 점검요청 도움말

운영현황 인력 사전 점검 업무안내GUIDE 목록

시설명	운영형태	가산적용월	영양사가산	조리사가산	적용가산	위탁운영		운영종료
						업체명	위탁형태	
급식시설1	직영	2019년 04월	Y	Y	Y		.	더보기

급식시설추가

구분	시설명	운영형태		치료식 최초제공일자	위탁운영			인력신고건수	신고취소
		형태명	적용일자		업체명	위탁형태	적용일자		
데이터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5 운영현황 인력현황 최종제출 ① 급식시설1의 변경신고 중입니다.

① 아래 사항을 입력한 경우 반드시 [임시저장]버튼을 클릭하세요. 저장하지 않은 데이터는 최종제출 할 수 없습니다.
 ① 신규개설 요양기관이거나, 재개설 요양기관인 경우에는 아래 사항은 필수입력 사항입니다.
 ① 신규개설 요양기관일 경우 운영현황은 최초식사제공일을 기재합니다.

6 **위탁업체정보**

구분	변경전			변경후		
운영형태	직영	적용일자	2006-05-31	직영 <input type="checkbox"/> 위탁 <input checked="" type="checkbox"/>	적용일자	-- --

7 **운영형태**

구분	변경전	변경후
위탁형태		선택 <input type="checkbox"/>
업체명		<input type="text"/>
사업자번호	-- --	<input type="text"/> - <input type="text"/> - <input type="text"/>
대표자		<input type="text"/>
전화번호		<input type="text"/> ① 전화번호 (예) 000-000-0000
적용일자	-- --	-- -- <input type="text"/>

7 임시저장 목록

(5~7번은 최초 신고 또는 운영형태가 변경된 기관에 한함)

- 5** '운영현황' 클릭
- 6** 운영형태 및 위탁업체정보 입력
- 7** 내용 확인 후 임시 저장

PART 3. 식대 121



현황신고변경 < 입학원자식 신고

현황신고변경 > ⑧ 입학원자식 신고 - 입학원자식 신고(2025.10.01후) 점검모형 1 도움말

문영원형 | 입학원형 | **최종제출** ⑨ 급회사설1의 변경신고 중입니다.

⑨ 전달사항 등록 ⑩ 신원정보(소보)확인

유관합송여부 특수 우편 방문 피랍심부

⑩ 첨부서류를 스캔하여 파일 형식으로 올립니다. + 파일추가 x 삭제 < 다음으로

파일명	파일 용량

⑩ 파일업로드가 모두 끝난 후에 전달사항을 작성하세요.

⑨ 작성자 정보등록

+신고담당자 +권한번호 선택 - 처리결과 SMS 수신여부

e-mail @ 신학

⑩ 구비서류안내

⑩ 필요시 면허증 사본 제출, 유영행방가 위탁인 경우 위탁계약서, 위탁업체 사업자등록증, 고령급식소설치운영신고증

⑩ **최종제출** 목록

- ⑧ '최종제출' 탭 클릭, '전달사항·첨부서류' 등록(불필요시 생략가능)
- ⑨ '작성자 정보 등록' 부분 작성
- ⑩ '최종제출' 버튼 클릭하여 제출완료

● 온라인 신고 따라하기(영양사/조리사 신고)

서비스안내	개설신고·변경	① 현황신고·변경	휴·폐업	코로나관련신고	관계기관정보등록	정보마당	통계	마이페이지
일반현황 요양기관 주(←) 공동개설자 변경신고 사업자번호·청구SW업체 변경신고	시설현황 시설현황 신고 팀운영 및 병동 현황신고 요양병원 일반입원실 6인이상 병상 신고	인력현황 의료인력 인원수 신고 대건의 신고안내 의(약/조선)사 신고 의료기사 신고 ② 간호인력 신고 영양사/조리사 신고 정신건강임상심리사 신고 동위원소 취급인력 신고 의료인력 건강보험자격 연계조회	장비현황 장비현황 신고목록 건강장치 인력신고 건강장치 현황신고 특수장비 현황인력 신고 특수장비 인력 신고목록 일반장비 현황신고 바코드 재발급 신청 바코드 재발급 진행현황 조회 의료장비 종합정보 조회					
식대 입원환자식 신고 치료식 영양관리료 신고	차동제 일반병동 간호관리료 차동제 신고 중환자실 간호관리료 차동제 신고 요양병원 입원료 차동제 신고 의료급여 정신과 입원료 차동제 신고 호스피스수가 가산제 신고 호스피스도우미 현황조회 감염예방관리료 차동제 신고 수술실 환자안전관리료 차동제 신고 집중치료실 입원료 신고 차동제 적용 결과조회 간호사 처우개선(TEST)	특수운영현황 특수운영 지정현황 조회 특수운영 현황 조회 전문병원 지정현황 조회 상급종합병원 지정현황 조회 3차 의료급여기관 지정현황 조회 장기이식의료기관 지정현황 조회 검체검사 수탁기관 정보조회 지역별 검체검사 수탁기관 정보조회 진료 의뢰·회송기관 정보조회 특수운영현황 신고 특수운영현황 신고목록 응급의료기관 신고 촉탁의 및 협약 사회복지시설 신고 시설 공동이용기관 신고 장비 공동이용기관 신고 가정간호사업 실시기관 신고	난임시술 의료기관 평가 기관조사표 작성 난임시술기록지 조회 난임마당					

- 1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현황신고·변경' 선택
- 2 '영양사/조리사 신고' 클릭



- 3 '신규신고' 클릭
- 4 '식대(입원환자식/치료식)적용 인력신고' 클릭
 - ※ 식대 적용 인력의 경우 '식대(입원환자식/치료식)적용 인력신고' 클릭
 - 식대 미적용 혹은 1형 당뇨병 재택의료팀 신고의 경우 '식대 미적용 인력신고' 클릭



현황신고 변경 > 인력현황 > 영양사/조리사 신고

영양사/조리사 현황 최종제출

면허종별 -- 면허번호 의료인성명 회사자포함 조회

① 목록장신이 되지 않는 경우 새로고침을 눌러주세요.

○ 현재 인력현황

순번	면허종별	세부종별	근무형태	성명	주민등록번호	면허번호	면허취득일자	입사일자	최종근무일자	유가			대체	인력이력조회	인력현황변경
										구분	시작일자	종료일자			
1	영양사	일반영양사	전일제(40시간)	김영숙	880128-2*****	113783	2009-03-10	2018-11-01					기본이력	변경	회사신고
2		일반영양사	전일제(40시간)	권현숙	303008-2*****	144176	2016-03-08	2019-01-01					기본이력	변경	회사신고
3		일반영양사	전일제(40시간)	김문섭	871109-2*****	118890	2010-03-10	2014-02-10					기본이력	변경	회사신고
4		일반영양사	전일제(40시간)	최상선	891004-2*****	136603	2014-03-21	2018-07-09					기본이력	변경	회사신고

② 신고대상목록

순번	구분	면허종별	세부종별	근무형태	성명	주민등록번호	면허번호	면허취득일자	입사일자	변경적용일자	최종근무일자	병동명	전담여부	입력정보 변경

⑤ '영양사/조리사 현황' 클릭

⑥ 기존 영양사·조리사 인력 수정시 '변경'버튼 클릭하여 변경사항 입력
새로운 영양사·조리사 인력 신고시 '신규입력' 버튼 클릭하여 내용 입력

현황신고 변경 > 인력현황 > 영양사/조리사 신고

영양사/조리사 현황 최종제출

면허종별 -- 면허번호 의료인성명 회사자포함 조회

① 목록장신이 되지 않는 경우 새로고침을 눌러주세요.

○ 현재 인력현황

순번	면허종별	세부종별	근무형태	성명	주민등록번호	면허번호	면허취득일자	입사일자	최종근무일자	유가			대체	인력이력조회	인력현황변경
										구분	시작일자	종료일자			
1	영양사	일반영양사	전일제(40시간)	김영숙	880128-2*****	113783	2009-03-10	2018-11-01					기본이력	변경	회사신고
2		일반영양사	전일제(40시간)	권현숙	303008-2*****	144176	2016-03-08	2019-01-01					기본이력	변경	회사신고
3		일반영양사	전일제(40시간)	김문섭	871109-2*****	118890	2010-03-10	2014-02-10					기본이력	변경	회사신고
4		일반영양사	전일제(40시간)	최상선	891004-2*****	136603	2014-03-21	2018-07-09					기본이력	변경	회사신고

② 신고대상목록

순번	구분	면허종별	세부종별	근무형태	성명	주민등록번호	면허번호	면허취득일자	입사일자	변경적용일자	최종근무일자	병동명	전담여부	입력정보 변경

⑦ '신고대상목록' 부분에 접수하고자 하는 현황이 정확하게 입력되었는지 확인

영양사/조리사 신고

현황신고 변경 > 입력현황 > 영양사/조리사 신고

영양사/조리사 현황 최종제출

의료인력 인원수 현황 신고 바로가기

신용인증 스캔/확인

전달사항 등록 * 담당자 FaxNo :

주관발송여부 팩스 우편 방문 파일첨부

① 첨부서류를 스캔하여 파일 형식으로 올립니다.

파일첨부

파일명	파일용량

+ 파일추가 × 삭제 ↓ 다운로드

① 파일업로드가 모두 끝난 후에 전달사항을 작성하세요.

전달사항

작성자 정보등록

* 신고담당자 * 전화번호 선택 - - -

구비서류안내

- ① 처음으로 선택 메뉴를 제공 시 식단표를 제출하여 주십시오.
- ① 조리사인 경우에는 면허증 사본을 첨부하여 주십시오.
- ① 필요시 해당 면허증 사본, 3개월 이상 고용계약서, 선택식단표, 위탁업체 계약서, 집단급식소 설치 신고등등

최종제출 목록

- 8 '최종제출' 탭 클릭, '전달사항·첨부서류' 등록(불필요시 생략가능)
 '작성자 정보 등록' 부분 작성 후 '최종제출' 버튼 클릭하여 제출완료



3-1-2 | 치료식 영양관리료

● 진행절차

- 1)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현황신고·변경' ▶ '식대' ▶ '치료식 영양관리료' 클릭
- 2) 환자 수 현황 입력 및 영양사 현황 확인 후 최종 제출

● 온라인 신고 따라하기

보건의료자원통합신고포털
서울대학교병원 [11100079]
2016-01-18 17:00:33
0:0:0:0:0:0:1
로그아웃 (57 : 49)
서면신고진행조회
마이페이지
고객센터

서비스안내
개설신고·변경
1 현황신고·변경
휴·폐업
관계기관정보등록
정보마당
통계
마이페이지
➤

<p>일반현황 요양기관 주<->공동개설지 변경신고 사업자번호·청구SW업제 변경신고</p> <p>식대 입원환자식 신고 2 치료식 영양관리료 신고</p>	<p>시설현황 시설현황 신고 차등제 운영명상 신고 요양병원 일반입원실 6인이상 명상 신고</p> <p>차등제 일반병동 간호관리료 차등제 신고 중환자실 간호관리료 차등제 신고 요양병원 입원료 차등제 신고 의료급여 정신과 입원료 차등제 신고 호스피스수가 가산제 신고 호스피스도우미 현황조회 감염예방관리료 차등제 신고 집중치료실 입원료 신고 차등제 적용 결과 조회</p>	<p>인력현황 대진의 신고안내 의(약/조선)사 신고 의료기사 신고 간호인력 신고 정신건강임상심리사 신고 동위원소 취급인력 신고 의료인수 신고 의료인력 건강보험자격 연계 조회</p> <p>특수운영현황 특수운영 지정현황 조회 특수운영 현황 조회 전문병원 지정현황 조회 상급종합병원 지정현황 조회 3차 의료급여기관 지정현황 조회 장기이식의료기관 지정현황 조회 급여검사 수탁기관 정보 조회 지역별 급여검사 수탁기관 정보조회 진료 의회·회송기관 정보조회 특수운영현황 신고 특수운영현황 신고목록 조회 응급의료기관 신고 축택의 및 혈액 사회복지시설 신고 시설 공동이용기관 신고 장비 공동이용기관 신고 가정간호사업 실시기관 신고 참여병의원 신고(개방병원) 소외계층 의료서비스 지원사업 기관 신고</p>	<p>장비현황 장비현황 신고목록 진방장치 현황신고 진방장치 인력신고 특수장비 현황·인력 신고 특수장비 인력 신고목록 일반장비 현황신고 바코드 개발금 신청 바코드 개발금 진행현황 조회 의료장비 통합정보 조회</p> <p>난임시술 의료기관 평가 기관조사표 신고 시술정보 등록</p>
--	--	--	---

- 1)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현황신고·변경' 선택
- 2) '치료식 영양관리료 신고' 클릭

현황신고 · 변경 < 치료식 영양관리로 신고

현황신고 · 변경 > 식대 > 치료식 영양관리로 신고

점수분기 2018 20 ~ 2019 20

3 '신규신고' 클릭

신규신고 총: 0건

점수번호	오양기관 기호	오양기관명	대상년도 및 분기		접수일시	처리상태	처리일시	처리내역	접수확인
			년도	분기					
데이터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안내사항

① 신고유서

- 2015년 8월 15일 이전 치료식 운영 기관: 신규신고 → 확인 → 신고 진행
- 2015년 8월 15일 이후 치료식 운영 기관: 특수운영현황 → 특수운영현황 신고 → 치료식 최초제공일 신고 후에 진행해주시요.

3 '신규신고' 클릭

현황신고 · 변경 < 치료식 영양관리로 신고

현황신고 · 변경 > 식대 > 치료식 영양관리로 신고

① 치료식 영양관리로 신청대상

년도 2019 분기 20 분기시작일자 2019-04-01

② 치료식 영양관리로 신청대상

치료식 영양관리로 적용 구분 (1.대상, 2.비대상)	건강보험		자동차보험		치료식 최초제공일자
	① - 1	건강보험	① - 2	자동차보험	
① 치료식(월급식 포함) 환자수 (3개월 합계)	0	0	0	0	- 명
② 영양사수 (3개월 재직일수의 합계)	① 근무일수가 전일제인 경우 1일, 단시간제 경우 0.6일로 계산됩니다.				0 명
③ 영양사 1인당 1일 치료식(월급식 포함) 환자수	건강보험 (① - 1 / ②)		자동차보험 (① - 2 / ②)		0 명

4 환자 수 현황

영양사수 현황 최종제출

④ 환자수현황

구분	계		2019년 11월(12/15-01/14)		2019년 02월(01/15-02/14)		2019년 03월(02/15-03/14)	
	건강보험	자동차보험	건강보험	자동차보험	건강보험	자동차보험	건강보험	자동차보험
치료식(월급식 포함) 환자수								

4 임시저장

4 '환자 수 현황' 입력 후 '임시저장'



현황신고 · 변경 < 치료식 영양관리료 신고

현황신고 · 변경 > 식대 > 치료식 영양관리료 신고

점검요청 도움말

○ 치료식 영양관리료 산정대상

년도 2019 분기 2Q 분기시작일자 2019-04-01

○ 치료식 영양관리료 산정대상

치료식 영양관리료 적용 구분 (1.대상, 2.비대상)	건강보험	자동차보험	치료식 최초 제공일자
① 치료식(말근식 포함) 환자수 (3개월 합계)	①-1 건강보험	①-2 자동차보험	- 명
② 영양사수 (3개월 재직일수의 합계)	① 근무형태가 전일제인 경우 1일, 단시간일 경우 0.8일로 계산합니다.		
③ 영양사 1인당 1일 치료식(말근식 포함) 환자수	건강보험 (①-1 / ②)		자동차보험 (①-2 / ②)

환자 수 현황 영양사수 현황 최종제출

필요인력현황

순번	면허종별	성명	주민등록번호	세부종별	근무형태	입사일자 (적용시작일자)	최종근무일자 (적용종료일자)	유가	재직일수
역량저장 총 : 2건									

5 '영양사 수 현황' 탭 클릭 후 실제 영양사 현황과 일치하는지 확인

※ 실제 현황과 다른 경우 '영양사/조리사 신고' 메뉴에서 영양사 신고 완료 후 치료식 영양관리료 신고

현황신고 · 변경 < 치료식 영양관리료 신고

현황신고 · 변경 > 식대 > 치료식 영양관리료 신고

점검요청 도움말

○ 치료식 영양관리료 산정대상

년도 2019 분기 2Q 분기시작일자 2019-04-01

○ 치료식 영양관리료 산정대상

치료식 영양관리료 적용 구분 (1.대상, 2.비대상)	건강보험	자동차보험	치료식 최초 제공일자
① 치료식(말근식 포함) 환자수 (3개월 합계)	①-1 건강보험	①-2 자동차보험	- 명
② 영양사수 (3개월 재직일수의 합계)	① 근무형태가 전일제인 경우 1일, 단시간일 경우 0.8일로 계산합니다.		
③ 영양사 1인당 1일 치료식(말근식 포함) 환자수	건강보험 (①-1 / ②)		자동차보험 (①-2 / ②)

환자 수 현황 영양사수 현황 최종제출

○ 전달사항등록

구비서류 복사 우편 방문 파일첨부

① 첨부서류를 스캔하여 파일명을 "요양기호_병원내용"으로 제출합니다.

파일명 파일용량

① 파일업로드가 모두 끝난 후에 전달사항을 작성하세요.

전달사항

○ 작성자 정보등록

신고자 =전화번호 처리결과 SMS 수신여부

e-mail @ 선택

최종제출

6 '최종제출' 클릭 후 전달사항 등록

※ 전달사항이 없는 경우 생략 가능

7 치료식 영양관리료 적용/미적용 여부 확인 후 최종 제출



기타



1. 신고일원화 민원사무별 업무처리 절차 및 방법
2. 관련 법령





V. 기타



PART 1. 신고일원화 민원사무별 업무처리 절차 및 방법

연번	구분	신고방법	처리절차	유의사항	
1	의료기관 개설·변경 신고(허가)	개설신고(허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자체) 민원접수 및 처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전검토 및 민원처리 (신고·허가대장에 반영) - 심평원 통보(심평원 신고로 간주) - 심평원 수정통보 요청시 확인 및 수정통보(새울 시스템 → 보건의료자원 통합신고 → 심평원 연계 이상내역) • (심평원) 신고접수 및 처리 (요양기관기호 임시 부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자체 통보사항 확인 후 필요시 수정통보 요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원스톱신고인 경우, 요양기관 현황 신고 시 인력·시설 상세 신고 생략 가능 - 다만 지자체가 수정하여 허가시, 심평원에 다시 상세 신고 필요 	
		요양기관현황신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온라인) 통합신고포털 로그인(본인 인증) → 개설 → 지급계좌 신고 • (서면) 관할 지역 심평원으로 신고서 제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4호 서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심평원) 신고접수 및 처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고처리(요양기관기호 확정), 요양기관 통보(공문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고 완료 후 요양급여비용 청구, 건보공단 요양기관 인증서 발급 신청, 대진의 및 의료인 수 변경신고 가능
	변경 신고(허가)	의료기관 현황, 개설자현황, 시설현황①, 시설현황②, 진료과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온라인) 통합신고포털 로그인(본인 인증 또는 요양기관인증서) → 현황 신고·변경 → 기본/진료과목, 시설 - 개설신고증명서(허가증) 제출 생략 • (서면) 관할 시·도(보건소)로 신고 (허가신청)서 제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료법 시행규칙 별지 제14호 또는 제16호 또는 제20호서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자체) 민원접수 및 처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전검토 및 민원처리 (신고·허가대장에 반영) - 심평원 통보(심평원 신고로 간주) - 기타 변경사항인 경우, 서면 신고건은 직권수정(온라인 신고건은 사전 검토 승인시 대장에 반영) - 심평원 수정통보 요청시 확인 및 수정통보 • (심평원) 신고접수 및 처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자체 통보사항 확인 후 필요시 수정통보 요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원스톱신고할 경우, 시설현황 ① 관련 국민건강보험법 추가 신고 불필요(입원병상 상세(1~6인실, 외국인전용, 음압/비음압), 의료법 외 특수진료실(분만실, 인공신장실 등)) - 지자체 수정시 심평원 수정 신고 필요
		요양기관현황 변경신고(시설 현황① 관련 국민건강보험법 추가사항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온라인) 통합신고포털 로그인(본인 인증 또는 요양기관인증서) → 현황신고·변경 → 기본/진료과목, 시설, 인력, 식대·차등제 • (서면) 관할 지역 심평원으로 신고서 제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7호서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심평원) 신고접수 및 처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개설자 ↔ 공동개설자 변경은 지자체 신고사항이 아니므로 심평원에서 신고처리하고, 지자체 대장에 자동 반영됨 - 심평원은 새 요양기관 기호에 지자체 개설허가 정보 자동 이관(의료 기관현황, 개설자 현황, 진료과목, 시설현황)

연번	구분	신고방법	처리절차	유의사항	
2	의원급 의료기관 대진의 신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심평원) 신고접수 및 처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고처리 후 지자체 통보 (지자체 신고로 간주) - 지자체 수정통보 요청시 확인 및 수정통보 (지자체) 통보내역 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원급 의료기관 대진의 및 의료인 수 변경(신고)은 시스템 자동반영 - 병원급 의료기관 의료인 수 변경(허가)은 심평원 통보 내역 확인 후 별도 적용 (새울시스템 → 보건의료 자원통합신고 → 심평원 인력변경 신고내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민건강보험법 제43조에 따른 신고기한을 적용함에 따라 의료법 제92조에 따른 과태료는 미부과 	
3	의료기관 의료인 수 변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온라인) 통합신고포털 로그인(본인 인증 또는 요양기관인증서) → 현황신고·변경 → 인력 (서면) 관할 지역 심평원으로 신고서 제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 17호 서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상세신고내역을 전속기준으로 재산정·통보 :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약사, 한약사, 조산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사회복지사(기타 인력은 신고 인원수로 통보) 국민건강보험법 제43조에 따른 신고기한을 적용함에 따라 의료법 제92조에 따른 과태료는 미부과 	
4	약국 개설 등록신청	개설등록	<ul style="list-style-type: none"> (온라인) 통합신고포털 로그인 (본인 인증) → 개설 → 약국 개설 (서면) 관할 보건소로 등록신청서 제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약사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 서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자체) 민원접수 및 처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전검토 및 민원처리(등록 대장에 반영) - 심평원 통보(심평원 신고로 간주) - 심평원 수정통보 요청시 확인 및 수정통보(새울시스템 → 보건의료자원 통합신고 → 심평원 연계 이상내역) (심평원) 신고접수 및 처리 (요양기관기호 임시 부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자체 통보사항 확인 후 필요시 수정통보 요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원스톱신고할 경우, 요양기관 현황 신고시 인력 상세신고 생략 가능 - 다만 지자체가 수정하여 허가 시, 심평원에 다시 상세신고 필요
		요양기관현황신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온라인) 통합신고포털 로그인 (본인 인증) → 개설 → 지급계좌 신고 (서면) 관할 지역 심평원으로 신고서 제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5호서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심평원) 신고접수 및 처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고처리(요양기관기호 확정) 후 요양기관 통보(공문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신고 완료 후 요양급여비용 청구, 건보공단 요양기관 인증서 발급 신청 가능
5	약국 개설 등록사항 변경신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온라인) 통합신고포털 로그인 (본인 인증 또는 요양기관인증서) → 현황신고·변경 → 기본/진료과목 (기본현황변경 신고(약국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설등록증명서 제출 생략 (서면) 관할 보건소로 변경신청서 제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자체) 민원접수 및 처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전검토 및 민원처리(등록 대장에 반영) - 심평원 통보(심평원 신고로 간주) - 기타 변경사항인 경우, 서면 신청건은 직권수정(온라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개설자 ↔ 공동개설자 변경은 지자체 신청사항이 아니므로 심평원에서 신고처리 하고, 지자체 대장에 자동 반영됨 - 심평원은 새 요양기관 기호에 지자체 개설등록 정보 자동 	



연번	구분	신고방법	처리절차	유의사항	
		- 약사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신고건은 사전검토 승인시 대장에 반영) - 심평원 수정통보 요청시 확인 및 수정통보 • (심평원) 신고접수 및 처리 - 지자체 통보사항 확인 후 필요시 수정통보 요청 	이관(기관현황, 개설지현황)	
6	의료기관 휴·폐업 신고	1개월 이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온라인) 통합신고포털 로그인 (본인 인증 또는 요양기관인증서) → 휴·폐업 • (서면) 관할 보건소로 신고서 제출 - 의료법 시행규칙 별지 제18호 서식(진료기록부 직접 보관시 제19호서식 포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자체) 민원접수 및 처리 - 사전검토 및 민원처리 (신고·허가대장에 반영) - 심평원 통보(심평원 신고로 간주) - 진료기록부 보관계획서 접수시 허가 후 휴·폐업 처리 • (심평원) 신고접수 및 처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휴업기간을 변경하려는 경우 지자체로 수정신고 - 지자체는 신고처리 후 심평원 통보(심평원에도 신고한 것으로 간주)
		1개월 미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온라인) 통합신고포털 로그인 (본인 인증 또는 요양기관인증서) → 휴·폐업 • (서면) 관할 지역 심평원으로 신고서 제출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7호서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심평원) 신고접수 및 처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휴업 개시 전 1개월 이상 휴업으로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지자체로 신고 - 지자체는 신고처리 후 심평원 통보(심평원에도 신고한 것으로 간주)
7	약국 휴·폐업 신고	1개월 이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온라인) 통합신고포털 로그인 (본인 인증 또는 요양기관인증서) → 휴·폐업 - 개설등록증명서 제출 생략 • (서면) 관할 보건소로 신고서 제출 - 약사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 서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자체) 민원접수 및 처리 - 사전검토 및 민원처리(등록 대장에 반영) - 심평원 통보(심평원 신고로 간주) • (심평원) 신고접수 및 처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휴업 개시 전 휴업기간을 변경하려는 경우 지자체로 수정신고 - 지자체는 개설등록증명서 이면기재사항 수정 등 처리 후 심평원 통보(심평원에도 신고한 것으로 간주)
		1개월 미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온라인) 통합신고포털 로그인 (본인 인증 또는 요양기관인증서) → 휴·폐업 • (서면) 관할 지역 심평원으로 신고서 제출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7호서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심평원) 신고접수 및 처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휴업 개시 전 1개월 이상 휴업으로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지자체로 신고 - 지자체는 신고처리 후 심평원 통보(심평원에도 신고한 것으로 간주)
8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설치 및 (재)사용 신고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설치 및 (재)사용신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온라인) 통합신고포털 로그인 (본인 인증 또는 요양기관인증서) → 현황신고·변경 → 정비신고 → 진방장치현황 신고 - 정비신고증명서 원본 및 의료기기 제조(수입)신고(허가)증 사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자체) 민원접수 및 처리 - 사전검토 및 민원처리 (신고대장에 반영) - 심평원 통보 (심평원 신고로 간주) - 바코드 부착장비는 유효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온라인 신고 시 방사선 관계 종사자 및 안전관리책임자 신고접수 선행 필요 • 바코드 필수요건(모델명, 제조년월, 신고(허가)번호) 변경시, 바코드 재부여

연번	구분	신고방법	처리절차	유의사항
		제출 생략 - 방사선관계 종사자 신고서(별지 제6호 서식) 사본 제출 가능 • (서면) 관할 보건소로 신고서 제출 -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 관리에 관한 규칙」 별지 제1호서식	검증 (미부착 장비는 심평원으로 바코드 요청) 후 민원 처리 • (심평원) 신고 접수 및 처리 - 지자체 통보사항 확인 후 필요시 수정통보 요청	• 장비에 대한 요양급여비용 적용개시일은 지자체가 통보한 장비사용일(신고증명서 발부 일자)로 적용
	방사선 관계 종사자 변동 및 안전관리책임자 선임·해임·겸임 신고	• (온라인) 통합신고포털 로그인 (본인 인증 또는 요양기관인증서) → 현황신고·변경 → 장비신고 → 진방장치인력 신고 • (서면) 관할 보건소로 신고서 제출 -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 관리에 관한 규칙」 별지 제 6호서식	• (지자체) 민원접수 및 처리 - 사전검토 완료 및 민원처리 (신고대장에 반영)	
9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신고사항 변경신고	• (온라인) 통합신고포털 로그인 (본인 인증 또는 요양기관인증서) → 현황신고·변경 → 장비신고 → 진방장치현황 신고 - 장비신고증명서 원본 제출 생략 • (서면) 관할 보건소로 신고서 제출 -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 관리에 관한 규칙」 별지 제 5호서식	• (지자체) 민원접수 및 처리 - 사전검토 및 민원처리 (신고대장에 반영) - 심평원 통보 (개설자, 소재지 변경인 경우 심평원 신고로 간주) - 기타 변경사항인 경우, 서면 신고건은 직권수정(온라인 신고건은 사전검토 승인시 대장에 반영) • (심평원) 신고접수 및 처리 - 지자체 장비개설자 변경(주개설자↔공동개설자 변경 포함)시 변경된 요양기관 기호에 장비정보 반영	• 바코드 필수요건(모델명, 제조년월, 신고(허가)번호) 변경시, 바코드 재부여 • 개설자 변경일은 의료기관 개설변경자와 반드시 동일하게 적용 - 장비관련 변경사항의 변경일은 실제변경이 발생한 날로 적용 (단 관내 이관인 경우는 차후팀) • 장비에 대한 요양급여비용 적용개시일은 지자체가 통보한 장비사용일로 적용(소재지 이전일은 의료기관 개설변경 신고결과로 달리 적용 가능)
10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사용중지·양도·이전·폐기신고	• (온라인) 통합신고포털 로그인 (본인 인증 또는 요양기관인증서) → 현황신고·변경 → 장비신고 → 진방장치현황 신고 - 장비신고증명서 원본 제출 생략 • (서면) 관할 보건소로 신고서 제출 -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 관리에 관한 규칙」 별지 제 2호서식	• (지자체) 민원접수 및 처리 - 사전검토 및 민원처리 (신고대장에 반영) - 심평원 통보 (심평원 신고로 간주) • (심평원) 신고접수 및 처리 (사용중지)	•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제3조에 따른 신고환을 적용함에 따라 「국민건강보험법」 제119조에 따른 과태료는 부과하지 않음 • 장비에 대한 요양급여비용 적용종료일은 지자체가 통보한 장비사용종지일로 적용
11	특수의료장비 등록신청	• (온라인) 통합신고포털 로그인 (본인 인증 또는 요양기관인증서) → 현황신고·변경 → 장비신고 → 특수장비현황 신고 - 장비등록증명서 원본 및 의료기기 제조(수입)신고(허가)증 사본,	• (지자체) 민원접수 및 처리 - 사전검토 및 민원처리 (등록대장에 반영) - 심평원 통보 (심평원 신고로 간주) - 바코드 부착장비는 유효성	• 바코드 필수요건(모델명, 제조년월, 신고(허가)번호) 변경시, 바코드 재부여



연번	구분	신고방법	처리절차	유의사항
		<p>의료기관 개설 신고증명서(개설 허가증) 사본, 장비관련 인력 면허 자격증 사본 제출 생략</p> <p>- 공동활용 동의서 사본 제출 가능</p> <p>• (서면) 관할 보건소로 등록신청서 제출</p> <p>- 「특수 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별지 제1호서식</p>	<p>검증</p> <p>(미부착 장비는 심평원으로 바코드 요청) 후 민원 처리</p> <p>• (심평원) 신고접수 및 처리</p> <p>- 지자체 통보사항 확인 후 필요시 수정통보 요청</p>	
12	특수의료 장비 인력등록 사항 변경통보	<p>• (온라인) 통합신고포털 로그인 (본인 인증 또는 요양기관인증서) → 현황신고·변경 → 장비신고 → 특수장비현황 신고</p> <p>- 장비등록증명서 원본 및 장비관련 인력 면허자격증 사본 제출 생략</p> <p>• (서면) 관할 보건소로 통보서 제출</p> <p>- 「특수 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별지 제5호서식</p>	<p>• (지자체) 민원접수 및 처리</p> <p>- 사전검토 및 민원처리 (등록대장에 반영)</p> <p>- 심평원 통보(개설자, 소재지, 설치장소 변경인 경우 심평원 신고로 간주)</p> <p>- 기타 변경사항인 경우, 서면 신고건은 직권수정(온라인 신고건은 사전검토 승인시 대장에 반영)</p> <p>• (심평원) 신고접수 및 처리</p> <p>- 지자체 장비개설자 변경(주개설자→공동개설자 변경 포함)시 변경된 요양기관 기호에 장비 정보 반영</p>	<p>• 바코드 필수요건(모델명, 제조년월, 신고(허가)번호) 변경시, 바코드 재부여</p> <p>• 개설자 변경일은 의료기관 개설변경일자와 반드시 동일하게 적용</p> <p>• 장비관련 변경사항의 변경일은 실제 변경이 발생한 날로 적용 (단, 관내 이관인 경우는 차후임)</p> <p>• 장비에 대한 요양급여비용 적용개시일은 지자체가 통보한 장비사용일로 적용(소재지 이전일은 의료기관 개설변경 신고결과로 달리 적용 가능)</p> <p>• 「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4조에 따른 신고기한을 적용함에 따라 「국민건강보험법」 제 119조에 따른 과태료는 미부과</p>
	특수의료 장비 시설 등록사항 /개설자/ 의료기관 명칭/용도/ 설치장소 변경통보	<p>• (온라인) 통합신고포털 로그인 (본인 인증 또는 요양기관인증서) → 현황신고·변경 → 장비신고 → 특수장비현황 신고</p> <p>- 장비등록증명서 원본 및 의료기관 개설 신고증명서(개설허가증) 사본 제출 생략</p> <p>• (서면) 관할 보건소로 통보서 제출</p> <p>- 「특수 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별지 제6호서식</p>	<p>• (지자체) 민원접수 및 처리</p> <p>- 사전검토 및 민원처리 (등록대장에 반영)</p> <p>- 심평원 통보 (심평원 신고로 간주)</p> <p>• (심평원) 신고접수 및 처리 (사용중지)</p>	
13	특수의료장비 양도·폐가 사용중지 통보	<p>• (온라인) 통합신고포털 로그인 (본인 인증 또는 요양기관인증서) → 현황신고·변경 → 장비신고 → 특수장비현황 신고</p> <p>- 장비등록증명서 원본 제출 생략</p> <p>• (서면) 관할 보건소로 통보서 제출</p> <p>- 「특수 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별지 제7호서식</p>	<p>• (지자체) 민원접수 및 처리</p> <p>- 사전검토 및 민원처리 (등록대장에 반영)</p> <p>- 심평원 통보 (심평원 신고로 간주)</p> <p>• (심평원) 신고접수 및 처리 (사용중지)</p>	<p>• 「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4조에 따른 신고기한을 적용함에 따라 「국민건강보험법」 제 119조에 따른 과태료는 미부과</p>



PART 2. 관련 법령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요양기관) ① 요양급여(간호와 이송은 제외한다)는 다음 각 호의 요양기관에서 실시한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공익이나 국가정책에 비추어 요양기관으로 적합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료기관 등은 요양기관에서 제외할 수 있다. <개정 2018.3.27.>

1. 「의료법」에 따라 개설된 의료기관
2. 「약사법」에 따라 등록된 약국
3. 「약사법」 제91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
4. 「지역보건법」에 따른 보건소·보건의료원 및 보건지소
5.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설치된 보건진료소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효율적인 요양급여를 위하여 필요하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설·장비·인력 및 진료과목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요양기관을 전문요양기관으로 인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전문요양기관에 인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인정받은 요양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인정을 취소한다.

1. 제2항 전단에 따른 인정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2. 제2항 후단에 따라 발급받은 인정서를 반납한 경우

④ 제2항에 따라 전문요양기관으로 인정된 요양기관 또는 「의료법」 제3조의4에 따른 상급종합병원에 대하여는 제41조제3항에 따른 요양급여의 절차 및 제45조에 따른 요양급여비용을 다른 요양기관과 달리 할 수 있다. <개정 2016.2.3.>

⑤ 제1항·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요양기관은 정당한 이유 없이 요양급여를 거부하지 못한다.

제43조(요양기관 현황에 대한 신고)

① 요양기관은 제47조에 따라 요양급여비용을 최초로 청구하는 때에 요양기관의 시설·장비 및 인력 등에 대한 현황을 제62조에 따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사평가원”이라 한다)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 요양기관은 제1항에 따라 신고한 내용(제45조에 따른 요양급여비용의 증감에 관련된 사항만 해당한다)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변경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심사평가원에 신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의 범위, 대상,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2조(요양기관 현황 신고 등) ① 요양기관은 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시설·장비 및 인력 등에 대한 현황을 신고하려면 별지 제14호서식의 요양기관 현황신고서[약국 및 「약사법」 제91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한국회귀·필수의약품센터(이하 “한국회귀·필수의약품센터”라 한다)의 경우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요양기관 현황 신고서(약국 및 한국회귀·필수의약품센터용)를 말한다] 및 별지 제16호서식의 의료장비 현황(변경)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사평가원”이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42조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요양기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8. 6. 29.>

1. 요양기관 현황 신고서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의료기관 개설신고증, 의료기관 개설허가증, 약국 개설등록증 또는 한국회귀의약품센터 설립 허가증 사본 1부

나. 삭제 <2018. 9. 28.>

다. 요양기관의 인력에 관한 면허나 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라. 통장 사본 1부

2. 의료장비 현황 신고서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장비의 허가·신고·등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나. 장비의 검사나 검사면제에 관한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다. 장비를 구입하였거나 임차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② 요양기관은 법 제43조제2항에 따라 요양기관의 인력·시설·장비 등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에는 별지 16호서식의 의료장비 현황(변경) 신고서 및 별지 제17호서식의 요양기관 현황 변경신고서에 변경된 사항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심사평가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요양급여비용 수령 계좌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개설자나 대표자의 인감증명서(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인감증명서를 말한다) 또는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첨부하여야 하며, 별지 제17호서식의 요양기관 현황 변경신고서에 그 등록된 인감을 날인하거나 본인 서명사실확인서와 동일한 서명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8. 6. 29.>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받은 심사평가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자등록증(신고인이 법 제42조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요양기관인 경우는 제외한다) 및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하며, 신고인이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18. 9. 28.>

④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심사평가원은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으로부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통보받은 경우에는 요양기관이 별표 2의2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요양기관 현황(변경) 신고서 또는 의료장비 현황(변경) 신고서 및 첨부 서류를 심사평가원에 제출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5. 7. 24., 2018. 6. 29., 2018. 9. 28., 2020. 10. 30.>

1. 「의료법 시행규칙」 제30조의2제2항에 따라 처리한 사항
2. 「약사법 시행규칙」 제9조의2제2항에 따라 처리한 사항
3.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제3조의2제2항에 따라 처리한 사항
4. 「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4조의2제2항에 따라 처리한 사항
5. 「약사법」 제23조제5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의료기관이 없는 지역 또는 약국이 없는 지역에 해당한다는 사실

⑤ 심사평가원은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요양기관 현황 변경 신고사항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소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15. 7. 24., 2018. 9. 28.>

1. 「의료법」 제33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의료기관 개설자가 임원, 해외 출장 등으로 다른 의사·치과의사·한의사 또는 조산사에게 진료하게 할 경우 그 기간 및 해당 의사 등의 인적 사항
2. 「의료법」 제33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제1항제6호에 따른 의료기관의 의료인 수
3. 「의료법」 제33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제1항제5호에 따른 의료기관의 의료인 수

⑥ 심사평가원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신고받은 사항 중 요양급여비용 지급을 위하여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단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5. 7. 24., 2018. 9. 28.>

1. 요양기관의 명칭, 기호 및 소재지
2. 대표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3. 개설 신고(허가·등록)일, 폐업일
4. 사업자등록번호
5. 금융기관의 계좌명세 등

⑦ 요양기관이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심사평가원에 신고하여야 하는 장비 등 요양기관의 현황을 관리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5. 7. 24., 2018. 9. 28.>

제12조의2(보건의료자원 통합신고포털의 설치·운영) ① 심사평가원은 제12조에 따른 요양기관 현황 신고 등과 관련된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전자정부법」 제9조제2항에 따른 전자민원창구(이하 “보건의료자원 통합신고포털”이라 한다)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요양기관은 보건의료자원 통합신고포털을 통하여 제12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요양기관 현황 등에 대하여 신고하거나 그 내역 등을 확인할 수 있다. <개정 2020. 9. 8.>

③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및 심사평가원은 보건의료자원 통합신고포털과 보건복지부장관 및 각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정보시스템을 연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0. 9. 8.>

1.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이 제12조제4항에 따라 심사평가원에 하는 통보
2. 심사평가원이 제12조제5항에 따라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에 하는 통보
3. 심사평가원이 법 제96조제2항 및 영 제69조의2에 따라 요청하는 영 별표 4의3 제2호마목·카목 및 타목에 해당하는 자료의 제공
4. 그 밖에 요양기관의 시설·장비 및 인력 등 보건의료자원의 통합신고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심사평가원이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정한 사항

④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및 심사평가원은 제3항 각 호의 업무를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 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⑤ 보건의료자원 통합신고포털의 설치·운영 방법, 정보시스템의 연계 운영 방법, 그 밖에 보건의료자원 통합신고포털을 관리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15. 7. 24.]

『보건의료자원 통합신고포털 운영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제12조의2제5항에 따라 보건의료자원 통합신고포털의 설치·운영, 정보시스템의 연계 운영, 그 밖에 보건의료자원 통합신고포털 운영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건의료자원 통합신고포털”이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제12조의2제1항 및 이 고시 제3조에 따라 요양기관 현황신고 등과 관련된 업무를 위해 구축·운영하는 전자민원창구를 말한다.
2. “정보시스템”이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제12조제3항 및 제4항, 제12조의2제2항 및 제3항과 관련된 업무를 위해 제3호 각 목의 정보보유기관이 사용하는 정보시스템을 말한다.
3. “정보보유기관”이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제12조의2제3항에 따라 정보시스템을 연계하여 업무를 처리하는 다음 각 목의 기관을 말한다.

가. 보건복지부

- 나. 시·도 또는 시·군·구(「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제27조의2제2항에 따른 경제자유구역청을 포함한다)
- 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사평가원”이라 한다)
- 라. 제4조제2항에 따른 정보시스템 연계 대상 정보의 보유기관
- 마. 그 밖에 정보시스템 연계가 필요하다고 심사평가원장이 정하는 기관

제3조(보건의료자원 통합신고포털의 구축·운영) 심사평가원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제12조의 2제1항에 따라 요양기관 현황신고 등과 관련된 업무를 위하여 보건의료자원 통합신고포털(이하 “통합신고포털”이라 한다)을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제4조(정보시스템의 연계와 활용) ①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및 심사평가원은 통합신고포털과 정보시스템을 연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처리한다.

1.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이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제12조제3항에 따라 심사평가원에 하는 통보
 2. 심사평가원이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제12조제4항에 따라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에 하는 통보
 3. 심사평가원이 「국민건강보험법」 제96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9조의2에 따라 요청하는 같은 법 시행령 별표 4의3 제2호마목·카목·타목에 해당하는 자료의 제공
 4. 요양기관에 근무하는 전속인력 및 의료인등 인원현황, 요양기관기호, 의료장비 바코드 등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제12조의2제3항에 따른 보건의료자원의 통합신고 업무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공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요양기관의 시설·장비 및 인력 등 보건의료자원의 통합신고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심사평가원이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정한 사항
- ② 제1항제3호에 따라 정보시스템 연계의 대상이 되는 정보와 그 정보를 제공 받는 기관은 별표 1과 같다. 정보보유기관은 정보시스템 연계의 대상이 되는 정보의 수정·변경 등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정보시스템에 입력·관리하여야 한다.
-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정보시스템 연계를 통해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조회하여 의료기관 또는 약국의 개설·변경·휴업·폐업에 대한 신고·허가·등록,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또는 특수의료장비의 신고·등록·변경 등의 사무를 처리할 수 있다.
1. 보건의료인등에 대한 자격·면허 및 행정처분
 2. 의료기관 및 약국에 대한 행정처분
 3. 의료기관 및 약국에 대한 개설·변경·휴업·폐업현황
 4. 의료기기의 제조, 수입 등에 대한 허가·신고현황



제5조(통합신고포털을 통한 사무의 처리) ① 의료기관 또는 약국의 개설자(개설하려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신청인”이라 한다)가 통합신고포털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사무에 대해 신고·신청 또는 통보(이하 “신고등”이라 한다)할 때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해당 사무의 수리·등록·허가 등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미리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가목2)에 해당하는 민원사무(이하 “사전검토”라 한다)의 처리를 요청할 수 있다. 이 때 신청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하는데 필요한 제출 서류와 같으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필요한 경우 추가적인 자료의 제출 및 보완을 신청인에게 요청할 수 있다.

1. 「의료법 시행규칙」 제30조의2제1항 및 「의료법」 제33조제8항에 따른 의료기관 개설(변경)신고·개설(변경)허가 및 폐업·휴업의 신고
 2. 「약사법 시행규칙」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변경등록신청 및 폐업 등의 신고
 3.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제3조의2제1항에 따른 신고
 4. 「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4조의2제1항에 따른 등록 신청 및 변경 통보
-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인의 사전검토 요청이 있으면 이를 지체없이 처리하고, 그 사전검토 결과를 통합신고포털 등을 통해 신청인에게 통보해야 한다.
-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사전검토 결과를 통보한 때에 신청인이 신고등을 한 것으로 동의한 경우에는 그에 따라 사무를 처리한다.
-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 후 신청인이 그에 대한 증명서 등을 통합신고포털에서 직접 출력한 경우에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에 따라 그 출력한 문서를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3조제1호에 따른 공문서로 본다.

1. 신고등의 사무
 2. 「약사법」 제23조제5항 및 「의약분업 예외지역 지정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의약분업예외지역 개설 확인증 교부에 관한 사무
- ⑤ 제4항에 따라 신청인이 출력한 문서를 공문서로 보는 전자문서의 종류는 별표 2와 같다.

제6조(연계정보 운영·관리) ① 정보보유기관은 제4조제1항 각 호의 통보, 제공 등(이하 “통보등”이라 한다)을 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지체없이 하여야 한다.

② 정보보유기관은 연계된 정보시스템으로 통보등을 받은 정보가 사실과 다르거나 수정·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확인 등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치를 요청받은 정보보유기관은 이를 확인하고 조치한 결과를 정보시스템을 통해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개인정보의 보호) 심사평가원은 정보시스템에 연계되는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개인정보에 대해 관계 법령에 따라 필요한 보호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제8조(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심사평가원은 이 고시에 따른 보건의료자원 정보의 연계 업무 수행을 위하여 보건의료자원 연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한다.

② 협의회는 정보보유기관, 의료관련 단체 등에 속한 자로 구성한다.

③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법·제도 정비 등 운영 여건 조성에 관한 업무
2. 정보시스템 연계 기준, 방법, 절차, 서식 등의 표준화에 관한 업무
3. 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업무
4. 그 밖에 정보 연계 및 통합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업무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의 개최,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심사평가원장이 정한다.

제9조(교육) 심사평가원은 보건의료자원 통합신고와 정보시스템 연계·활용 등을 위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10조(행정관리 등) ① 심사평가원은 보건의료자원 통합신고와 정보시스템 연계와 관련하여 시스템의 안정적 유지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심사평가원은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정보보유기관에 협력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받은 정보보유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③ 통합신고포털의 설치·운영, 정보시스템 연계 대상 정보의 범위 등 통합신고포털을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 중 이 고시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심사평가원장이 정한다.

제11조(재검토기한) 이 고시는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1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반영하여 재검토하여야 한다.

부칙 <제2018-231호, 2018. 10. 20.>

이 고시는 2018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제정 2015. 11. 5.>

정보시스템 연계의 대상이 되는 정보 등(제4조제2항 관련)

정보보유기관	연계 정보	정보이용기관
법무부	출입국자명부 정보 또는 출입국 기록 자료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 가입자 자격정보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인등 면허자격정보	보건복지부 시·도 시·군·구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건의료인등 행정처분정보	
	요양기관 업무정지처분정보	
식품의약품안전처	의료기기 품목별 제조(수입) 허가·인증·신고정보	
시·도	간호조무사 자격 및 행정처분정보	
	요양보호사 자격 및 행정처분정보	
시·군·구	의료기관 또는 의료법인 행정처분정보	
	조리사 면허 및 행정처분정보	
	의료기관 행정처분정보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사회복지사 자격정보	

[별표 2] <개정 2018. 10. 4.>

신청인이 출력한 문서를 공문서로 보는 전자문서(제5조제5항 관련)

연번	신고등	공문서로 보는 전자문서
1	「의료법 시행규칙」 제30조의2제1항 및 「의료법, 제33조제8항에 따른 의료기관 개설(변경)신고	「의료법 시행규칙」 제25조제3항 및 제26조제3항에 따른 별지 제15호서식(의료기관 개설신고증명서)
2		「의료법 시행규칙」 제32조제2항에 따른 별지 제15호의2서식(부속 의료기관 개설신고증명서)
3		「의료기관 개설 및 의료법인 설립 운영 편람」에 따른 별지 제2호서식(복수면허자 의료기관 개설신고증명서)
4	「의료법 시행규칙」 제30조의2제1항에 따른 의료기관 개설(변경)허가	「의료법 시행규칙」 제27조제3항 및 제28조제3항에 따른 별지 제17호서식(의료기관 개설허가증)
5		「의료법 시행규칙」 제32조제2항에 따른 별지 제17호의2서식(부속 의료기관 개설허가증)
6	「약사법 시행규칙」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약국 개설등록·등록사항 변경 신청	「약사법 시행규칙」 제8조 및 제9조제3항에 따른 별지 제6호서식(약국개설등록증)
7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제3조의2제1항에 따른 신고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제3조제2항 및 제5항에 따른 별지 제3호서식(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설치 및 사용·양도·이전·사용종지 신고증명서)
8	「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4조의2제1항에 따른 등록 신청 및 변경 통보 등	「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2조제3항 및 제4조제2항에 따른 별지 제3호서식(특수의료장비 등록증명서)
9	「약사법」 제23조제5항 및 「의약분업 예외지역 지정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의약분업예외지역개설확인증 교부에 관한 사무	「의약분업 예외지역 지정 등에 관한 규정」 제3조제3항에 따른 별지 서식(의약분업 예외지역 개설 확인증)